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지자체용 -

1 판

2021. 3. 2.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지침 안내문

- **(법적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동법 제4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3,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3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47조에 따라 시행함
-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백신 보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관리 지침」, 예방접종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현황, 백신 정보, 개발, 공급 및 이상반응 등의 변경 상황에 따라 개정 예정임

초판	2021. 1.22.
1판	2021. 3. 2.

* 동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ncv.kdc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I.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사업 개요	1
1. 추진목표	1
2. 추진원칙	1
3. 법적근거	1
4. 추진체계	2
5. 기관별 역할	3
 II. 시·도 및 시·군·구 역할	10
1. 시·도 및 시·군·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10
2. 백신 및 주사기 등 공급	14
3.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15
4.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 관리	17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19
6. 국가피해보상 절차	21
 III.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23
1.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23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방법	25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준비사항	26
 IV. 요양·정신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2
1. 요양·정신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32
2.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33
3.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별 사전 준비 사항	35
 V.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41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41
2.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44
3.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별 사전 준비 사항	44

VI.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49
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개요	49
2.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운영 관리	50
3.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운영	55
VII.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56
1.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업 개요	56
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57
VIII.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9
1.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원칙	69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69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73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75
IX.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76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정의	76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77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78
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80
X.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88
1.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공급	88
2. 코로나19 백신 유통·공급 관리	89
3. 코로나19 백신의 잔여·폐기백신 관리	92
XI. 코로나19 백신 접종물품 공급 및 관리	95
1.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관리	95
2. 접종 부대물품 구매 및 관리	96
XII.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97
1. 목적	97
2. 시스템 개요	97

서 식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100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101
<서식 3>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102
<서식 4-1> 요양시설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103
<서식 4-2> 요양병원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104
<서식 4-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105
<서식 5-1>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안)	106
<서식 5-2>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병원(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107
<서식 6>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자체 점검표(안)	109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공고문(안)	111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112
<서식 9>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14
<서식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115
<서식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안)	116
<서식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안)	119
<서식 13>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	121
<서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안)	123
<서식 1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대장	124
<서식 16>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125
<서식 1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점검표	126
<서식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서	130

<서식 19>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132
<서식 2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134
<서식 2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37
<서식 22>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138
<서식 23> 이의신청서	139
<서식 24>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140
<서식 2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신속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142
<서식 26>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	143
<서식 27>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144
<서식 28>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예시)	145
<서식 29-1>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146
<서식 29-2>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양식(예방접종센터 등)	147
<서식 29-3>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의료기관 자체접종)	148
<서식 30-1>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보건소)	149
<서식 30-2>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예방접종센터)	150
<서식 30-3>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위탁의료기관)	151
<서식 31> 코로나19 백신 회수량 인수인계서 양식(안)	152

부 록

<부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53
<부록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155
<부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159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163
<부록 5>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집행기준(안)	165
<부록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관리 지침	184
<부록 7>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210
<부록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218
<부록 9-1>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정보	219
<부록 9-2>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준비	227
<부록 10>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접종기관 관리사항)	230
<부록 11> 백신 보관 온도 이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	236
<부록 12> 접종물품 정보 안내	241
<부록 13> 예방접종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및 온도 유지 관리	243
<부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용) 매뉴얼	244
<부록 15>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점검 관리(보건소용) 매뉴얼	253
<부록 16>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접종대상자 이동 동선(안)	257
<부록 1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 접종) 자체 점검 사항	258
<부록 1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체 점검표	260
<부록 19> 개인정보보호구 착탈의 순서	265
<부록 2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	266
<부록 21>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리플릿)	268
<부록 20> 코로나19 예방접종 Q&A	279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추진단		업무
상황총괄반	상황총괄팀	• 상황 관리 및 대외 협력
	홍보관리팀	• 예방접종 홍보 계획·시행
	시스템관리팀	• 접종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예방접종관리반	예방접종관리팀	• 예방접종 계획·시행
	접종기관관리팀	• 접종기관 관리
	접종인력관리팀	• 접종인력, 관리 및 교육
	접종시행팀	• 백신 최초물량 접종 시행 추진
자원관리반	백신도입팀	• 백신 도입 및 구매계획
	백신유통관리팀	• 백신 유통 및 수급관리
접종 후 관리반	이상반응관리팀	• 이상반응 감시·관리
	보상심사팀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사
교육지침지원관		• 예방접종 관련 지침 • 교육자료
백신도입지원관		• 백신 협상 및 법률검토지원

[지자체 지침 관련 추진단 실무 연락처]

목 차	업 무	추진 단	연락처(043)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 요양병원(정신요양병원 포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관리팀	719-8391, 8374, 8387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체접종) 관리	• 예방접종관리팀	719-8391, 8374, 8387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 위탁의료기관 모집	• 접종기관관리팀	913-2297, 2296
	• 위탁의료기관 운영·관리	• 예방접종관리팀	719-8384, 8371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관리	• 예방접종센터 설치 •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 접종기관관리팀	913-2299, 2298
		• 접종인력관리팀	913-2286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기본원칙 •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관리팀	719-8372, 837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정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 이상반응관리팀	913-2266, 2272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 보상심사팀	913-2262 719-8364, 8391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 백신 확보 및 공급 • 백신 공급 절차 • 백신 유통·공급 관리 • 잔여·폐기백신 관리	• 백신유통관리팀	913-2316, 2319, 2331
코로나19 예방접종 물품 공급 및 관리	•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관리 • 접종 부대물품 구매 및 관리	• 백신유통관리팀	913-2317, 2318, 2332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시스템	• 시스템관리팀	719-8378

I.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사업 개요

1. 추진목표

- 전 국민 무료접종(접종을 70%)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전파 차단

2. 추진원칙

- 과학적 근거 기반(Evidence-based)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예방접종
-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예방접종
-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의4, 제64조, 제66조, 제68조,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3,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3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의4, 제47조

제25조(임시에방접종)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에방접종(이하 “임시에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에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제2020-9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예방접종비용 심의 및 공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2호)

4. 추진체계

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21.1.15일 기준)

- (추진단 운영) 국무총리 훈령* 제정(1.8.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구성·운영(1.8.~),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범정부 차원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1.8.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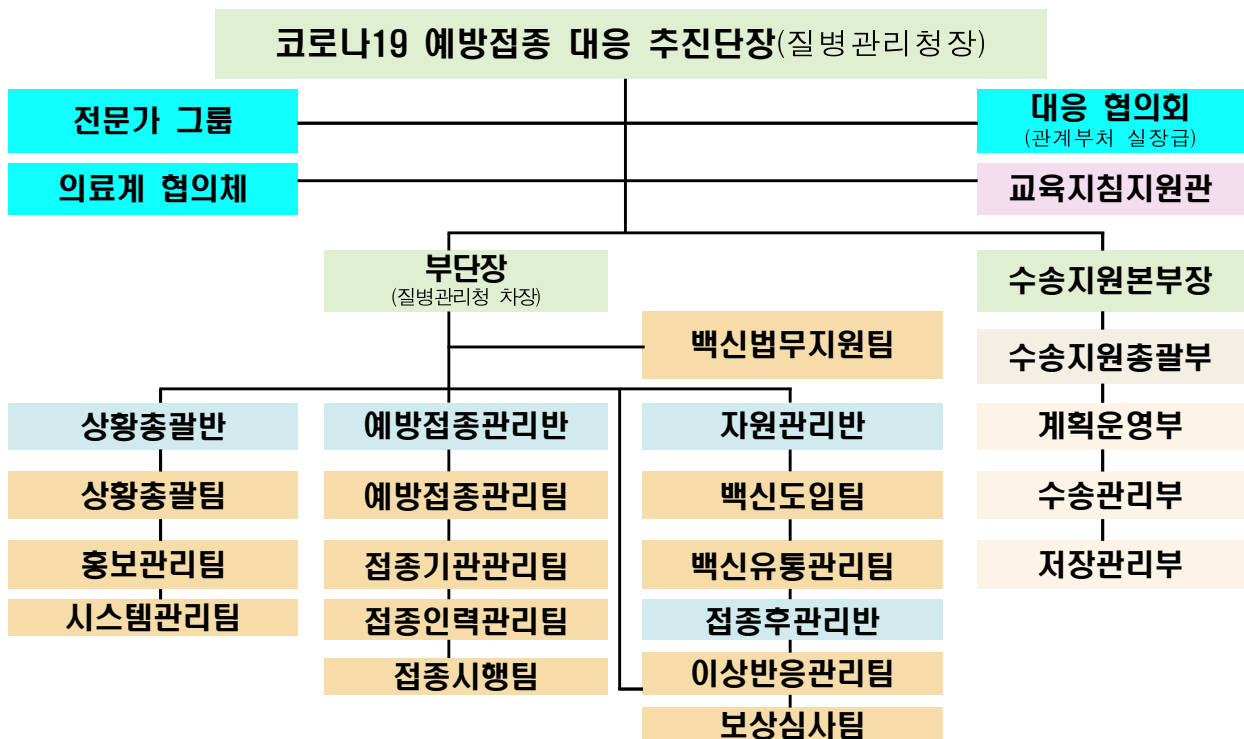
* (관계기관) 복지부·식약처·행안부·국방부·문체부·법무부·국토부·산업부·특허청 등

* (국방부) 백신 유통 쏘단계 상황관제·대응 위한 수송지원본부 편성 추진

- (협력체계) 관계부처 실장급 협의회 운영, 실무 협업 총괄·관리

- (전문가·의료계 소통) 기존 전문가 위원회*·자문단 및 의료계 협의체 등을 통한 전문자문 및 현장 소통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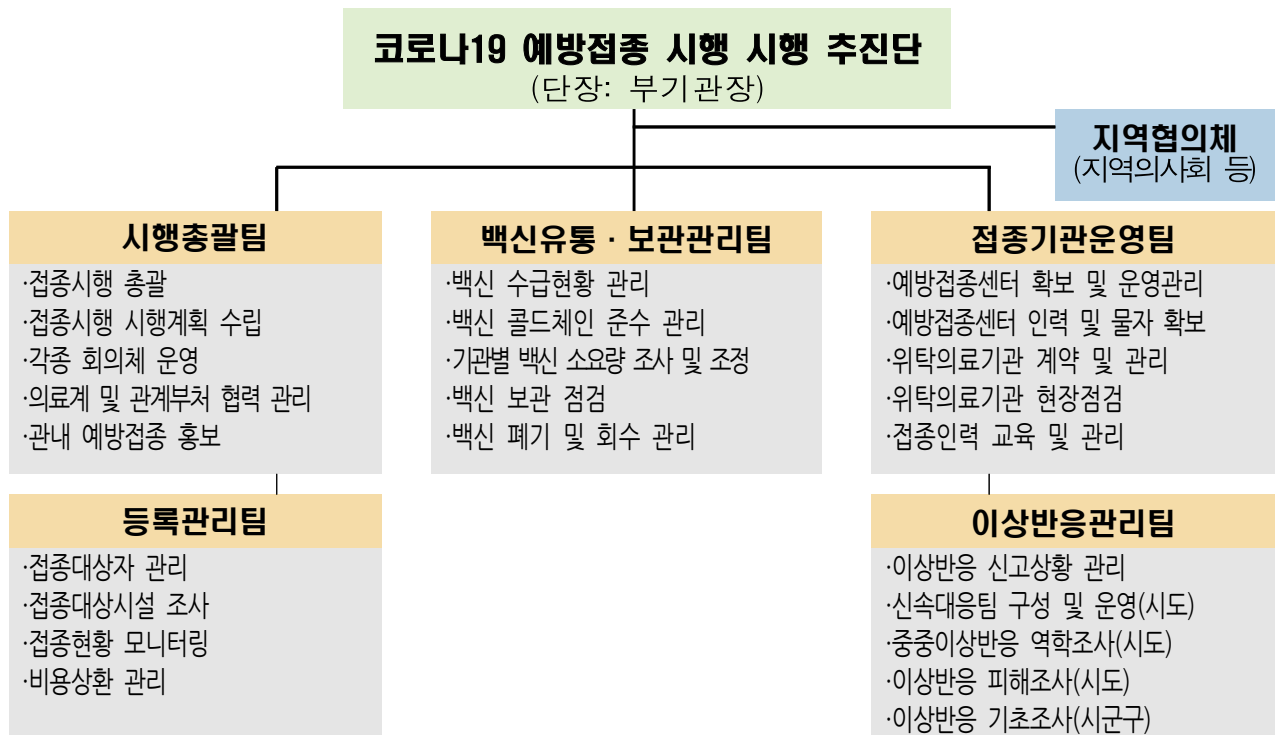
*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 백신 도입·시행 준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조정 (2021.2.28일 기준)

나. (시·도 /시·군·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안)

- (지자체) 예방접종 대응을 총괄하는 각 시·도 및 시·군·구별 “지자체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단장 : 부기관장)” 구성·운영, 접종 일정 및 접종 관리, 이상반응 대응 계획 등 수립
 - * (이상반응 대응)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 (행안부) 예방접종 지원단 구성(1.12~), 지자체 조직 및 상황 관리



* 백신 도입 상황 및 시행 준비 단계에 따라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 가능

5. 기관별 역할

가. 관계 부처별 역할

기관	역할
전 부처 공통사항	○ 우선접종 대상 명단 파악 및 시스템 연계 협조 · 부처 소관 집단시설 :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장애인·정신보건·부랑인·아동복지·결핵·한센·여성보호·한부모시설, 교정시설·치료감호소 등 · 소관 인력 : 1차 대응요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기타 사회핵심인력 등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백신 구매·예방접종 관련 예산 및 세제

기관	역할
외교부	○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방접종 및 정책 동향 등 국외 정보 수집
법무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지원 ○ (법무공단) 코로나19 백신 관련 법적 검토
국방부	◆ 수송지원본부 ○ 코로나19 백신 신속 수송 및 보안 유지 ○ 접종 인력 (군의원, 간호장교) 지원, 접종인력 교육 협조 및 행정지원 인력 지원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 지자체(시·도/시·군·구)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관리 지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종 후 사망사례 발생시 부검 및 결과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 대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및 소통, 가짜뉴스 대응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백신 도입 협상 지원, 초저온냉동고, 드라이아이스 등 수급 상황 관리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지원반 ○ 복지부-질병청-의료계(의협·병협·간협·약사회) 협의체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필요 접종인력 확보, 유관기관(보건공단, 심평원 등) 인력 지원
국토교통부	◆ 항공수송지원TF ○ 백신 항공수송 지원(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절차 간소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 백신전담심사팀 ○ 코로나19 백신 국내 신속 허가 승인 및 해외 코로나19 백신 허가 승인 상황 파악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협력- 백신 재검정, 제조사 정보 공유
관세청	○ 수입 코로나19 백신 신속 통관 등 협조
조달청	○ 초저온냉동고, 주사기 등 접종물품, 유통 신속 조달 계약 협조
경찰청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시설 보안 및 긴급 상황 대비 긴급 수송 지원 체계 마련 ○ 백신 이상반응 조사 협조
소방청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급차 배치 및 이상반응 발생 환자 긴급 수송
특허청	○ 코로나19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나. 질병관리청(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 (추진단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 운영
- (계획수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수립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권장 대상자 선정원칙·접종방법 수립·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 등
 - 접종기관 운영 및 예방접종 실시 현황 관리

- **(백신 공급·유통·관리)**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 체결, 백신 유통 및 보관 등에 대한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및 피해보상제도 운영
 - 사망사례 등 신속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지자체 핫라인 구축 및 운영
- **(교육·홍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침,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대국민 홍보
 - 접종인력(의료인, 행정요원, 유관기관 등) 교육
-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예방접종센터에 대상자 업로드, 수정 권한 부여
 - 예방접종자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 관련 부처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 시·도

1) 시행 총괄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수립, 점검 및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상황실 운영
- 시·도 의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회의체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홍보·상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신고방법 등 안내

2) 백신유통·보관관리

- 코로나19 백신 수요·공급 관리
-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황 모니터링

3) 예방접종기관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확보, 운영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 예방접종 기관 인력 및 물자확보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관리
- 예방접종인력 교육 및 관리

4) 이상반응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보고체계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및 중증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조사

라. 시·군·구

1) 시행·총괄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운영
- 관내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수립 및 임시예방접종 공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상황실 운영
- 시·군·구 의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홍보·상담
- 미접종자 접종 독려
-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 권한 부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신고방법 등 안내

2) 백신 등 유통·보관·관리

- 보건소 코로나19 백신(방문접종, 내소접종 등) 수요·공급 관리
- 관내 예방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수요·공급 관리
-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체접종) 수요·공급 관리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희석액 공급관리

3)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운영·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운영·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 및 관리
- 방문접종팀 구성, 인력 구성·운영, 현황관리
- 관내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현장 점검 및 계약 등 관리

4)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요양시설 등 대상 코로나19 방문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내소 접종)
-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등
- 접종지원팀 구성운영 등

5)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신고·보고체계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신고방법 등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발생사례에 대한 기초조사
-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 집단시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 담당자들과 연락망 구축

6)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 관리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예방접종 사전알림 등 문자 안내 서비스
 - * 접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명의로 문자발송 (보건소에서 지정한 번호, p22 참고1)
- 코로나19 백신 보관, 배분 및 관리

마. 위탁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
-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 기관 내 접종대상자 명단 관리 및 예방접종 시행
- 기관 내 자체접종 계획 수립 및 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관리

바. 예방접종센터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자 관리 및 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관리

<주요 업무별 기관별 역할>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기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사업 관리	• 계획 수립 •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선정 • 지침/교육 개발 및 실시 • 대국민 홍보 • 지자체, 관련부처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도 계획 수립 • 시·군·구 예방접종 계획 점검 및 지원 • 지침 숙지 • 교육 이수 •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의사회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 유지	• 관내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임시예방접종 공고 • 지침 숙지 • 교육 이수 • 위탁의료기관 관리 • 관내 지역주민 대상 홍보 • 지역 의사회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 유지	• (공통)지침 숙지 • (공통)교육 이수
접종 시행	•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 • 접종률 분석 등 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사전알림	• 접종 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 실시 • 접종기록 등록·관리 • 접종 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 사전알림 • 접종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 (공통) 안전한 접종환경 구비 • (공통)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 실시 • (공통)접종기록 등록·관리 • (공통)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발급 •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신청
백신 관리	• 코로나19 백신 공급 전반에 대한 사항 관리 • * 사·도 제출 자료 기준 • 백신 공급현황 모니터링 • 접종기관 입고량 등록 • 추가배정시기 등 조정	• 백신 공급현황 모니터링	• 백신 공급현황 모니터링 • 방문접종용 백신 관리 • * 집단시설 거주자 등 • 백신관리 및 점검 • 초저온냉동고 및 희석액 구매	• (공통) 백신 인수, 접종, 보관 관리 • (공통) 일일 재고관리 실시
예방	• 예방접종센터 운영	• 시·도 내 예방접종센터 운영	• 예방접종센터 운영	• (공통) 점검 실시 및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시·도	시·군·구	예 방 접 종 기 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접 종 기 관 관 리	- 현황 관리 · 위탁의료기관 운영 - 현황 관리	- 현황 관리 · 시·도 내 위탁의료기관 운영 - 현황 관리	·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 위탁의료기관 지정/공고	- 방문점검 협조 · (공통) 업무협조체계 유지 · (위탁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안 전 관 리	·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지원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 24시간 보고체계 운영	· 이상반응 발생 보고 ·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 예방접종 피해조사 실시 · 중증이상반응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운영 · 24시간 보고체계 운영	·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 · 중증이상반응 기초조사 · 24시간 신고·보고체계 운영	· (공통)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
개 인 정 보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II. 시·도 및 시·군·구 역할

1. 시·도 및 시·군·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가. 임시예방접종시행 공고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시행 공고

*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서식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공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체계]



나. 접종대상자 파악 및 시행계획 수립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시기, 공급량, 효과, 방역목표 등에 따라 차례대로 예방접종을 시행함에 따라 분기별 관내 접종대상자 파악
- *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예정으로, 변경시 수시로 공문 통지 예정

- (접종 순서) 코로나19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 (접종시기) 코로나19 백신 공급상황과 접종 순서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 결정
 -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예방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별 시행방법>

* 변동가능

구분	1분기(130만명)		2분기(900만명)		3~4분기(3,325만명)	
	대상	방법	대상	방법	대상	방법
가군	요양(정신)병원 입원·종사자	자체접종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방문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방문접종 또는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센터 접종	· 성인 50~64세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나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	자체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외)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예방접종센터 접종 * 군인: 국방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자체접종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구급대 등)	보건소 내소 접종				
다군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 접종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또는 방문접종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 (4분기)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다만, 1분기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만65세 미만(1957.1.1. 이후 출생자) 우선 접종

* 65세 이상 접종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유보(만 65세 이상 연령에서의 백신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접종방안 추후 별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접종대상자(미가입 내·외국인, 자격 상실자 포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도록 안내

- (시행방법) 접종대상자는 접종순서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사이트 또는 1339 등을 통해 예약), 단, 초기 접종대상자는 사전 조사 후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등록
-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 대상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찾아가는 예방접종 등 실시 및 그에 따른 시설·인력 지원

< 예방접종 기관 >

구분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기관 수	약 250개	약 10,000개	보건소당 1개팀
보관장비	냉장고/초저온 냉동고(지원)	별도 백신용 냉장고	

○ (접종비용) 전액 무료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비는 국가에서 부담(국비+건보재정)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이하 요양시설 등)

☞ III.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조

- 관할 보건소는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및 입소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방식(위탁의료기관 접종, 보건소 방문접종 등), 예방접종 동의 구득 현황, 접종시행일정, 이상반응 대책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시설과 보건소 내소 예방접종 가능

☞ <서식 4-1> 요양시설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 시설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상자 동의 구득 등을 담당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보건소 신고토록 조치

* 보건소는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명단확인 및 접종수요 조사시 예진표와 예방접종 안내문 배포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코로나19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단위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 ◇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예방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00 시군구 방문접종일정(양식)>

연번	시설명	접종 대상자수(명)			접종일자		접종시행 기관명	접종방식		
		합계	종사자	입소자	1차	2차		위탁	방문	내소
소계		000	000	000				00	00	
1	00노인요양 시설	000	00	000	2.26.	3.26.	A병원	0		
2	00정신요양 시설	00	00	00	3.5.	4.2.	보건소		0	
3	00노인요양 시설	00	00	00	3.6.	4.3.	보건소			0

○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정신병원

☞ VI. 요양정신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조

- 관할 보건소는 요양병원 등이 수립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최종 확인하고, 계획수립
- * 계획서는 대상자 현황, 접종 동의 구득 현황, 이상반응 대응 계획 등을 포함
- 요양병원 등이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시행담당자(의료기관담당자) 지정, 제출한 명단 확인 등

☞ <서식 4-2> 요양병원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 <서식 4-2>를 활용하여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접종일정 및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요양병원은 바이알 당 접종 가능 횟수(10회/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 보건소는 요양 병원과 협의하여 초과인원이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조율

☞ <서식 5-2>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안) 계획서는 대상자 현황, 접종 동의 구득 현황, 이상반응 대응 계획 등을 포함

<00 시군구 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양식)>

연번	병원명	접종 대상자수(명)			접종일자		비고
		합계	종사자	입소자	1차	2차	
소계		000	000	000			
1	00요양병원	000	00	000	2.26.	3.26.	-
2	00정신병원	00	00	00	3.5.	4.2.	-

○ 코로나19 1차 대응인력

시군구명	총계(명)	역학조사인력 (명)	119 구급대 (명)	환자 이송 (명)	검역 (명)	코로나19검사 (선별검사소) (명)	코로나19 환자관리 (명)	기타 (명)
00구	00	00	00	00	00	00	00	00

▶ 작성 방법

- 환자이송 업무는 사설구급차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근무 인원 작성
 - *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제외
- 코로나19 검사 인력은 검체 채취, 행정지원 등 인원 작성
- 환자관리 업무는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시설에 근무하는 인원 작성
- 동일 대상자는 여러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1개 분류에만 포함
- 기타: 대응인력 분류에 속하지 않은 보건소 인력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이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 V.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조

-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기타 종사자

-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생활치료센터

- 각 기관에서 최초물량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접종대상자를 조사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을 통해 접종대상자 인적사항, 접종 동의 여부 등 등록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접종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물량 배정 예정

다. 교육 이수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참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교육수료증 보관 필요

- * 예방접종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 보관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

☞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참조

- (교육 권고 대상) 예방접종 시행 행정인력 (의료인을 제외한 행정인력) 등

- 예방접종 시행 행정인력(의료인을 제외한 행정인력)
- 유관기관(콜센터) 예방접종관련 담당자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 등

2. 백신 및 주사기 등 공급

- (백신) 유통업체에서 접종기관으로 직접 배송

- 기관내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 등*과 1차 대응요원 등의 예방접종용 백신은 관할 보건소로 배정. 보건소는 요양시설 등의 접종 당일 백신 배송 및 접종 후 남은 백신 회수***

* 요양시설 등: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요양시설 등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구급대 요원 등

** 최대한 폐기 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알 단위로 배정하되, 개봉하지 않은 잔여백신은 보건소로 반입하여 사용 예정, 예방접종 중 냉장보관 조건(콜드체인) 준수 철저

- 관내 요양병원 등의 코로나19 백신 보관 등 관리 감독 시행

- (주사기) 위탁의료기관 등 예방접종 시행 기관은 접종용 멸균 주사기*(일반 멸균 주사기,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희석용 일반 멸균 주사기**를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단, 초기 공급 물량은 제조업체를 통해 요양병원 등으로 직접 공급

** 희석용 일반 멸균 주사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1.2.2.

* (일반 멸균 주사기) 주사기 잔여량이 0.07mL 이하(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 (LDS 멸균 주사기) 주사기와 바늘의 잔여량이 0.035mL 이하(EMA, 유럽의약품청 기준)

- (예진표 등) 위탁의료기관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안내문 등을 보건소에서 수령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3.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가. 방문접종 운영

- 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등 중 협약의료기관 또는 시설과 계약된 계약의사가 없거나 계약된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소는 자체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방문접종 시행

* 소속기관이 없는 의사 포함 가능(시행비 지급 불가, 인건비 지급 가능)

- 보건소가 구성한 접종팀(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이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접종 당일 구급차* 배치, 보건소 구급차 배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청 구급차-119종합상황실에 신고 등 신속출동체계 마련, 기타 부대물품** 준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연계

*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구성 운영

** 아나필락시스 발생 대비 에피네프린, 자동제세동기 등 포함

*** 주사기 트레이, 체온계, 청진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나. 내소접종 운영

- 보건소내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

- 대상자

- 거동 가능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내소 접종 가능
-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자 중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퇴소(퇴사)자(시행기간 등은 보건소를 통해 별도 안내)
- 코로나19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사전에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하도록 조치
 -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인근 주변 요양병원이나 시설, 또는 보건소 등 접종 가능 장소 및 일정 협의
 - * 고위험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경우 사전에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 접종가능 장소 및 일정 협의

다. 접종지원팀 운영

- 보건소 방문접종팀 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팀이 보건소 접종지원팀과 함께 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 (위탁접종) 요양시설 등과 협약된 의료기관(또는 계약 의사)에서 방문하여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 * 협약의료기관 또는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은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체결 필요
- (접종지원) 지자체 내 접종지원팀을 구성하여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팀(위탁접종팀)과 함께 시설 방문 → 코로나19 백신 및 부대물품(접종용 주사기)*과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 대기 등 준비 담당
 - * 코로나19 백신과 접종용 주사기를 제외한 부대물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준비

4.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 관리

가. 위탁의료기관 관리

☞ VI.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참조

※ 위탁의료기관은 전달체 백신(바이러스백터)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등을 접종시행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 (기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10),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11),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1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신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증,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10),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11),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1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관할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예정(서식 9.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참조)

☞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참여방법 등은 VII.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참조

- (요양병원) 요양병원 자체접종 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 지급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체결 필요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시행비 지급 대상 아님

- (요양시설) 접종대상자(입소자·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 지급을 위해 시설 계약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위탁계약 체결 필요

-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및 고위험의료기관) 의료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위탁계약체결 불필요. 단, 예방접종위탁계약과 별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후 교육 수료증 보관 필요

*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을 위해서는 위탁계약 체결 필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

- (의료기관) 의원 등 의료기관은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으로 위탁계약체결 필요

- (사전점검) 지자체별 점검팀(2인 1조)이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요양병원, 요양시설별 협약의료기관 또는 계약 의사 소속 의료기관,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및 상황 점검
 - (점검주요내용) 사전 교육 이수 여부(교육수료증 확인),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 전담인력 지정 여부,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 ☞ <서식> 4-2, 5-2, 11~13 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전 점검 실시
- *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점검팀 구성 및 각 예방접종 기관별 코로나19 백신 공급일(병원) 또는 예방접종시행일(시설) 전까지 점검
- * 위탁의료기관에서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위탁계약체결(교육 이수 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사항을 점검

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 VII.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mRNA 백신(핵산백신)인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등 접종을 시행

1) 설치 및 운영

- (운영주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센터장은 접종센터 소재지 보건소장
- (설치원칙) 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 약 250개소
 - 인구수 50만 이상 시 1개소 추가 * 적절한 장소가 없을시 인접 시군구 합병 설치 가능
 -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 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와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 등 5개소 우선 설치
 -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2.1. 완료), (권역)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2.15. 완료), (지역)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2월중)
 - 3월 이후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대비, 3월 내 17개소 지역 예방접종센터(시도별 1개소, 경기 2개소), 이후 백신의 도입 물량 및 시기 고려 단계적으로 전국 시·군·구의 약 232개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 (운영기간) 별도 통지
 - 1일 접종대상자 예약제로 운영
- (운영시간(안)) 08:00~17:00, (접종시간) 08:30~16:00 * 세부사항 별도 통지 예정

2) 인력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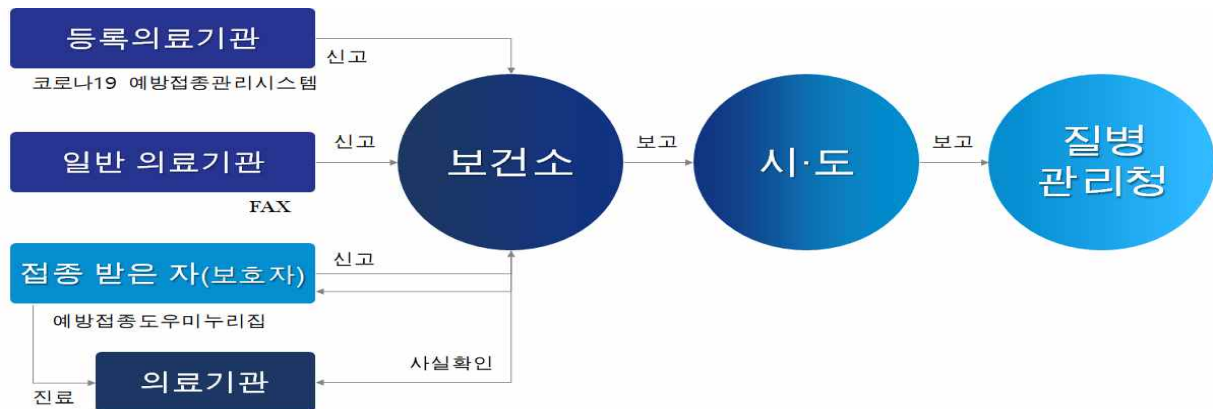
☞ <부록 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 · 관리 지침 참조

- 시·군·구 추진단내 접종기관운영팀에 전담자 지정 · 운영
 - * 예방접종 전담인력은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시·군·구 총원이 원칙
- (운영계획)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운영
 - 시·도 인력운영 전담자는 매 월 7일까지 시·도 인력운영 계획을 질병관리청(접종자원관리팀)으로 제출
- (기본원칙) 전 국민 접종이며 코로나19 유행 지속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접종 센터 전담 인력(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모집 · 선발하여 운영(국비 지원)
- (교육) 시·군·구는 접종센터 전담인력의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 수료여부 확인 등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가. 신고에 의한 이상반응 감시



<신고에 의한 이상반응 감시 체계>

- * 관련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 * 등록의료기관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나. 예방접종 후 모니터링 및 이상반응 신고관리

- (모니터링)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확인 후 귀가하도록 안내
 - 모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하며, 다른 원인으로 심각한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 필요
 - *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문자 일괄 발송 예정(발신처: 주소지 관할보건소) <참고 1 참조>

○ (신고관리) 보건소는 신고받은 이상반응 내역에 대해 확인 및 보고

- (의사가 있는 기관) 기관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감자, 방문접종팀원 등
 - (방법) 접종 실시 →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진료 → 신고 된 이상반응 건에 한해 모니터링 → 접종 7일 후 경과관찰 결과(회복/치료 중) 입력
- (의사가 없는 기관) 기관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종 7일 후까지 매일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록
 - (대상) 요양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등 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
 - 접종 실시 → 매일 이상반응 모니터링 후 시스템에 결과 입력(18시까지) → 중증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관할 보건소에 알림 및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즉시 의료기관 내원
- (개별 접종사례)
 - (대상) 위탁의료기관 및 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 중 예진표 상 문자 수신 동의자
 - (방법) 접종 3일 후 문자알림(URL)* 응답을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 → 보건소 관리

○ (신속대응) 시·도 및 시·군·구는 중증이상반응(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의 신속대응 위해 24시간 보고 체계 유지

* 시·도는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절차>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응급상황 대비 구급차 지원

○ 접종 유형별 지원 기준

- 보건소 방문접종 시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이송
- 자체 구급차가 있는 의료기관이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 시, 의료기관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이송
- 일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자체 구급차가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은 119 신고를 통해 환자를 이송

○ 지자체 조치사항

- 지자체별 예방접종 시행 전 지자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계획 공유 및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 가능여부 확인

구 분		지원 우선순위
방문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팀	①보건소구급차→②소방청구급차→③119신고(신속출동체계)*
	위탁의료기관방문접종팀	①위탁기관 구급차→②보건소 구급차→③소방청 구급차* →④119신고(신속출동체계)
위탁의료기관	구급차가 있는 병원급	①위탁기관 구급차→②119신고(신속출동체계)
	구급차가 없는 의원급	①119신고(신속출동체계)

* (119신속출동체계) 접종계획(장소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기관, 보건소, 소방서 구급차 사전 가용여부 확인 및 제한시 119신고

- 구급차가 제한된 상황이므로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119 신고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 임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6. 국가피해보상 절차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기준 완화)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완화
- (절차 간소화)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 → ③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 ④ (질병청)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⑤ (질병청) 보상금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보상신청자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와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시도) 신속 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및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질병청에 제출 → ④ (질병청)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서면) → ⑤ (질병청) 보상금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

참고1. 문자알림(안) (발신번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당일 확인 문자(안)]	
[이상반응 신고 안내]	

문자 발송 계획(안)		
구분		주요 내용
1차 접 종	① 사전예약 안내 (D-35일경)	접종대상 순서가 되었을 때 예방접종 예약을 위한 안내 문자
	② 예약 확정 (D-14~21)	예약한 접종일정의 확정 안내 문자
	③ 예방접종일 전날 (D-1일)	1차 예방접종 예약일 1일 전에 예방접종 장소, 일정 등 안내 문자
	④ 예방접종 당일 (D-day)	접종받는 예방접종내역 확인,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안내, 2차 예방접종일 안내
	⑤ 접종 후 3일째 (D+3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확인 및 신고 안내
2차 접 종	⑥ 2차 예방접종 변경기간 안내	2차 예방접종 예약일 안내 및 변경 가능기간, 변경 방법 안내
	⑦ 예약확정 안내	예약한 접종일정의 확정 안내 문자
	⑧ 예방접종일 전날 (D-1일)	2차 예방접종 예약일 1일 전에 예방접종 장소, 일정 등 안내 문자
	⑨ 예방접종 당일 (D-day)	접종받는 예방접종내역 확인,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안내, 2차 예방접종일 안내
	⑩ 접종 후 3일째 (D+3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확인 및 신고 안내

* 접종대상자, 백신의 접종용법(1회 또는 2회 접종), 접종간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1-1판)-요양시설 등> 참고

1.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 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가.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20조, 지역보건법 제27조, 제23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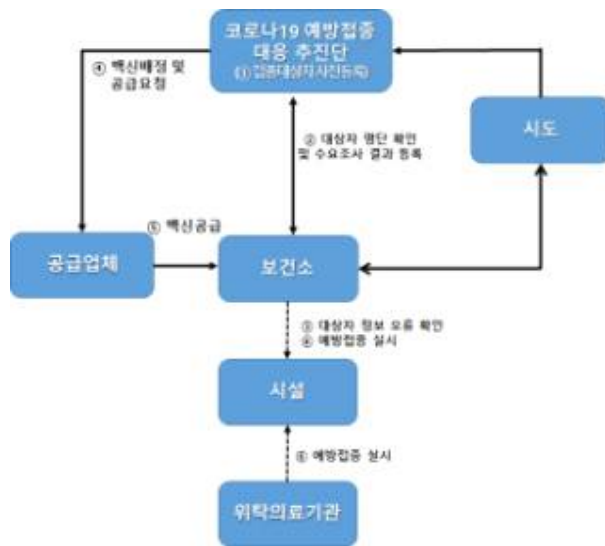
- 요양시설 등의 입소자 및 종사자 전체
- **(1분기)** 만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우선 접종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만 65세 이상 접종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유보(만 65세 이상 연령에서의 백신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접종방안 추후 별도 안내)
 - * 코로나 19 취약시설(노인재가·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은 2분기 접종 실시
 - 1차 접종 후 퇴소(퇴사)자는 시설 관할보건소를 통해 2차 접종 시행(예방접종 시행기간 등 세부일정은 보건소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 전*에 신규 입소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조사하여 백신 배정
 - * (1차와 2차 접종간격) 8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권장접종간격 8주~12주)
 -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또는 종사자)는 2~3분기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 단, 접종 당일 백신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

다. 예방접종 업무 체계도

일정	주요사항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요양시설 등
1 단계	예방접종 대상자 사전등록		○ 예방접종 공고 ○ 접종 수요조사 및 대상자 승인	○ 입소자 명단 확인 및 접종 대상자 수요조사 협조
2 단계	예방접종 실행계획 수립	○ 접종계획 수립 ○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 접종계획 수립 ○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 방문접종팀 지원팀 등 구성 ○ 보건소 내소접종 계획 수립 ○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 접종계획 수립
3 단계 접종준비	예방접종 준비	○ 예방접종팀 구성, 접종물품 준비 등	○ 시설내 접종장소 및 접종 대상자 확인 ○ 백신 수령 및 예방접종 물품(접종용 주사기, 안 내문, 예진표 등) 등 준비사항 점검 * 이상반응 발생 대비	○ 예방접종 장소 확보
4 단계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실시	○ 예진 및 접종실시(예진표 보관)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방문접종/내소접종시 예진 및 접종실시(예진표 보관),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위탁의료기관 접종관리(백신, 주사기 인계, 모니터링 등)	○ 방문접종 시 협조
5 단계 접종 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 대응 및 신고	○ 요양시설 등의 경과관찰 여부 확인	○ 기관 담당자 지정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접종 후 7일까지)

[요양시설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요내용]

라. 요양시설 등의 예방접종 시행 체계 및 역할



기관	역할
질병청	- 접종대상자명단 확인 요청
시도	- 접종대상자 현황관리, 물자, 인력 지원
보건소	- 접종대상자명단 확인 및 접종대상 확정 - 접종일정 관리 - 접종지원팀 운영 - 내소 접종 제공
방문 접종팀	- <u>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u> 수립 - 방문접종 및 접종내역 등록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체계>

마. 예방접종 인력 의무교육 이수

- 예방접종(방문접종, 위탁접종, 시설 자체접종 등) 참여 인력(의사, 간호사 등)은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필수) 의사, 간호사, (권고) 그 외 예방접종 참여 관계자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방법

- (백신·주사기 공급) 요양시설 등 예방접종용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는 유통업체를 통해 보건소로 직접 배송, 보건소에서 배정
 - * 백신 및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요양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약의료기관** 또는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접종지원팀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또는
- 보건소가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

- ☛ 요양시설과 연계된 의사의 계약형태*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비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의료인 소속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형태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음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참여	시행비 지급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보건소와 계약	인건비 지급

* 관할 지역 내 접종일정을 접종대상자와 협의하여 주말에도 방문 또는 보건소 내소 접종 추진

- (접종 후 관리) 보건소는 요양시설 등에 이상반응 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

<보건소 방문접종> * 의료기관 미소속되어 보건소와 계약된 의사 포함

[접종 전]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보건소) 및 방문접종팀 구성*
* 방문접종팀 인력(안) : 의사 1명(1일 100명 기준), 간호사 1~2명, 행정인력 2~3명
-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예진 의사, 접종간호사, 행정인력 대상)
- ③ 요양시설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 지정
- ④ 코로나19 백신 인수 및 관리

[접종 후]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입력(보건소)
- ② 요양시설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를 통해 이상반응 모니터링

<요양시설별 계약의사(위탁기관) 방문접종>

[접종 전]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수(계약의사, 접종간호사, 행정인력 대상)
- ② 계약의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위탁계약 체결
- ③ 요양시설별로 예방접종 담당자 지정
- ④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보건소 및 계약의사 소속의료기관) 및 방문접종팀 구성*
* 방문접종팀 인력(안) : 의사 1명(1일 100명 기준), 간호사 2명, 행정인력 1~2명
- ⑤ 예방접종 당일 보건소 접종지원팀(행정인력 2~3명)이 해당시설에서 백신 제공 및 지원

[접종 후]

- ① 예방접종 내역 입력(협약의료기관 또는 계약의사 소속의료기관)
- ②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비용 상환 신청
- ③ 요양시설별 예방접종 담당자를 통해 이상반응 모니터링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준비사항

가. 위탁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은 요양시설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하여 보건소 제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대상자 확인 및 시행방식, 시행예정일 등 등록
 - * 예방접종대상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기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 전 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 (계약의사 지정이 가능한 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 간호사)은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실시

- (기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10),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11),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1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 관할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서식 5-1.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예정
- (신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증,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10),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11),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1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 의료기관 소속 관할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예정

◆ (예시) 계약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 주소지 관할보건소(A)와 방문 예방접종 할 요양시설 주소지 관할 보건소(B)가 다를 경우

- (위탁계약체결)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A)
- (접종지원팀 구성) 요양시설 주소지 관할 보건소(B)가 접종지원팀 구성, 방문접종 시 계약의사와 함께 시설 방문
- (백신 및 주사기) 요양시설 주소지 관할 보건소(B)에서 코로나19 백신 소요량 및 주사기를 반출하여 시설로 방문 예방접종

- 위탁의료기관은 방문 접종팀(의사, 간호사 등)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시행
- 요양시설 관할 보건소*(접종지원팀**)에서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시 함께 시설 방문 예정
 - *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용 주사기 구비, 응급상황 발생 대비 구급차 대기 등 준비
 - ** 지자체별 추진단 내 행정인력 2~3명으로 구성
- (응급상황 대비) 중증이상반응 등 응급상황에 대비 응급처치키트 및 구급차 대기 등 안전 조치 포함
 - 응급상황 시 사용할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은 방문접종 의료기관에서 준비

- 자체 구급차가 있는 의료기관이 시설 방문접종 시, 의료기관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이송

* 관할 지자체는 사전에 지자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급차가 제한된 상황이므로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119 신고시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임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구 분		지원 우선순위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팀	①위탁기관 구급차→②보건소 구급차→③소방청 구급차* →④119신고(신속출동체계)

* (119신속출동체계) 접종계획(장소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기관, 보건소, 소방서 구급차 사전 가용여부 확인 및 제한시 119신고

○ (백신) 접종 당일 보건소(접종지원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를 인계받아 접종 실시

- 접종지원팀은 방문 접종 후 잔여백신(개봉 전 및 개봉 후 백신)을 확인하여 회수

* 보건소(접종지원팀)는 코로나19 백신 소요량 및 주사기를 반출하여 시설로 방문예방접종 시 콜드체인 유지 관리 모니터링, 접종 후 잔여 백신(개봉 전 및 개봉 후 백신) 확인 및 회수 예정

* 개봉하지 않은 잔여백신은 보건소로 반입하여 사용 예정, 접종 중 냉장보관조건(콜드체인) 준수 철저

☞ 당일 보건소가 반출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인계받아 예방접종에 사용 <서식 30-1> 코로나19 백신 관리대장 양식을 변경하여 인계서 작성

○ (접종물품) 백신,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물품*, 여유분 주사기 등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준비

* 알코올 솜, 주사기 트레이, 주사침 폐기통,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 손실률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물품은 예방접종 대상자수의 추가 5% 이상 준비

- 코로나19 예방예방접종 안내문과 예진표는 보건소에서 인쇄*

* 접종 대상자 수요조사(예방접종 설명, 정보 전달 등)를 위해 시설에 사전 배부

☞ <서식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서식 30-1~3>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 (기록관리)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대해 직접 전산등록 및 접종내역 확인서 발급

☞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서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참조

- 전산등록한 예방접종 기록을 기반으로 협약의료기관,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위탁 정산 예정(향후 별도 통지)
- * 시행비 지급을 위해 해당 협약의료기관, 계약의사 소속의료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체결 필요(A 위탁기관이 aa 보건소 주소지 관할이고, B요양시설은 bb 보건소 거주지 관할 때, **A위탁의료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위탁계약체결**)

나. 보건소

1)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 관할 보건소는 시설별 종사자 및 입소자 대상 접종동의 구득 현황, 접종시행일정, 이상반응 대책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 (접종 대상자 승인) 보건소는 등록시스템상 사전 등록된 접종대상자(입소자·종사자) 명단 확인, 필요시 수정·보완,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
 - * 접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입소자 명단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내 ‘대상자 관리(보건소)’에 일괄 사전 등록 예정
- (수요조사/동의구득) 요양시설책임자 등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등을 배부하여 예방접종 시행 전 시설 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동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접종 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가) 내소 접종

- 요양시설 등은 지역의 상황 등에 따라 보건소에 내소하여 예방접종을 받음, 보건소와 세부 예방접종 일정 등 협의 시행
 - * 코로나19 백신의 폐기량이 최소화되도록 예방접종 일정 수립
 - * 아나필락시스 대비 에피네프린 등 구비, 구급차 대기 등
- (기록관리) 보건소는 예방접종 실시내역에 대해 **직접 전산등록, 예진표 보관**

나) 시설 방문접종

- 보건소가 요양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문 접종팀(의사, 간호사, 행정인력)을 구성, 방문접종 실시
 - * <서식 6>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방문접종팀 자체점검
- 보건소는 예방접종 당일 시설에 예방접종 수요 재확인 및 구급차* 배치
 - * 아나필락시스 대비 에피네프린, 자동제세동기 등 구비

- 보건소 구급차 배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청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이송

- * 관할 지자체는 사전에 지자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급차가 제한된 상황이므로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119 신고시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임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구 분		지원 우선순위
방문접종	보건소방문 접종팀	①보건소구급차→②소방청구급차→③119신고(신속출동체계)*

- * (119신속출동체계) 접종계획(장소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서 구급차 사전 가용여부 확인 및 제한시 119신고

- 요양시설 예방접종 담당자를 통해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백신) 예방접종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온도 유지하여 코로나19 백신 반출 및 사용
- 사용 또는 미사용 코로나19 백신은 보건소로 회수
 - * 폐기 백신은 향후 유통업체에서 수거 예정(의료폐기물)
- ☞ <서식 31> 코로나19 백신 회수량 인수인계서
- (기록관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실시내역에 대해 직접 전산등록, 예진표 보관

다) 접종지원팀

- 위탁의료기관이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접종지원팀이 코로나 19 백신 및 주사기를 반출하여 접종 책임자에게 현장 인계하고, 예방접종 시 콜드체인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 미개봉 잔여백신은 보건소에서 회수하여 사용 예정으로 콜드체인 유지 철저
- 접종용 주사기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등 준비

다. 요양시설

- 시설의 장은 시설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를 지정
-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 파악 및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또는 보호자) 동의 구득
 -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접종 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상 접종동의 서명으로 갈음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 구득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별도로 기록

- 예방접종실 및 접종 후 관찰실*, 이상반응 조치실은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함

*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입소실(입원실)로 돌아가서 관찰 가능 (입소실내 관찰자 지정 등)

- 예방접종은 **입소자→종사자** 순으로 진행하되, 입소자 예방접종 및 접종 후 관찰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종사자 예방접종을 실시

- 거동이 불편하여 접종실로 이동할 수 없는 예방접종대상자는 사전에 파악하여 입원실에서 별도로 예진 및 접종 시행

-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대기 및 접종장소 확보

- (접종 준비 공간) 백신(주사액) 준비를 위해 예방접종 공간과 분리하여 청결구역으로 운영

- (접종실) 예방접종대상자용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하여 예방접종대상자가 앉아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며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 등 설치

* 접종 후에는 최소 1분간 앉은 상태로 안정을 취한 뒤 관찰실로 이동

- (접종 후 관찰실) 예방접종인원수를 고려하여 등받이 있는 의자를 마련하여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

- (이상반응 조치실) 응급상황 대비 응급처치를 위한 침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등 설치

-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요양시설 예방접종담당자 지정

☞ 보건소는 서식 4-2 요양시설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점검

IV. 요양·정신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1. 요양·정신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 요양병원, 정신병원

가. 관련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20조, 지역보건법 제27조, 제23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 요양병원, 정신병원(이하 요양병원 등) 입원·종사자 전체 (37.5만명)
 - 다만, 1분기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만65세 미만(1957.1.1 이후 출생자) 우선 접종(16.9만명)
 - * 65세 이상 접종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유보(만 65세 이상 연령에서의 백신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접종방안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2.10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에 대해 개별 기관에서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16일)하여 접종 대상자 확정
 - * 기관별 접종대상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2.19일)
 -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다. 예방접종 시행방식

- 요양병원 등은 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입원자 및 종사자에 대해 자체 접종 시행

◆ 예방접종팀 구성

- 의사: 예진,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처치
- 간호사: 코로나19 백신 준비, 접종실시, 응급처치 지원
- 행정요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체계도

일정	주요사항	요양병원 등 자체접종기관	보건소
1 단계	예방접종 대상자 사전등록	○ 관리자 지정 및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 종사자 및 환자 명단 확인 및 등록 ○ 예방접종여부 수요조사	○ 예방접종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 예방접종 공고 ○ 예방접종대상자 명단 승인
2 단계	예방접종 실행계획 수립	○ 예방접종계획 수립 ○ 예방접종 장소 확보 ○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 준비사항 점검 및 지원 ○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3 단계 접종	예방접종 준비	○ 예방접종장소 및 준비사항 점검 ○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준비물 (예진표, 안내문) 수령	○ 백신 수령 여부 확인 ○ 예방접종 사전준비물(예진표, 안내문) 배포
4 단계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실시	○ 예진 및 접종실시 (예진표 보관) ○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예방접종실시 현황 관리
5 단계 접종 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현황 파악 ○ 이상반응 대책반 운영

마. 예방접종 인력 의무교육 이수

- 예방접종 참여 인력(예진 의사, 간호사 등)은 반드시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2.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 (공급백신)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 (백신공급) 코로나19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되, 1차와 2차 예방접종에 필요한 총 백신물량을 2회로 나눠서 공급
 - 1회차 백신공급시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하여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하여 병원당 백신공급 물량 조정

* (포장단위) 1박스 = 10바이알, 1바이알=10회분, 1회 용량=0.5mL

*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10회분 단위로 바이알을 개봉하여 사용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포장단위가 10바이알(10회/바이알)으로 요양병원 등 필요물량에 대해 1차와 2차 접종 물량까지 고려 10바이알(100회분) 기준으로 배정하고 2차 접종 물량 공급시 조정 예정

* 폐기량 최소를 위해 1바이알의 사용가능단위(10회분)로 바이알 개봉

◆ (예시1) A 요양병원 만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총133명

⇒ (공급 물량) 1회차 2박스(20바이알), 남은 백신은 2회차에 A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

구분	공급물량	시행방법
1회차	1박스 (20바이알)	※ 1차 예방접종시 13바이알 개봉, 7바이알은 2차 예방접종을 위해 보관 • 13바이알로 130명 예방접종(입소자 → 종사자 순으로 접종) • 3명(종사자로 배정)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접종 • 개봉하지 않은 7바이알은 자체 보관 철저(냉장보관, 2차 예방접종시 사용)
2회차	6바이알	※ 1차 예방접종 후 보관 중인 7바이알 + 신규 배송 받은 6바이알 등 총 13 바이알로 예방접종 • 13바이알로 130명 예방접종(입소자 → 종사자 순으로 접종) • 3명(종사자 등으로 배정)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접종

- 1차 접종 후 퇴소(퇴사)자는 당초 근무하던 병원 또는 관할보건소를 통해 2차 접종 시행(예방접종 시행기간 등 세부 일정은 당초 근무하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안내)
-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 전*에 신규 입소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조사하여 백신 배정
 - * (1차와 2차 접종간격) 8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권장접종간격 8주~12주)
- 코로나19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또는 종사자)는 2~3분기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
 - 단, 접종 당일 백신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
 - * 해당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및 종사자 접종 완료 후에도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지속한다면, 향후 대상자별 사업 시기에 해당 요양병원 외래에서 접종 가능

〈대상자 및 코로나19 백신 배정 절차〉

- ▲ 예방접종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 예방접종대상 명단확인 및 제출(요양병원)
- ⇒ ▲ 예방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 백신 배송(유통업체 ⇒ 요양병원)
 - * (입원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1.28.일 입퇴원 일일보고 자료 기준
 - * (종사자) 건강보험가입자 1.29일 기준 자료

○ (주사기 공급) 제조업체에서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

-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 2차 접종물량에 대한 주사기는 보건소를 통해 수령 예정(별도 통지)

3.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별 사전 준비 사항

가. 요양·정신병원

1)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요양병원의 장은 개봉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전·중·후에 대한 일자별 계획 수립, 접종 동의 구득 현황, 이상반응 대응 등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제출

☞ <서식 4-2> 요양병원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시행 담당자(이하 의료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인근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조율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입원환자, 의료인, 의료인 외 종사자 순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의료인 등 종사자 접종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접종 등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건강상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접종자 발생시 다음 순서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실시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코로나19 백신 바이알 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

*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보건소 등 접종 가능 장소 및 일정 협의

◇ 부득이 접종당일 접종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 발생하고 후순위 접종자가 없는 경우 잔여백신은 폐기 처리

◇ 집단면역 신속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하여 입원종사자 등에 대해 접종 시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입원환자 및 종사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원환자 및 종사자 명단*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수령하여, 입원환자 및 종사자의 접종수요 조사시 활용
-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 구득
-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별도로 기록

2)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 추진

-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 추진
 -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 관할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예정 (서식 9.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참조)

3) 이상반응 대응 계획

- ① 아나필락시스 원만한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필수,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 자체 구급차가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구급차 이용, 구급차가 없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19 신고*를 통해 환자를 이송
- * (119신속출동체계) 접종계획(장소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4) 코로나19 예방접종팀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예진의사 1인 이상, 간호사, 행정인력 등 접종 필수인력 확보
 - * (예진의사) 예진, 접종, 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등 수행, (간호사) 예방접종시행, (행정인력) 접수, 예방접종내역 입력 등 수행(백신 공급, 오접종 예방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을 위해 실시간 등록 필요)
 - **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5)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

(1) 백신보관·관리

- ①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

온도기록계* 등)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 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접종기관)

* 지자체를 통해 백신보관냉장고 온도계 구비를 위한 예산지원(지원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 통지)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백신 필요물량은 공급업체가 2회로 나눠 직접 요양병원으로 배송, 의료기관 담당자(백신관리 담당자)가 백신 인수, 검수 및 입고 처리

* 요양병원등 내 백신 입고 물량은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고 처리 예정

☞ <서식 28>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1회차 배송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상자(10바이알)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2회차 배송시 개별 바이알 단위로 배송 예정 (1바이알=10회분, 1회분=0.5mL)

- 요양병원에 배정된 백신 중 1차 예방접종 후 잔여 백신은 2차 예방접종시까지 보관온도(2℃~8℃)를 준수하여 보관관리 철저

* (예시) A 병원의 접종대상자 133명의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A병원으로 백신 2상자(20바이알)이 직접 배송됨. 1차 예방접종시 13바이알 사용(130명접종), 그 외 3명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접종, 7바이알은 요양병원에서 2차 예방접종용으로 보관

* 요양병원에서 백신 보관시 다른 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배송받은 백신 포장상자에 넣어 냉장(2℃~8℃) 보관 철저

(2) 예방접종 물품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접종용 주사기는 요양병원 등이 보건소에서 수령

* 단, 초기 예방접종용 주사기는 요양병원 등으로 직접 배송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요양병원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 <부록 12> 접종물품 정보 안내

6)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 준비

-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 필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등
- 거동이 가능한 입원환자는 별도의 접종 장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외상환자는 병실에서 접종
- 의료진 및 종사자 접종을 위해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 접종실 및 접종 후 관찰실은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
- 접종대상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접종 시간 조절, 일방통행식(일방향)으로 동선 구성
- 접종자용 탁자와 접종대상자용 의자를 배치하며 접종자용 탁자 위에 체온계, 손상성 폐기물함, 알코올솜, 손소독제 등 구비, 접종시행 장소와 백신 준비구역(준비대)는 공간 분리*
 - * 가림막 등을 활용 구역 분리 가능, 백신 주사액은 청결구역에서 준비
- 간호사 업무공간(간호사실) 등 청결구역에서 백신(주사액) 준비
 - 출입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별도의 준비대를 만들고, 백신 준비
 - 간호사 업무공간(간호사실)의 준비대에서 접종준비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예방접종 직전 백신을 주사기에 준비하고, 바로 접종
-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입원자 접종) 병원별 특성 및 환자 상황에 맞춰 병동 단위(ward)로 순환 접종 또는 별도의 접종실 등에서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대상자는 눕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분간 침상 안정 또는 앉은 상태로 안정을 취한 뒤 예방접종 완료자 병실로 이동하여 관찰 필요
 - * 접종 후 병실로 돌아갈 때는 보호자 또는 의료진을 동반하여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
 - 예진 의사가 예진하거나, 환자의 담당의사가 접종 당일 예진표 확인 및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접종
- (종사자 접종) 입원자 접종 및 접종 후 관찰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며, 종사자 접종실과 접종 후 관찰실 준비

- 환자 진료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종사자 접종 순번 등을 계획하여 접종
- 예방접종 대상자용 의자를 준비하여 접종대상자가 앉아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백신) 예방접종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온도 유지하여 코로나19 백신 사용
 - 1바이알은 10회 투여용량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바이알 개봉
 - * 10명 미만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실시
- (기록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기록 등록
 - * (등록내용) 접종일시, 접종부위, 백신 제조번호, 접종자명 등
 -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후 1시간 이내 접종확인 문자 발송
 - * 예방접종 기록이 오후 6시 이후에 등록된 경우 일일 9시에 문자 발송
 - * 코로나19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1차/2차 예방접종기록 등록 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 (확인서 내용) 1차 접종일, 접종받은 백신 제조사명, 2차 접종 가능일
 - * 확인서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 불가



-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접종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발급
 - (접종대상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접종시행비) 입원환자에 대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시행비 청구
 - * 의료인 및 종사자 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미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행비 지급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기록을 기반으로 지급 예정이며, 세부사항 별도 통지)

나. 시·군·구(보건소)

- (접종 대상자 승인) 보건소는 등록시스템상 사전 등록된 예방접종대상자(입소자·종사자) 명단 최종 승인·확정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인근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조율 예정
- *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전담인력 지정 여부, 예방접종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V.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지역보건법」 제27조, 제23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보건소는 접종장소를 별도로 지정공고하고, 시설 및 단체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수탁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 제공 가능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 ①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 ② 정신건강의학과와 폐쇄병동이 있는 의료기관은 폐쇄병동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음)

* 입원환자 접종시 위탁계약, 시행비 지급, 접종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요양병원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과 동일하게 진행

- A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 있는 경우, 전체 보건의료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청소인력 등 전체 종사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까지 포함(개방병동 입원환자는 미포함)
- B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이 있는 경우, 동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C 정신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만 있는 경우, 병원 전체 포함

- ③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원 전체 종사자로 확대

* 기 안내한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 접종 완료(코로나19 예방접종-예방접종센터용 지침, III. (최초물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예정이며, 접종 일정 등은 별도 공지 예정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정 절차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에 대해 개별기관에서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25일), 지자체에서 접종 대상자 최종 승인·확정(2.27일)

〈대상자 및 코로나19 백신 배정 절차〉

예방접종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예방접종대상 명단확인 및 제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예방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백신 배송(유통업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보건의료인) 건강보험가입자 1.29일 기준 자료

-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된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으로, 미동의자 인원수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비 명단** 사전 마련

* (백신 공급량) AB 병원 예방접종대상(만 65세 미만 보건의료인) 총120명, 이 중 동의자 80명

- 코로나19 백신은 120명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배송될 예정

** (예비명단) 1.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2.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3. 진료 보조 종사자, 4. 그 외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인력 등

- 예비명단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미동의자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총 등록대상자 인원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접종 가능

- 접종 당일 추가 접종한 인원에는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가능

- 1차 예방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향후 일반 접종 순위에 따라 접종

- 2차 예방접종은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종 완료

* (1차와 2차 예방접종 간격) 8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권장접종 간격 8주-12주)

- 1차 예방접종 후 퇴사자가 병원급 이상 타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예방접종이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접종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예방접종 가능, 만약 해당 기관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 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예방접종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 (접종일정) 2021년 3월 4일부터 5월 중순까지(예정)

- 접종대상자(보건의료인)의 근무형태, 접종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기간 중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 시행
- 접종대상자가 3,000여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가급적 10일 내 접종 완료
- *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기 안내한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 접종 완료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예정이며 접종 일정 등 별도 공지 예정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일정	주요사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소
1 단계	예방접종 대상자 사전등록	○관리자 지정 및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등록된 보건의료인 명단 확인 및 보완 ○예방접종여부 수요조사	○예방접종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예방접종 공고 ○예방접종대상자 명단 승인·확정
2 단계	예방접종 실행계획 수립	○예방접종계획 수립 ○예방접종 장소 확보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준비사항 점검 및 지원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접종기관 관리
3 단계 접종	예방접종 준비	○예방접종장소 및 준비사항 점검 ○백신 및 접종준비물(주사기, 예진표, 안내문) 수령 및 준비	○백신 수령 여부 확인 ○예방접종 사전준비물(주사기, 예진표, 안내문) 배분
4 단계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실시	○예진 및 접종실시(예진표 보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예방접종실시 현황 관리
5 단계 접종 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현황 파악 ○이상반응 대책반 운영

마. 예방접종 인력 의무교육 이수

- 예방접종 참여 인력(예진 의사, 간호사 등)은 반드시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 보건의료인 접종 완료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환자(입원환자 포함) 등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이 필요하며 위탁 계약 이후 시행비 지급 가능

2.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 (백신공급) 코로나19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되며, 1차와 2차 예방접종에 필요한 총 백신물량을 2회로 나눠서 공급
 - 1회차 백신 공급시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하여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 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하여 병원당 백신공급 물량 조정
 - * 백신 공급량 산출기준: 1박스 = 10바이알, 1바이알 = 10회분
 - *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10회분 단위로 바이알을 개봉하여 사용
- (주사기 공급)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로 배송,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3.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별 사전 준비 사항

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정보(보건의료인 규모, 접종 동의 구득 현황, 백신 배정량), 일자별 예방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을 포함한 자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출
 - 접종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을 고려하여 백신 폐기율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 <서식 4-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기관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 및 백신관리담당자(이하 의료기관 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통지
 -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관할보건소 등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조율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 의료인 등 종사자 접종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접종 등
-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을 기준으로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으로, 미동의자 인원수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못하는 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비 명단 사전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보건의료인)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명단*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1.29 기준 자료
 - * 예방접종여부 수요조사 결과 등록 및 제출 후에는 추가 수정 불가
 -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수령하여, 보건의료인의 접종수요 조사시 활용

2)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필수)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필요시)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와 폐쇄병동 입원환자 접종 시, 시행비용 청구를 위해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 추진
 -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 관할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예정 (서식 9.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참조)

3) 이상반응 대응 계획 수립

- 원활한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필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을 위한 관찰실(별도 공간 등)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필요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4) 예방접종팀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등

5)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

(1) 백신보관·관리

- ① 백신관리담당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준비, ③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등)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접종기관)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지자체를 통해 예산지원(지원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 통지 예정)

-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 이탈 등을 대비 냉장고 설비 연락처, 지자체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백신전용냉장고 옆 등에 게시
- 백신은 유통업체가 직접 접종기관으로 배송예정으로,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인수, 검수하고 즉시 신속하게 백신을 백신 보관 냉장고에 보관

☞ <서식 28>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1회차 배송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 단위로울 기준으로 배정(1바이알은 10회 접종 용량임)

* (예시) A 병원의 접종대상자 133명의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A 병원으로 백신 13바이알이 직접 배송됨. 1차 예방접종시 13바이알 사용(130명접종), 그 외 3명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접종

(2) 예방접종 물품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예방접종용 주사기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 <부록 12> 예방접종물품 정보 안내

6)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 준비

- 병원내 별도의 예방접종공간을 마련하여 예방접종

- 접종대기, 접종준비,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하고 동선은 일방통행식 (일방향) 동선으로 구성

① (접종대기) 접종대상자 확인, 접종대상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접종 시간 조절

② (접종준비) 청결구역에서 백신(주사액) 준비 위한 별도 공간 확보

-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별도의 주사 준비대를 만들고, 백신 준비
- 간호사 스테이션 준비대에서 할 수 있으나,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가급적 예방접종 직전 백신을 주사기에 준비하고, 바로 접종

③ (접종)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 및 예방접종 시행 등

- 백신 준비대(청결구역)와 가급적 공간을 분리*하여 접종자용 탁자와 접종대상자용 의자를 배치하며 접종자용 탁자 위에 체온계, 손상성 폐기물함, 알코올솜, 손소독제 등 구비
-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구역 분리
- 인터넷, 프린터(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등), 스캐너가 연결된 컴퓨터 보유* 필요

④ (접종 후 관찰) 접종장소과 구분하고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 아나필락시스 발생 등에 대한 응급 처치 마련(에피네프린 등)

☞ <부록 1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 접종) 자체 점검사항 점검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환자 진료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
 - 예방접종 대상자용 의자를 준비하여 접종대상자가 앉아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백신) 적정 온도(2℃~8℃)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백신 사용
 - 1바이알은 10회 투여용량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바이알 개봉
 - * 10명 미만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배정 이후 신규 보건의료인 및 종사자*의 경우 2~3분기 성인(2분기: 만 65세 이상, 3분기: 만18~64세)의 해당 예방접종기간에 접종 권고
 - * 예방접종 당일 개봉백신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수요조사 당시 미동의자가 접종 희망하는 경우 등)
 - * 해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 접종 완료 후에도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실시(지속)한다면, 향후 대상자별 사업 시기에 해당 병원 외래에서 접종 가능
 - 개봉한 코로나19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대상으로, 향후 유통업체에서 수거 예정(의료폐기물)
- (기록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필요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당일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 코로나19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접종시행비) 보건의료인 등 종사자에 대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미지급

나. 시·군·구(보건소)

-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안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최종 승인·확정
- 의료기관(자체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전담인력 지정 여부, 예방접종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VI.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 지침(위탁의료기관용)> 참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개요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

- 접종대상 및 시기는 **향후 추가 안내 예정**
-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제로만 신청
 - 사전예약된 수량만큼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될 예정
- * 사전예약은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및 시간 선택 가능, 사전예약 방법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 방법은 추후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다.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 (공급백신) 유통업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社,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백신공급) 유통업체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대상자 및 코로나19 백신 배정 절차>

접종 가능시기 안내(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 예방접종 예약(접종대상자) →
예약 확정(위탁의료기관) → 배송(유통업체 → 위탁의료기관)

- (주사기 공급)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수령
 - 예진표·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수령하며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백신	주사기	예진표·안내문	그 외 접종물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	보건소에서 수령	보건소에서 수령 * 부족분은 의료기관 자체 준비	의료기관 자체 준비

2.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운영 관리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일정	주요사항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1 단계	위탁계약	○관리자 지정 및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예방접종 장소, 물품 등 확보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위탁의료기관 모집 ○준비사항 점검 및 지원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확인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예방접종 공고
2 단계 접종	예방접종 준비	○대상자 예약 접수 및 확정 ○예방접종장소 및 준비사항 점검 ○백신 및 접종준비물(주사기, 예진표, 안내문) 수령 및 준비	○백신 수령 여부 확인 ○주사기, 예진표, 안내문 배분
3 단계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실시	○예진 및 접종실시(예진표 보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예방접종실시 현황 관리
4 단계 접종 후	비용상환	○비용상환 신청	-*
5 단계 접종 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현황 파악 ○이상반응 대책반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비용상환 기준 자체 검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상환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 (참여 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백신 보관·관리, 인력·시설·공간 확보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지정 예정
- (백신보관·관리) ①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이탈 시 알람기능 보유,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

* 지자체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1개소 당 25만원까지 예산지원(1월 28일 구매 건부터 적용)

-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 이탈 등을 대비 냉장고 설비 연락처, 지자체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백신전용냉장고 옆 등에 게시

☞ <부록 10>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접종기관 관리사항)

- (인력 확보) ① 예진 의사 1인 이상, ② 간호인력 등 확보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접종완료자 요청 시) 등
- (시설 확보)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 예방접종 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간이며,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분리되어야 함(백신 희석 및 주사준비 등 수행)
- (이상반응 대처) ①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 등* 구비,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119 신고

* 상세한 내용은 <부록 7>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119 신고시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임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의료인(의사, 간호인력) 및 접종업무 담당자
 - (필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권고) 예방접종 시행 행정인력(의료인을 제외한 행정인력)
 - (교육시기) 예방접종 시행 전 교육 이수 완료
 - (교육기간) 2021. 2. 8. ~ 2021. 12. 31.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교육과정 이수
 - (교육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전반적인 사항(코로나 백신 특성, 접종 술기 등)
- ☞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2)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이수

(1) 기존 위탁의료기관(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

(2) 기존 위탁의료기관(기본교육 이수 후 최근 2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 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수교육

* 해당 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관련 보수교육 이수 : [보수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보수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3월 2일 이후 필수 이수)

*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개편으로, 2021년 온라인 교육 과정 오픈 이후(2021.3.2.예정)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필수 이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방법]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관리 User(학습자)’ 신청. 이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 로그인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선택 후 온라인 교육 신청, 수강종료 후 수료 확인 및 수료증 출력
-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교육 관련 상세내용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별첨자료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3) 신규 의료기관(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체결 기관)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또는 [기본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3월 2일 이후 필수 이수)

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절차〉

①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제출(위탁의료기관)

* <부록 14, 15> 시스템 권한신청 및 계약방법 등 매뉴얼 참고

②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지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지자체)

③ 전자계약으로 위탁계약 체결(위탁의료기관, 지자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참여(의료기관)

○ (필요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서식 10), 통장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14)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기본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필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제출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자계약 시 주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수료번호(특수기호 포함 13자리)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 수료번호(숫자만 10자리)를 시스템에 입력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계약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2020. 6. 25. 이전 계약한 의료기관인 경우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서 갱신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계약방식)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시스템>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위탁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기관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서명하면 계약체결 성립

☞ <서식 1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관리대장, <서식 16>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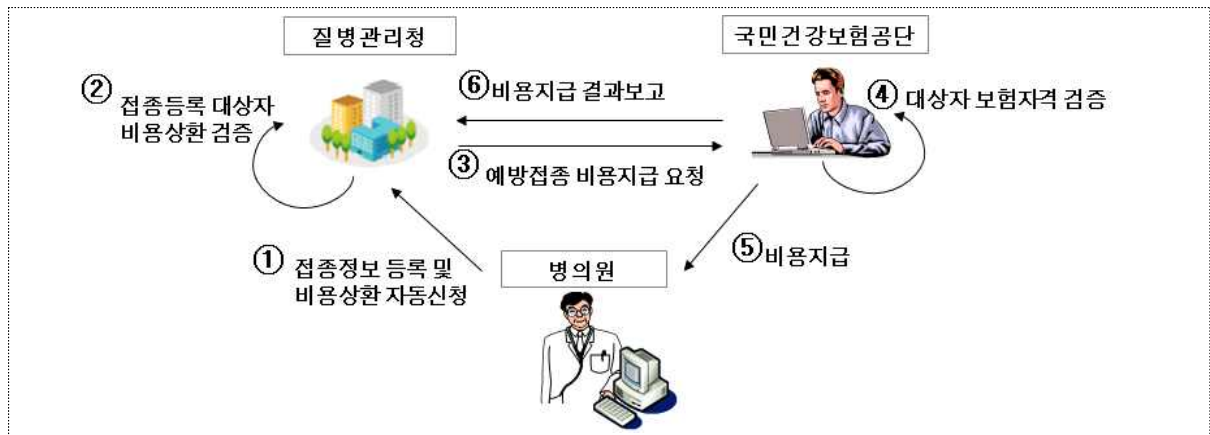
마. 비용상환 체계

- (시행비) 1회 접종당 19,220원(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비* 준용)

구 분	1회 접종당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220원	현물공급

*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비용상환 절차)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예방접종기록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시행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비 지급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등록 대상자 비용상환 기준 검증 및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지급



- (주의사항)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시행비 지급, 단,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 불가하며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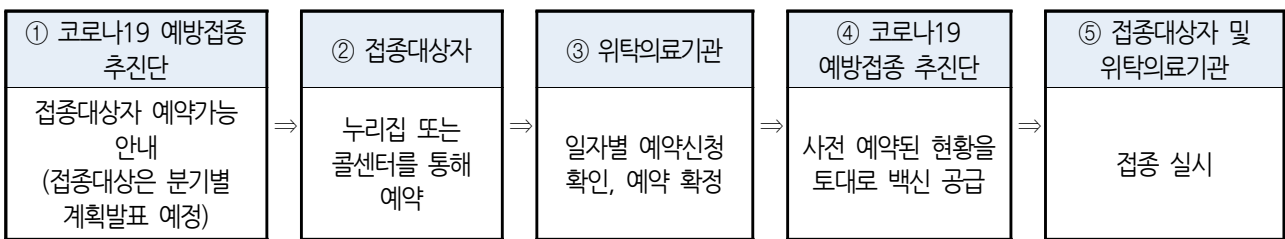
*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에도 시행비 지급 예정



3.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운영

가. 사전예약제 실시

- (운영)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제로만 신청 가능(향후 안내)
 - 백신 접종간격, 백신 공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가능기간 설정 예정
- (방법)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을 통해 접종장소·시간 선택한 후 위탁의료기관 확인, 예약 확정
 - * 사전예약 방법 및 의료기관 관리 방법은 추후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 예약가능시기 동안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접종장소·시간 선택
 - (전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내원할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소 및 접종시간 선택
 - (방문) 위탁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시간 예약
- (운영 절차)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관련 세부사항은 III. 예방접종 실시 등 참조

- (백신) 적정 온도(2℃~8℃)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백신 사용
 - 1바이알은 10회 투여용량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바이알 개봉
 - 개봉한 코로나19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대상으로, 향후 유통업체에서 수거 예정(의료폐기물)
- (기록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필요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 코로나19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접종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청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행비 지급 예정(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기록을 기반으로 지급 예정이며, 세부사항 별도 통지)

VII.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 지침(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용)> 참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업 개요

가. 배경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전 국민의 집단면역 확보와 초저온 냉동고 설치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로나19 mRNA백신(핵산백신)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

나. 추진방향

- 코로나19 mRNA 백신의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
 - * 코로나19 mRNA백신의 취급·보관, 전처리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초저온 냉동고 보관, 희석제 사용 등)
 - 최초 도입되는 화이자 코로나19백신은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 중심으로 추진
 - 중앙*·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확산·운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제2조,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8호)
 - ***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에 관한 법률」 제25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분	중앙	권역			지역
		충부권	호남권	영남권	
수행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시·군·구청장
소재지	서울 중구	충남 천안시	광주 동구	경남 양산시	약 250개소 (구성중)

- 바이러스 벡터 및 합성항원 백신의 접종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

다. 사업내용

1) 중앙·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 코로나19 mRNA 백신의 예방접종시행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최초 물량에 대한 접종* 시행 및 자체 접종기관**에 대한 백신 분배

*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생활치료센터)의 보건의료인 등 종사자

** 일정 규모(120명) 이상의 예방접종 대상기관 중 자체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Ⅲ. (최초물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조

○ 지역 예방접종센터 등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등

○ 중앙·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접종센터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으로 확산

구분	중앙 예방접종센터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별 기능	- 표준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 마련 -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정리 - 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지원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공통 기능	-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할 접종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공 - 예방접종 교육 및 훈련 제공 -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인력(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종사자 대상 자체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자 교육 등 기술 지원	

2)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 250여 개소)

○ 시·군·구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mRNA 백신의 접종 시행

* 필요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최초물량에 대한 접종 시행

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기준

○ 자연환기가 가능한 지상 시설(지하 시설 금지)

○ 교통이 편리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된 장소

* 예방접종기간 동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셔틀버스 운영 등 가능

- 자가발전시설, 전기·조명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구비 장소
 - *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력하여 정전시 대비 방안 마련
- 입·출구가 분리되고(일방통행식 동선), 세부 구역별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장소는 운영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나. 운영개요

- (운영주체)
 - 중앙·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
 - *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따라 지역예방접종센터로도 운영 가능
 -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시·군·구청장*(센터장: 보건소장)이 운영
 - * 시·군·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25조 및 지자체의 자체 규정(조례 등)에 따라 위탁사업계약 체결을 통해 의료기관에 운영 위탁 가능(운영 위탁시 센터장은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
 - 각 운영주체가 국가에서 교부받은 예산(인건비, 운영비 등) 등으로 직접 운영
 - ☞ <부록 5>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집행기준(안) 참조
 - * 별도의 예방접종비용(시행비)은 지급 불가
- (운영기간) 백신 공급 시기 및 물량에 따라 1/4분기부터 중앙·권역 → 지역순으로 순차적 개시
 - (운영시간) 08:00~17:00, (접종시간) 08:30~16:00
 - 단, 예방접종 후 관찰 시간,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시간 등 고려 접종시간 운영
 - * 세부 운영시간 등 향후 별도 통지
- (인력) 전담 인력(의사, 간호사, 지원인력 등) 모집·선발
 - (근로계약) 모집 인력에 대해 근무조건 등 안내, 근로계약서 및 근무상황부 등 작성·관리
 - (수당지급) 인력모집·관리지침에 따라 접종·지원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 ☞ <부록 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관리 지침 참조
- (교육) 코로나19 예방접종 인력(의사, 간호사)은 사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증 보관
 - ☞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참조
- (사전준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별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개소 전 예방접종 준비상황 등 자체 점검 및 모의 훈련 등 실시

☞ <부록 1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체 점검표 참조

* 예방접종센터의 실제 운영 개시 전 관할 시·도에서 점검 예정

☞ <서식 1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점검표 참조

- 예방접종센터 개소시 자체기관내 접종대상자를 우선 접종하여 예방접종 각 단계별 상황을 점검·보완 후 타 의료기관의 접종대상자에게 접종 실시
- 잔여 백신 및 폐기 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염예방)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전 발열, 기침, 콧물 등 의심 증상 확인 및 감염 예방 관련 자체 안전교육 실시

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성 설계

1) 인력

- 접종대상자수 기준으로 투입인력 규모별 구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예진 의사, 접종간호사,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
 - 백신관리담당자 지정, 예진표 작성, 거리두기, 동선 안내, 출입 통제 등을 위한 안내자 배치
- 예진 의사 1인당 1일 150명 기준으로 표준안 운영 시 1일 약 600명 접종 예상

< 예방접종센터 설치 모델안 > (단위: 명 내외)

구 분	1일 접종대상자수	규모별 팀 및 인력수			비고
		의사	간호사	지원인력	
1개팀	600	4	8	10	표준안
2개팀	1,200	8	16	20	
3개팀	1,800	12	24	30	
4개팀	2,400	16	32	40	

* 예진 의사 1인당 150명/일 접종, 근무시간 8시간/일 기준, 이상반응 모니터링 15~30분 소요

2) 공간 구성

☞ 예방접종센터별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가능

- 대기구역, 준비구역, 예방접종구역, 예방접종 후 구역 등으로 구분
- 예방접종대상자가 이용하는 (입구)-대기구역-예방접종구역-예방접종 후 구역-(출구)의 동선은 일방 통행식(일방향) 동선으로 구성(일방통행식 동선)
- ① (대기구역)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및 대기 등을 위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구성

② (준비구역) 코로나19 백신의 보관, 해동 및 주사 준비 등

- (백신보관) 초저온 냉동고 등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백신 보관 관리에 적합한 채광·조명·환기 등 구비
- (접종준비) 예방접종 대상자가 이용하는 구역과 구분하여 별도의 청결 구역으로 운영, 전용 준비대(테이블, 의자 등), 백신전용냉장고 등을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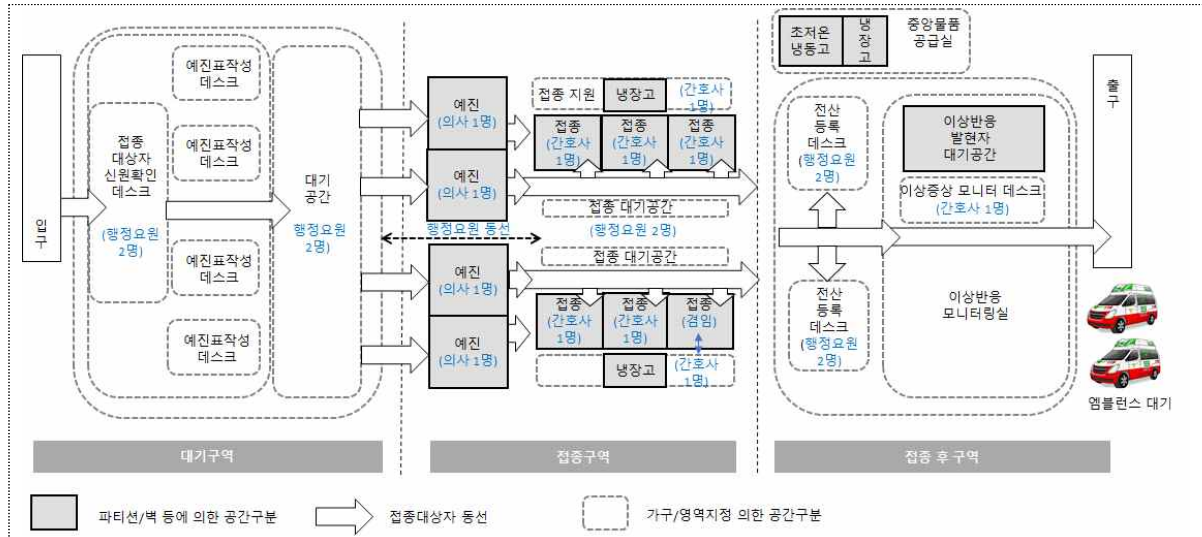
③ (예방접종구역)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 및 예방접종 시행 등

- 예진실, 접종 전 대기, 접종실로 파티션·벽 등으로 독립적인 공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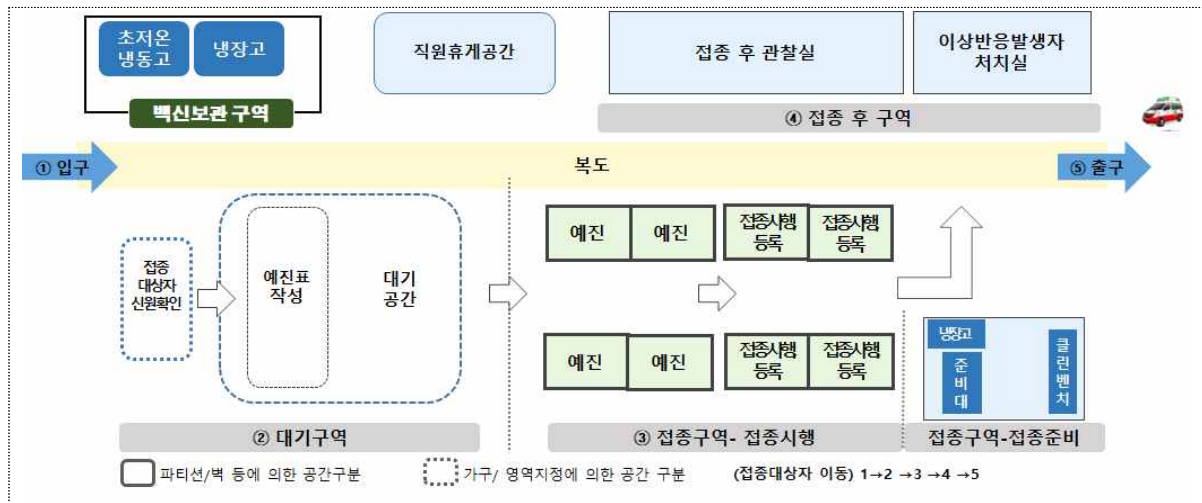
④ (예방접종 후 구역) 예방접종구역과 구분하여 접종 후 관찰실, 이상반응 발생자 처치실 등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기관 이동을 위한 동선 수립
-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발견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동선 구성(일반 예방접종대상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이동 후 선별진료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권고)
 - * 예방접종센터가 코로나19 감염의심자와 연락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 변경
- 예방접종 대상자 사용구역과 구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종사자를 위한 별도 휴게 공간 마련
- 지원 물품(백신, 희석용 및 접종용 주사기)과 폐기물의 반출입 동선을 별도로 구성, 별도의 출입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출구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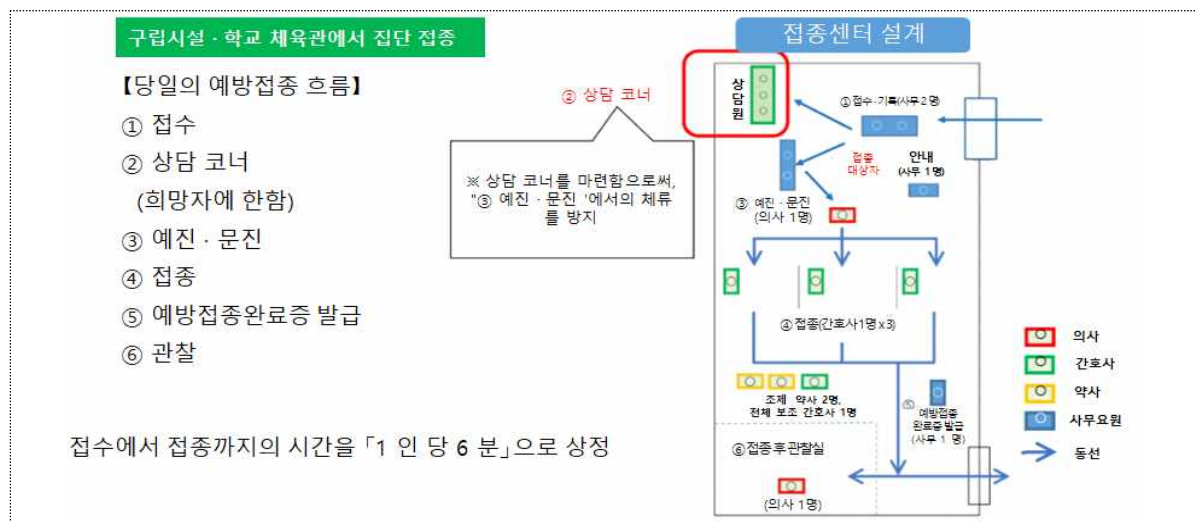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델 1]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델 2 -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델 3 - 일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참고]



라. 장비 및 물품 등 준비사항

1) 기본 장비 및 물품

① 접종 준비 구역

- (백신 보관) 초저온 냉동고(-90℃~ -60℃ 가능) 등



〈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초저온 냉동고(예)〉

- 백신 전용 냉장고(내부 온도 확인 및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 포함된 장치 부착)
 - * 초저온 냉동고와 인접한 위치에 냉난방 기구 등 발열이 많이 되는 장비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정전시 대비 장치
- 백신보관상자(vial tray) 등을 다루기 위한 준비대
- 백신 이동을 위한 백신전용이송가방 또는 아이스박스(보관상자), 백신 이동을 위한 카트
- 필요시 초저온냉동고가 있는 장소의 시건장치

- (예방접종 준비) 해동한 백신 전용 냉장고 등

- 백신 회식추출을 위한 준비대, 가능한 경우 클린벤치 등 무균작업대, 의자, 주사트레이 등
- 백신, 주사기 등 예방접종물품 이동을 위한 카트

② 예방접종 시행 구역

- (입구) 안내 표지판, 손소독제, 체온계 등

- (대기구역)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예진표 작성용 책상·의자, 필기구, 접종 대기 자용 의자, 체온계, 손소독제 등

* 접수 구역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등

- (접종 구역) 예진구역에는 예진용 책상·의자, 체온계, 청진기, 접종대상자용 의자 등,

접종실시 구역에는 접종자용 책상(알코올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의자, 접종대상자용 의자 등

- (접종 후 구역) 관찰실 및 응급처치실 물품으로 가급적 등반이가 있는 의자(접종완료자 관찰실),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펜 등 응급처치 물품 및 장소, 구급차 배치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접속, 예방접종내역 등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등
- (출구) 예방접종 확인증 발급 등으로 인터넷, 프린터, 스캐너가 연결된 컴퓨터

2) 기본 소모품

- 희석용 및 접종용 주사기, 주사바늘(필요 수량 이외 약 5%의 여유분 자체 구비)
 - 희석용 주사기: 3mL 21G 일반 멸균 주사기, 1인치 내외 길이의 주사바늘
 - 접종용 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 syringe, LDS) 1mL 주사기 23G, 1인치 내외 길이의 주사바늘(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우선 사용) 또는 1mL 주사기 23G, 1인치 내외 길이의 주사바늘(일반 멸균 주사기)
 - 유통(제조)업체가 예방접종센터로 직접 또는 택배 배송
 - * 주사기 보관 및 취급 주의(파손된 경우 예방접종센터 자체적으로 총당)
- 0.9%생리식염주사액(희석액, 화이자 코로나19 백신만 사용)
 -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수령 또는 비용지원*
 - * 지자체에 따라 운영이 상이할 수 있음
 - 희석액 용량과 상관없이 하나의 포장단위는 1회만 사용*하며 남은 희석액은 폐기
 - * 포장단위가 20mL인 희석액을 사용하는 경우 1회 필요량인 1.8ml만 사용하고 나머지 전량 폐기
- ☞ <부록 12> 예방접종물품 정보 안내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안내문
 - 예방접종센터 자체적으로 인쇄 또는 출력하여 사용
 -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의료인력 및 종사인력, 접종대상자를 위한 알코올 함량 최소 60% 이상의 손소독제
- 알코올 솜(바이알소독, 접종대상자 소독 등)
-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방수·절연 장갑 등
- 백신 바이알의 이동 및 보관을 위한 바이알 보관상자(바이알 랙) 등
- 유성펜 등 필기구, 라벨링 테이프 등

-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등 충분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사용 백신바이알 및 폐기 대상 백신바이알 보관을 위한 전용용기

구분	용기사진	해당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 용기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일체형 주사기 등) 등
봉투형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 용기	 	그 밖의 의료폐기물(혈액이 묻은 탈지면 및 거즈, 일회용 주사기, 폐백신 바이알 등) * 유출된 백신을 닦은 거즈·천 등 포함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환경부, 2018.7월

3) 안내표지판 부착

- 예방접종센터 안내표지, 대기실, 예방접종구역, 관찰 구역 등 구역안내 표지판 설치
- 이동 동선 안내 표지(바닥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포스터 부착 등

마. 구역별 주요 업무 및 점검사항

☞ <부록 1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준비 자체 점검표 참고

1) 접종준비 구역

(1) 백신 입고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수송용기(thermal shipper)에 대한 입고 및 검수*
 -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방수·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검수
 - * 수송용기 1 상자는 백신보관상자(vial trays) 1-5개로 구성되며, 각 백신보관상자는 195개의 바이알로 구성(6회/바이알)
 - 예방접종센터로 입고된 백신수량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자동 입고 처리 예정
- ☞ <서식 27 생물학적 제제 등 출하증명서, <서식 29-1~3>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참조

(2) 백신 보관

-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구역에 초저온 냉동고 등 백신 보관 장비 위치, 백신 보관 장비 전기코드는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벽에 있는 전기코드 사용
 - 초저온 냉동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軍수송지원본부에서 인력 등을

파견하여 백신 보관 관리 구역 내 초저온 냉동고 및 입·출입자 관리 등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 관리 담당자는 코로나19 백신 입·출고, 온도관리 등 서식*에 따라 전반적인 백신관리 등

☞ <서식 28>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서식 29-1~3>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서식 30-1~3>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

(3) 예방접종 준비

- 출입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청결구역, 준비대(처리대) 등 준비
- 해동한 백신과 희석한 백신 등은 백신 전용 냉장고에 구분하여 보관
- 백신 유효기간 관리 철저
 - 해동한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시간부터 냉장보관(2~8℃)하여 120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해동백신을 보관하는 **바이알 보관상자 또는 바이알 자체에 유효기간 명시**
 - 희석한 백신은 희석한 백신 바이알에 반드시 **유효기간(24시간법 이용)**을 기재하고 **6시간 이내 사용**하며 희석한 백신이 남았더라도 6시간 후에는 폐기
- 코로나19 예방접종구역까지 백신 및 접종소모품 등 이동 시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은 별도의 보관상자(아이스박스 등)에 옮겨 카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2) 예방접종 시행구역

(1) 입구

- 예약 여부 질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접종대상자 줄 세우기(2m 간격), 마스크 착용 확인, 체온확인,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손 위생 안내 등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 필요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귀가조치, 예방접종 일정 재예약(당일 또는 익일 접종대상자와 연락하여 상황에 따라 예약 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공간(길안내 바닥 표시, 대기선 등) 확보, 손소독제 등 준비

(2) 대기구역

- 예방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방문자)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대기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예약 여부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배부, 코로나19 예진표 작성 및 질문 응대 등

(3) 접종구역

- 예진실, 접종실 출입 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예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여부 결정,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 및 2차 예방접종일 안내 등
 - 예진 결과 당일 접종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예약 변경
- (접종) 예방접종 시행 전 백신 종류, 유효기간, 접종용량, 주사기의 백신액 이상 여부 등 재확인 후 접종 시행

(4) 접종 후 구역

- (관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15-30분간 충분히 관찰 후 귀가조치
 -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관찰실 입장시간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입장 시간이 적은 메모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후 귀가 조치
 -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시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 그 외 이상 반응 등은 조치사항 및 의료기관 진료 안내
- ☞ V.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참고
- (접종력 등록) 예방접종 내역 등록,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2차 예방접종일 안내 등
 - 예방접종 예진표를 스캔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진표는 보관(5년)

바. 감염관리

- 근무 중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또는 수술용 마스크 상시 착용
- 예방접종 참여 인력 등은 예방접종 전·후 매번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소독제*로 손 위생 시행
 -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대상자별 장갑 교체 및 손 위생 실시
 - * 개인보호구 착용 수준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유행양상에 따른 권고 수준 적용
-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준비대 등 소독 관리 철저
 - * 예방접종 대상자와 분리된 구역에 접종약품 준비를 위한 별도의 준비대 비치
- 종사자, 접종대상자 등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제를 적신 천이나 헝겊 등으로 표면소독하고 가급적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참조

○ 의료폐기물 관리

- 개봉한 바이알(잔여량 포함) 및 폐기대상 바이알은 유통업체에서 수거 예정(일반의료 폐기물)으로 별도 보관

☞ 「Ⅵ.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3. 코로나19 백신의 잔여·폐기백신 관리」 참조

☞ <서식 31> 코로나19 백신 회수량 인수인계서 양식

- LDS 주사기 및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폐기

*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환경부, 2018.7월)에 따라 조치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안]

[접종준비]

구역	구분	인력(안)	업무 역할
백신 보관 구역	초저온 냉동고	· 백신관리담당자	· 백신 입 · 출고관리
		· 군 인력	· 관련자 입 · 출입관리
접종 준비 구역	해동	의료인력	· 냉동백신 해동(2°C~8°C에서 최대 3시간 소요) · 해동 백신의 유효기간 관리
	↓		
	희석	의료인력	· 해동한 백신의 희석 · 희석한 백신의 유효기간 관리
	↓		
	주사준비	의료인력	주사기에 권장용량 재기 등

* 센터별 여건에 따라 접종인력 또는 별도의 의료인력이 담당

[접종시행]

구역	구분	인력(안)	업무 역할
대기구역	출입	행정요원	접종대상자 맞이하기, 줄 세우기, 체온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예약여부 질문 등
	↓		
	대상자 확인	행정요원	예방접종관리시스템상 예약 여부 확인
	↓		
	예진표 작성	행정요원	예진표 작성, 예방접종안내문배부, 질문응대 등 지원
	↓		
접종구역	예진	예진 의사	접종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접종여부 결정 등
	↓		
	접종	접종인력	예방접종시행
	↓		
접종 후 구역	전산등록	행정인력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2차 예방접종일 안내 등
	↓		
	관찰구역 (15분-30분)	의료/구급인력	접종완료자 대상 이상반응 관찰, 질문응대 등
	↓		
	귀가	행정인력	귀가 안내 등

* 예방접종센터별 인력 수급현황 및 업무 배치에 따라 변경 가능

VIII.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원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 간호사)은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에 접종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예방접종 필요성,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사항 유의 및 충분한 사전 예진으로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유선,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 ☞ VIII.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참조
- 접종 오류*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비고란에 세부사항을 기입하고 보건소로 유선 보고
 -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시, 나. 8) 예방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참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가.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국내 도입 및 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제조사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명	코미나티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mRNA-1273
허가사항	16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구성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 (1바이알=6회*)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 (1바이알=10회)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 (1바이알=10회)
접종 횟수(간격)	2회, 21일	2회, 8~12주	2회, 28일
접종량 및 방법	희석된 백신 0.3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 모더나社 백신의 경우 아직 국내 허가승인 전으로 국외허가사항 기준으로 작성됨

- **(이른 접종)**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 **(접종 지연)**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인지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접종 완료

나.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1,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
- 의도치 않게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다. 추가접종

- 현재까지 추가접종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은 권고되지 않음

라.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은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으로 유지하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또는 우발적으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마.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 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바.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특례수입 승인되었으나 접종 우선순위는 아니므로 추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종여부 확정

사.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아. 백신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접종받은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

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용량 접종) 권장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투여 한 경우(예 : 투여 중 일부 백신이 누출되는 경우) 등 오류가 발견된 후 최대한 빨리 권장 용량으로 재접종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 **백신 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필요**

- (보고기관)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또는 적은 용량으로 접종되거나 많이 희석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받은 자에게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시 (접종량) 접종량 오류 선택 → (메모) 접종량 오류 사유 작성
- (보건소) 유선 보고된 접종 실수·사고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7일 후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및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안내
 - * 이상반응 발생 확인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에 따라 발생 신고

자.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는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 필요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개인보호구 착용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수술용 마스크 착용
 - 매번 백신 접종 전·후로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소독제로 손 위생
 - 단, 손에 상처 등으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접종 대상자별 장갑 교체 및 손 위생 실시
- * 지역사회 유행 양상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권고수준 변동 가능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을 기반으로 예진을 실시하고 예진표 하단의 '의사예진 결과'란에 서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상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는지 확인
 - *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예진표 작성
-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특성, 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대해 설명
- 접종 대상자가 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 * 기관내 다른 가능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재예약 (세부 사항 별도 통지)
- 형식적 예진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및 제외 대상자 등 **예방접종 대상자 실시기준**을 확인하여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

다. 백신 취급시 주의사항

- ☞ 세부내용은 <X.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부록 9-1, 9-2> 백신 정보 및 접종 개요 참조
-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 특성,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접종시행
- 백신의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접종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계획 접종
- 백신 투여 전에 육안으로 검사하여 용액이 변색되었거나 입자가 관찰되면 그 바이알은 폐기
- 각 1회 당 권장 용량이 접종 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1회 당 권장 용량보다 적게 취해진 경우 폐기
 - * (1회 당 권장 용량)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0.5mL,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0.3mL

○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분을 모아서 사용하면 안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 무색 내지 옅은 갈색의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인지 확인 • 얼리지 말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제공된 보관함 안에 넣어 냉장보관 • 바이알을 흔들지 말 것 • 바이알 개봉(첫 번째 접종량 추출) 후 실온(30℃ 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 • 잔여 백신은 당일 폐기	• 백신 수송용기 수령 시 - 수송용기 수령 즉시, 수송용기 안의 온도기록장치를 끄고 트레이를 꺼낸 즉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75℃±15℃ 유지) - 수송용기는 적절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개봉(고글, 방수 절연장갑, 마스크 착용) • 백신 희석 시 주의사항 - 백신은 희색에서 회백색으로, 불투명한 입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용액 변색 확인 시 폐기 - 바이알을 냉장고에서 해동(최대 3시간 소요)하거나 실온에서(최대 30℃)에서 30분 동안 해동 - 해동한 바이알 2시간 이내 희석 - 희석 전 백신 바이알을 10회 부드럽게 뒤집음(바이알을 흔든 경우 폐기)* - 백신과 희석제가 혼합된 바이알을 10회 부드럽게 뒤집음(바이알을 흔든 경우 폐기)* *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음 - 희석된 백신은 6시간 이내 투여

라. 코로나 19 예방접종기록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내역은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내용) 접종일시, 접종부위, 백신 제조번호, 접종자명 등

-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후 1시간 이내 접종확인 문자 발송

* 예방접종 기록이 오후 6시 이후에 등록된 경우 일일 9시에 문자 발송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1차 접종기록 등록 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내용) 1차 접종일, 접종받은 백신 제조사명, 2차 접종 가능일

- 확인서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 불가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접종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발급
- (접종대상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www.nip.kdca.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는 기관 내 5년 자체 보관
 -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 효율적인 예진표 보관·관리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작성된 예진표 내용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 가능(예방접종센터는 반드시 스캔으로 업로드)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 반드시 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 모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하며, 다른 원인으로 심각한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
- 이상반응 관찰 시 주의사항
 - 접종받은자의 불안감과 과호흡(hyperventilation)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하여 조치해야 함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으로 인하여 다른 접종받은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이후 접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함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을 아나필락시스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
 - ☞ <부록 7>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아나필락시스와 급성스트레스반응(기절)의 감별>

구분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	아나필락시스
발병	예방접종 전, 중 또는 몇 분 이내	일반적으로 15분 이내 발생 (이후에 발생 가능)
양상	일반적으로 창백하며 차고 축축함	피부 가려움, 눈과 얼굴 부기, 전신 발진
	정상 호흡	거친 호흡, 쌉쌉거림, 천명음, 지속적인 기침
	서맥, 저혈압은 일시적이며 누운 자세에서 회복	빈맥, 저혈압
	일시적인 의식상실, 어지러움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좋아짐)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의식상실, 죽을 것 같은 느낌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워도 좋아지지 않음)

* 자료원: RCUK. Anaphylaxis guideline, 2021

IX.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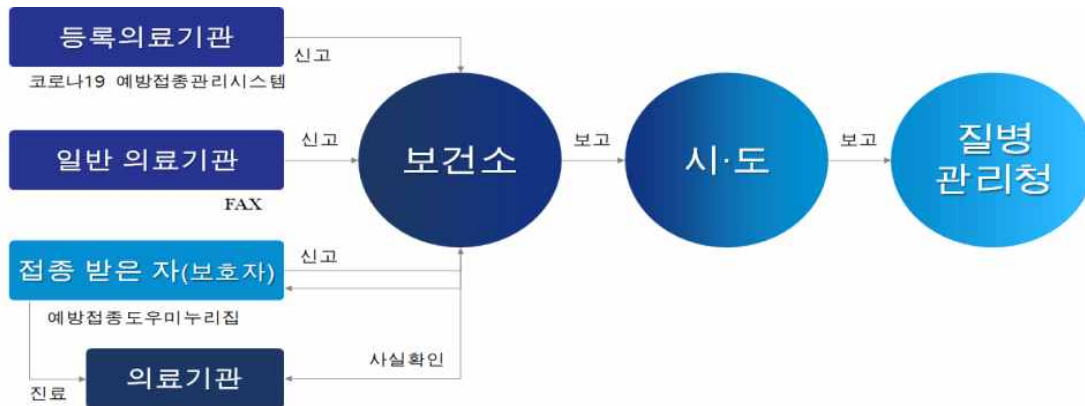
- (WHO)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증상을 말하며, 반드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요구하지 않음¹⁾
- (감염병예방법)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²⁾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
 - (전신반응)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
 - (중증)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 * 미국 내 모더나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100만 건 당 2.5건 발생, 화이자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100만 건 당 4.7건 발생³⁾

1) WHO(2015). Guidelines for immunization program managers on surveillance of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3rd edition.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3) Reports of Anaphylaxis After Receipt of mRNA COVID-19 Vaccines in the US-December 14, 2020-January 18, 2021. JAMA. Published online February 12, 2021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체계>

- * 관련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 * 등록의료기관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한 이상반응 발생 신고

☞ <서식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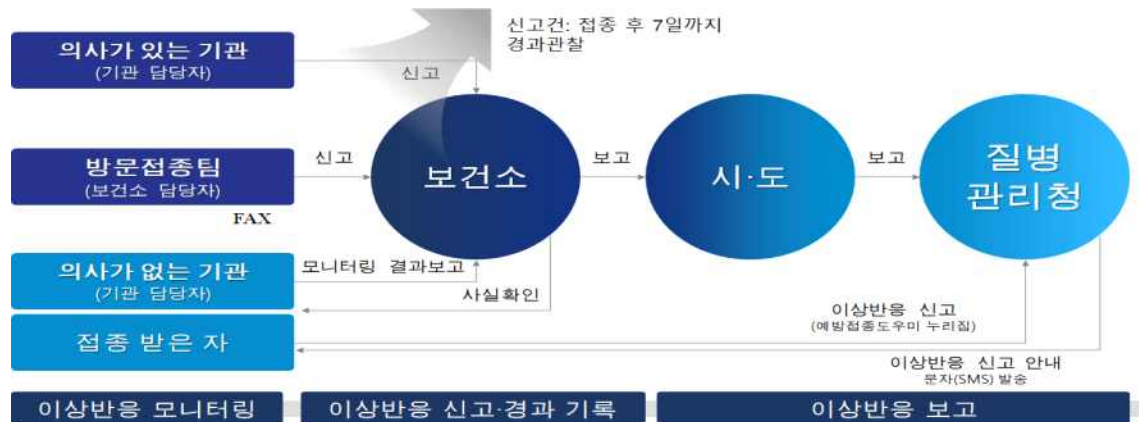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접종 받은 자 및 보호자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코로나19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신고를 받은 보건소에서는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보고

○ (이상반응 모니터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주일 이내 발생 가능한 국소반응과 전신반응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고 빠른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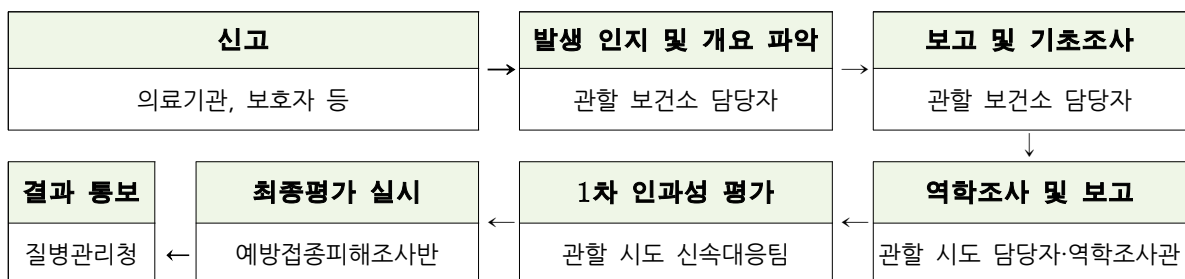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절차 >

- (기관 대상 이상반응 모니터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이상반응 발생시 의사 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이상반응 발생 신고, 신고 건에 한해 기관 담당자는 접종 7일 후 경과관찰 내역을 입력
 - *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 (경과관찰 입력)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이상반응 모니터링(조회)
 -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는 매일 이상반응 발생여부 체크리스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 (기관 입력) 요양시설 등 경과관찰 보고관리(<https://nip.kdca.go.kr/irgd/tcf.do>)
 - * (보건소 조회)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요양시설경과관찰(조회)
- (개별 사례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및 접종센터에서 접종받은 자 대상 문자 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진료건에 한해 보건소에서 신고·관리
- 보건소에서는 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을 확인하고 기관에 관리 독려
 - * (보건소 조회)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접종받은자/보호자신고관리(조회) > 접종받은자 모니터링관리(조회)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가. 신속대응

- 대상: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등 발생 및 시·공간적으로 집단 이상반응 발생 시
 - * 예방접종 후 사망, 과민성쇼크 또는 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
- 절차: 시·도 및 시·군·구는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의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를 운영하고, 24시간 보고 체계 유지
 - * 시·도는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구성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절차>

나. 기관별 역할

1)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인지 및 기초조사

- 육하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조사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접종을 하였는지 확인
 - 이상반응은 언제, 어떻게 나타났으며,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확인
 - * 접종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을 원칙으로 함
-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즉시 보고
 - 유선보고 이후 시스템 이상반응신고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 기초조사 실시 및 중증이상반응신고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제출
 - ☞ <서식 19>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개발예정)

2) 시·도(역학조사관): 역학조사

- 해당 사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간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 실시
 - 발생경위 추가파악 및 현재 상태 확인
 -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확실성 및 시간적 근접성 확인
 - 진단의 정확성 확인
 - 알려진 이상반응인지 확인
 -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질환인지 확인
- 역학조사 결과를 시스템으로 보고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3) 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 (역할) 관할 시도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 평가
 -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 실시
 -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구성)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 의사(신경과, 감염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및 법의학 전문가, 시도 역학조사관 및 업무 담당자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근거법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기관·단체)
3. 의료법 :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인과성 1차 평가 절차에 따라 신속히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스템으로 보고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4)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 해당 백신에 대한 봉합·봉인 및 재검정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해당 백신에 대한 잠정 사용중단 여부, 알람발령 여부 등 결정
- 백신 이상이 의심될 경우, 백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정 의뢰
- 중증이상반응 및 집단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최종판단
 -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최종판단
- 해당 백신의 예방접종사업 지속여부 결정

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가. 목적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을 통해 이상반응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음
-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받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 필요

나. 국가보상제도

-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1) 보상 종류

구분	보상 내용			
진료비 및 간병비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정액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중증은 100분의100 지급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10 지급 ※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사망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30만원 < 연도별 사망 일시보상금 >			
	적 용 기 간	사망일시보상금(원)	월최저임금액(원)	시간급 최저임금(원)
	2021.1.1~2021.12.31	437,395,200	1,822,480	8,720
※ 월최저임금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자료: 최저임금법령상의 월최저임금액(고용 노동부 고시)				

2) 보상신청 기준

- 보상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자
 -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4)
- 보상대상자 순위(「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0조)
 -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 중에 최우선순위자가 됨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 3순위: 부모, 4순위: 손,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 후순위이더라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우선순위 부여,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보상신청 유효기간(「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 2021년도 내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금 제한 없이 신청가능

3) 보상신청 절차(「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 <서식 20> 시·도 피해조사보고서 등 제출(피해조사보고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를 참조하여 작성)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감염병예방법」 제71조제3항)

4) 신청서류 제출 시,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 24>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서식 26>의 신속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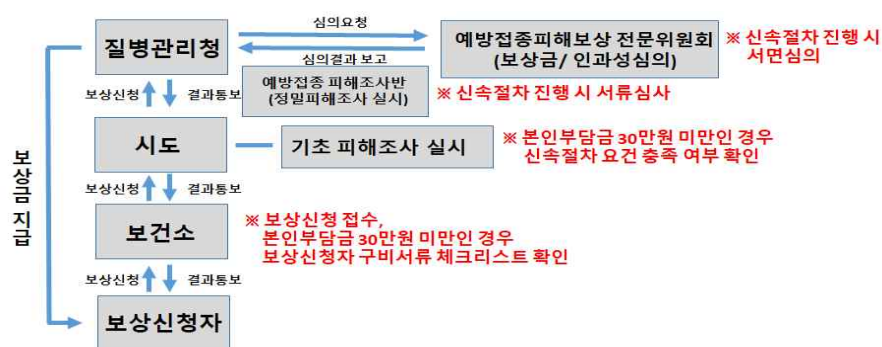
-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 등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신속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서식 25>”에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매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제출

* <서식 25>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국가보상을 위한 신속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감염병예방법」 제71조제3항)

- 신속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서면 심의진행하고,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기존 절차대로 진행

○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서식 23> 이의신청서

○ 보상신청 구비서류(「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

- 보상신청권자는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21]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무기록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1부 -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22]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22]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피해보상 서류 양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판」 참조

4) 피해조사

○ 용어정의

- ‘보상 신청된 피해’와 ‘알려진 해당 백신의 부작용’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조사

○ 조사목적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

○ 조사내용

- 문제가 되는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 출생상황, 질병 과거력, 과거 접종력, 가족력 등

- 백신의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조사
- 동일 제조번호(Lot number)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조사
- 이상반응 발생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의무 기록
- 주치의와 관련자 면담
- 사망 사례의 경우는 부검 결과
- 관련 문헌 검토

○ 조사절차

- 기초피해조사 : 시·도지사는 보상신청권자가 제출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결과 및 검토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출
- 정밀피해조사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근거법령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기관·단체)
3.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절차)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8.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규정
 - 질병관리청 예규 제12호(2020.9.14. 제정)

5) 보상심의

- 심의주체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심의기준

1)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4)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 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5)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6) 보상금 지급 관리

- 보상금 지급(「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
 -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결정
 - 질병관리청장은 교부가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 보상금 내용 및 산정 기준(「감염병예방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진료비
 -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환자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는 과다한 검사비 및 치료비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지급한 후의 진료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정액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일일당 50,000원
- 보상금 사후관리(「감염병예방법」 제72조)
 - 보상금에는 조세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을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X.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1.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공급

가. 코로나19 백신 개요

-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공급 예정, 조기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중
- 공급 가능 물량 및 접종시기 등 도입 상황에 맞게 유통업체가 접종기관으로 백신 공급
 - 백신 플랫폼별로 적정한 보관·유통 방법에 따라 공급

백신종류	전달체 백신(바이러스벡터)		핵산백신(mRNA)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물량	2,000만 회분	600만 회분	4,000만 회분	2,000만 회분
횟수/간격	2회/8~12주	1회	2회/28일	2회/21일
보관온도 (유효기간)	2~8℃ (6개월)	-20℃±5℃(24개월) 2~8℃(3개월)	-20℃(6개월) 또는 2~8℃(1개월)	-75℃±15℃ (6개월)
유통온도	2~8℃	2~8℃	2~8℃	-75℃±15℃
단위	10회/바이알	5회/바이알	10회/바이알	6회/바이알
유통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접종장소까지 배송			한국화이자가 접종 장소 또는 통합물류센터까지 배송

* 백신 공급 물량 및 시기, 유효기간 등 백신 정보는 품목허가 사항 등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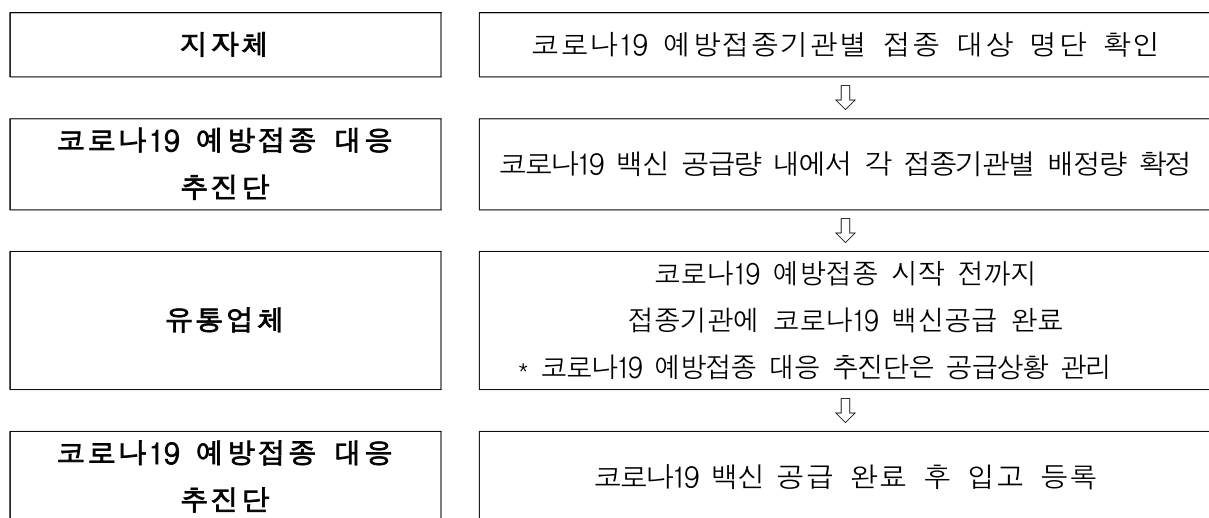
* COVAX Facility에서 공급하는 백신은 Gavi 결정에 의해 공급되며, 개별 제조사에서 구입한 백신과 제품형태 동일

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 (지자체) 접종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등록 하면 지자체에서 접종기관별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관별 백신 배정량 확정

- (유통업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승인한 백신 배정량에 따라 접종기관에 배송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월-3월초 요양병원등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2회 접종량을 고려하여, 아스트라제네카 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병원으로 공급하고, 2차 접종물량 공급시 조정, 이후 접종물량은 개별 바이알 단위로 접종기관으로 공급 예정
 - (화이자 코로나19백신) 최초 접종물량의 경우,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는 냉동상태의 백신이 공급되며, 그 외 일부 자체 접종의료기관은 해동상태의 백신 공급 예정

[코로나19 백신 배분절차]



*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2. 코로나19 백신 유통·공급 관리

가. 코로나19 백신 유통 개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 백신별 품질 유지 및 효율적 배송 등을 위해 보관 창고 및 유통을 통합하는 통합물류센터 운영
- 백신별 창고, 유통, 접종기관 각 단계마다 적정 보관온도(-75℃, -20℃, 2~8℃) 유지하며 접종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 유통, 공급 실시
- 백신별 유통 체계
 - 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국내 제조사 생산 → 국가출하승인 → 제조사의 국내공급일정 확정 후 통합물류센터로 이동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및 유통업체는 배송계획에 따라 접종기관에 배송

② 화이자 백신

- 해외 제조사에서 수입 → 국내 수입자가 통관·국가출하승인 후 공급량의 80%는 화이자 (한국화이자)가 접종기관으로 직접 운송
- 수입물량의 20%: 통합물류센터로 운송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및 유통 업체는 배송계획에 따라 접종기관에 배송
- * 국가출하승인 시기 및 절차가 검토 중으로 최종 결정에 따라 배송방법은 변동 가능

③ 얀센 백신:

- 해외 제조사에서 수입 → 통합물류센터로 이동 → 국내 수입자가 통관·국가출하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및 유통업체는 배송계획에 따라 접종기관에 배송

③ 모더나 백신:

- 해외 제조사에서 수입 → 국내 수입사 물류창고로 이동 → 국내 대행사가 통관·국가출하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및 유통업체는 배송계획에 따라 접종기관에 배송
- 코로나19 백신 유통 소단계 상황관계 및 대응을 위해 국방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수송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하며 수송지원계획 수립 예정

나. 수입·제조·유통업체 관리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8. 배포)에 따라 실시
- 코로나19 백신 수송, 보관 및 관리 원칙 준수
- (국내수입자) 해외 제조소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백신을 보관소로 수송하고, 통관 및 국가출하승인 완료시까지 보관 후 유통업체로 인계
- (수입·제조·유통업체) 백신 콜드체인 준수를 위한 사전 구비사항, 콜드체인 준수, 코 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요구자료 등 제출

다.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관리사항

- ☞ <부록 10>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 ④ 접종기관(의료기관) 관리사항 확인

1) 코로나19 백신 인수 시

※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시작 전 백신 관리 담당자 1인 이상 지정

○ 백신 인수 시 확인할 사항

- (배송 담당자와 의료기관 백신 관리 담당자) 백신의 보관상태·수량, 온도기록, 인계 일시 등 기록 수령 및 일치여부 확인
- 백신 상표 훼손, 바이알 균열 등 물리적 손상 여부
- 백신 수송용기에 들어있는 온도기록계의 온도 확인

* 백신 인수인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점검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백신 관리 담당자) 백신을 인수받은 즉시 신속하게 백신 보관 온도별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백신의 입고일자, 수량 등을 입고기록지에 작성하고, 유통업체한테 받은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와 함께 2년간 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사본을 3일 이내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팩스·스캔 파일 등으로 제출

☞ <서식 27>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서식 29-1~3>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 단,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냉장상태로 운송받은 의료기관은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입고서식(서식 29-3)을 2년간 보관하고, 사본은 3일 이내 지자체 담당자에게 팩스·스캔 파일 등으로 제출

☞ <서식 29-2>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양식

- (지자체) 접종기관으로부터 받은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자체접종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식 29-2>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양식(예방접종센터 등)은 지자체에 보관, 추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으로 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유통관리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기관 공급백신 입고 처리

2) 코로나19 백신 보관 방법

- 백신 관리 담당자는 백신 보관장비의 유지관리 기록을 확인하고 백신별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 미흡 등으로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백신 보관장비 내부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구비하여 설치 및 온도 이탈 시 알람기능이 있는 온도 확인 장치를 부착하고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 <서식 28>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부록 13> 예방접종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

장고) 및 온도 유지 관리

- 냉장시설 수리 또는 이동설치 시, 사전 가동하여 백신 보관 장비 온도를 점검한 후 백신 보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에서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 (접종기관)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으로 백신 온도일탈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자체에 유선 보고, <부록 11>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
- (지자체) 접종기관이 보고한 사항을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에 유선 보고
 - 접종기관이 <부록 11>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사항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접종기관과 지자체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에 공문으로 보고
 - 사고 발생 시간, 사고 인지 시간, 사고 시점의 백신 보관장비 온도 등을 측정 후 기록
 - 온도 일탈된 백신과 일탈되지 않은 백신을 분리하여 관리
 - 온도 일탈 백신은 별도 여유 냉장시설이나 냉동고에 있던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이때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 <서식 28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3. 코로나19 백신의 잔여·폐기백신 관리

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 코로나19 백신 공급 이후 예방접종 전까지 백신 보관, 취급 중 콜드체인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코로나19 백신의 바이알 당 1회 접종량을 준수하여 당일 개봉·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계획 준수하여 백신 손실 최소화
 - 백신별 유효기간 관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개봉 백신은 2~8℃ 6개월
 - 화이자 백신: 미개봉 백신은 -75℃ ±15℃ 6개월 또는 2~8℃ 5일
- * 단 백신의 안정성 연구에 기초하여 유효기간 갱신 시 별도 안내 예정

- 개봉한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시간 이내 사용, 당일 폐기
- 배정된 코로나19 백신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사용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개봉 전 남은 백신은 2차 접종시 사용 예정으로 백신 적정온도 보관 철저
 - * 요양병원 등에 배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 2차 접종을 고려하여 배포되었으므로 요양병원 등에서 백신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관리 철저
 -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개봉 전 잔여백신은 추후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접종에 활용 예정이므로 별도 안내 전까지 백신 보관 관리 철저

나. 폐기대상 코로나19 백신 관리

○ 폐기대상 백신 정의

① 파손

② 개봉 후 사용 가능 시간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봉 후(첫번째 접종량 추출 후) 실온(30도 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 사용, 잔여 백신은 당일 폐기
- (화이자 백신) 개봉 후(첫번째 접종량 추출 후) 2~8℃ 6시간 이후 잔여 백신 폐기
 - * 1바이알을 개봉 후 사용 중 접종 가능 분량 이상 남았으나, 개봉 후 사용 가능 시간(6시간)이 경과한 경우

③ 접종 후 미세 잔여량

④ 유효기간 경과

- * 미개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8℃ 6개월, 화이자 백신 -75℃±15℃ 6개월 또는 2~8℃ 5일

⑤ 백신 불량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무색 내지 옅은 갈색의,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임. 용액이 변색되었거나 입자가 육안으로 관찰되면 폐기
- (화이자 백신) 희석 전 해동 백신의 경우 흰색에서 미백색의 현탁액으로 흰색에서 미백색의 불투명한 무정형 입자를 포함 할 수 있으나, 변색 또는 혼탁한 경우는 폐기, 희석한 백신은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으로 변색 또는 미립자가 있는 경우 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 허가완료제품 정보 참조

⑥ 적은 용량으로 추출된 경우는 그 주사액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

- * 정량보다 적게 추출한 경우 그 주사기를 폐기 (손상성의료폐기물통에 폐기)

- 폐기대상 백신(①~⑤)은 바이알은 유통업체에서 모두 회수 예정으로 접종기관에서 자체 폐기 금지, 바이알 상태 그대로 별도의 보관통에 분리하여 유통업체 회수시까지 보관
 - * 유통업체 회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 <서식 31> 코로나19백신 회수량 인수인계서 양식

-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되면 공급된 백신량에서 자동으로 사용 백신량(바이알 단위)이 차감, 백신 파손 또는 불량 등으로 실제 사용량과 보유 백신량이 상이한 경우 등 필요시 폐기 수량 및 사유 등을 당일 24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 보고

* 백신을 도난, 분실한 경우에도 수량 및 사유를 시스템에 보고

- 매일 접종기관 내 현물 잔여백신 수량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상 잔여량 수치를 확인 후 일치시켜야 함

8) 접종기관 일자별 접종현황 및 백신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의 '백신 사용량'과 '실제 백신 사용량'이 틀린 경우 내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백신사용량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일자별 접종현황 팝업이 나타납니다. 실제 백신사용량과 수정사유를 입력하여 백신 사용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종료 후 코로나19 백신 관리

- (접종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량 등록
 - * 반납 일정은 백신 유효기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지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별 반납량 관리
- (유통업체)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내 코로나19 백신을 회수하여 실제 회수량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에 보고하고 코로나19 백신폐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별 코로나19 백신 반납량과 유통업체 실제 코로나19 백신 회수량을 확인

XI. 코로나19 백신 접종물품 공급 및 관리

1.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관리

- 기 교부한 초저온 냉동고 구매 예산(지자체 자본보조, 국비 100%)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할 보건소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
 - * 초저온 냉동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되어 있으며 구매방법 및 기준·규격은 별도 안내 예정
 - ※ 모더나 백신은 2℃~8℃로 유통 및 공급으로 예방접종센터는 냉장고 준비 필요
- 구매 요청 후 15일 이내 배송 납품예정이며 배송 후 초저온 냉동고 설치·작동적격성 검사 완료까지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므로 지자체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매 요청 실시
 - * 초저온냉동고 규격서, 설치·작동적격성 검사 전문인력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저온 냉동고 업체) 지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초저온 냉동고 공급 후 설치·작동적격성 검사 실시
- (지자체) 초저온 냉동고 납품 시 진행한 설치·작동적격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백신 보관 담당자에게 통보
 - 시도는 관내 지역 예방접종센터의 초저온 냉동고 설치·작동적격성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으로 문서로 보고*
 - * 추후 세부 보고방법은 변경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 보관 담당자) 설치 후 코로나19 백신 입고 시까지 초저온 냉동고 지속 가동하며 온도 확인 및 기록 실시
 - 최초 설치 이후 추가 이동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지자체와 상의하며, 초저온 냉동고 업체에 연락하여 이동시키고 설치·작동적격성 확인한 후 코로나19 백신 보관
 - * 이동 설치 및 적격성 확인까지 약 15일 소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문서 확인 후 유통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요청

2. 접종 부대물품 구매 및 관리

가. 주사기

- (유통업체) 순차적으로 지자체로 직접 배송
- (지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별 백신 배정량에 따라 접종기관에 배정
 - * 구체적인 공급 기관 및 수량은 추후 안내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지자체에 방문하여 수령, 주사기 보관, 취급 중 파손,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파손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자체 물량으로 충당 (추가 공급은 실시하지 않음)

나. 희석액(0.9% 생리식염주사액, 화이자 백신만 사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희석액 구매 예산(지자체 경상보조, 국비 100%) 교부
 - 지자체가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현물 배정 또는 예산 지원
 - 화이자 백신 접종시에 0.9%생리식염주사액으로 희석(다른 백신은 희석제 사용하지 않음)
 - 희석액 용량과 상관없이 하나의 포장단위는 1회만 사용*하며 남은 희석액은 폐기
 - * 20ml 희석액을 사용하는 경우 1회 1.8ml만 추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잔량은 폐기, 따라서 가급적 단위 용량이 적은 희석액 구매·사용 권고
- ☞ 추가 접종 물품은 <부록 12> 접종 물품 정보안내 참조

XII.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1. 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 관리, 백신입고 관리 및 이상반응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

2. 시스템 개요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대상자관리, 기관관리, 계약관리, 이상반응관리, 게시판 메뉴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구성 및 주요기능
 - 백신 유통 및 접종 계획에 따라 메뉴 구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한 사용법 안내는 매뉴얼 게시판을 통해 지속 업데이트

시스템 구성	주요 기능
• 대상자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등록 관리
• 기관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정보 관리
• 계약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업무
• 예방접종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기록 등록, 문자메세지 발송
• 이상반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게시판	코로나19 관련 매뉴얼 및 자료실, Q&A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게시판→프로그램/매뉴얼 참조

☞ <부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용) 매뉴얼

☞ <부록 15>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 및 점검관리(보건소용) 매뉴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접종종류 목록 > 예방접종등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Q 검색

대상자 검색결과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응시자	[]	74 - 2*****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대상자 정보

접종대상자 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원민번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74 - [] (연령: 46세 3개월)

우편번호: 04564 서울

상주주소: []

휴대전화번호: 010 - [] - [] 문자로 접종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수신동의: ☐ 다음접종알림 ☐ 이상반응발생관리

질 전화번호: [] - [] - []

예방접종 해전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 ☐ 예방접종 금지

해전 결과 사유: []

접종 대상자 여부:

1차 접종 대상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예방접종등록

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접종 : [] · 주민등록번호 : [] Q 검색

1. 피접종자 검색결과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요양 중인 분	[]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력입니다.

- 피접종자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전라남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말: 46세 5개월)
- 모바일번호: 010-564- []
- 현재주소: []
- 주거형태별번호: 010 - [] - [] ※ 부차로 등록가능함도 가능합니다.
- 문자수신동의: ☐ 다음접종일일 ☐ 이안방출발생관련
☐ 연방번호: [] - []

2. 피접종자 확인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 ☐ 예방접종을 금지

확인 결과 사유: []

3. 접종 대상자 여부

2차 접종 대상자입니다.
2021.03.07(목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4. 예방접종 등록

접종일: 1차

- 접종시간: []시 / []시 ~ []시 (LOT-TEST-1)
- 접종장소: []
- 접종기관: []
- 예약일자 / 접수일자: [] / []
- 접종방법: [] / []

환자 정보

5. 예방접종내역

1차 접종내역: []

2차 접종내역: []

접종내역을 '불식' 시 기록에서 수정가능

6. 접종기록 및 예약 현황 (최근 1주일)

접종일자	예약종류 / 예약의사	접종건수	예약 인원
2021-02-14	예약종류	1	1
2021-02-13	예약종류	0	0
2021-02-12	예약종류	0	0
2021-02-11	예약종류	0	0
2021-02-10	예약종류	0	0
2021-02-09	예약종류	50	5
2021-02-08	예약종류	0	0
2021-02-07	예약종류	0	0

예약종류: []

총 예약접종량: 100 vial 총 예약사람량: 10 vial 현재 총보유량: 90 vial

○ 예방접종 내역서 출력(안) (1차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메뉴 보기

예방접종등록

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피접종자 검색결과

대상자 구분: [] 성별: []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 피접종자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관리번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령: 46세 3개월)

• 국문번호: 04564 [] []

상세주소: []

휴대전화번호: 010 [] [] [] [] 문자로 발송

• 문자수신동의: ☐ 다름접종동의 ☐ 이상반응발생동의

접종회번호: [] [] []

피접종자 재검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 ☐ 미

• 백신 종류: [] 사용

접종 대상자 여부

2차 접종 대상자입니다.
2021.03.07(일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총 백신입고량: 100 vial 총 백신사용량: 10 vial 현재 총보유량: 90 vial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이 확인서는 귀하가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과 다음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접종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내역 관리(코로나19 백신 간 교차접종이 권고되지 않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것으로 '예방접종내역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방접종명령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차수	제조사명	접종일	접종기관명
코로나19 1차	화이자	2021년 2월 14일	국립중앙의료원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일: 2021년 3월 7일

질병관리청

발급 [] 닫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지침

-지자체용[서식]-

■ ■ ■ ■ ■ 순 서 ■ ■ ■ ■ ■

<서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100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101
<서식 3>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102
<서식 4-1> 요양시설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103
<서식 4-2> 요양병원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104
<서식 4-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105
<서식 5-1>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안)	106
<서식 5-2>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병원(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107
<서식 6>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자체 점검표(안)	109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공고문(안)	111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112
<서식 9>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14
<서식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115
<서식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안)	116
<서식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안)	119
<서식 13>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	121

<서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안)	123
<서식 1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대장	124
<서식 16>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125
<서식 1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점검표	126
<서식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서	130
<서식 19>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132
<서식 2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134
<서식 2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37
<서식 22>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138
<서식 23> 이의신청서	139
<서식 24>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140
<서식 2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신속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142
<서식 26>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	143
<서식 27>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144
<서식 28>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예시)	145
<서식 29-1>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146
<서식 29-2>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양식(예방접종센터 등)	147
<서식 29-3>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의료기관 자체접종)	148
<서식 30-1>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보건소)	149
<서식 30-2>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예방접종센터)	150
<서식 30-3>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위탁의료기관)	151
<서식 31> 코로나19 백신 회수량 인수인계 양식(안)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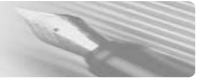
서 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의사의 예진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겠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남 ☐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예 ☐ 아니오
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 최근 14일 이내 백신(코로나 백신 외)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⑥번 문항으로 있다면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⑤-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예 ☐ 아니오
⑥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⑦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의사 예진 결과 (의사 기록란)				확인 ☒
체온 : °C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예진 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사유:)			
	☐ 예방접종 금기(사유:)			
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제조회사		백신 제조 번호		접종부위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접종자 성명: (서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이 확인서는 귀하가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과 다음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접종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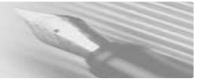
* 예방접종 내역 관리(코로나19 백신 간 교차접종이 권고되지 않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접종명 및 차수	제조사명	접종일	접종기관명
코로나19 1차		년 월 일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일(가능일): 년 월 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No.

호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Year

월
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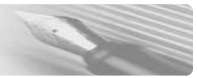
일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Si/Gun/Gu, The head of () medical institution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시설별 접종계획 양식> 보건소에 제출 필요

<시설별 접종계획 양식>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등록·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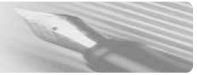
시설명	인원(명)			접종수요 (명)	백신배정량* (vial)	시행방식**	시행 예정일
	소계	입소자	종사자				
00						위탁접종	
00						보건소 방문 문접종팀	

* 백신배정량(vial): 접종수요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백신 배정량 생성

* 시행방식: 위탁접종, 보건소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중 선택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백신의 접종단위로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 ◇ 방문 접종 인력 접종 후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
-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병원별 접종계획 양식> 보건소에 제출 필요

1. 병원정보

병원명	인원(명)			접종수요(명) * 동의구독한 자	백신배정량* (vial)
	소계	입소자	종사자		
00					

2. 접종순서

일자 (백신입고 예정일:)	인원(명)		
	소계	입소자	종사자
1일차(MM/DD)			
2일차(MM/DD)			
3일차(MM/DD)			
.....			
00일차(03/18)			
00일차(03/19)			

3. 이상반응 대응책

- 급성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여부
-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수 및 기관명 기재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방법 기재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백신의 접종단위로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 ◇ 입원환자→ 의료인→ 의료인외 종사자 순으로 접종 권고
-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병원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보건소에 제출 필요

1. 병원정보

병원명	인원(명)		백신배정량* (vial)
	종사자	접종수요(명) * 동의구독한 자	
00			

2. 접종순서

일자 (백신입고 예정일:)	인원(명)
계	
1일차(MM/DD)	
2일차(MM/DD)	
3일차(MM/DD)	
.....	
00일차(03/18)	
00일차(03/19)	

3. 이상반응 대응책

- 급성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여부
-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수 및 기관명 기재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방법 기재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백신의 접종단위로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표

등 록 사 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FAX		
주 소(소재지)				
예방접종담당자 휴대전화		예방접종담당자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 호 조 무 사 : 명 ☐ 간 호 사 : 명 ☐ 전 산 요 원 : 명 ☐ 행 정 요 원 : 명 ☐ 백신관리 전담자 :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협약의료기관, 계약의사 소속의료기관은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다.			총 인원() 중 ()	
응급상황에 대비 에피네프린을 준비하였다.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완료하였다.				
알코올 솜, 여분의 접종용 주사기(1mL, 21G 이상 가는 바늘), 손소독제, 체온계를 충분히 구비하였다.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보유하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및 연락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작성 완료된 예진표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종합 의견	점검결과		내용	
	☐ 전체적으로 양호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및 재점검 필요로 등록한 경우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 또는 향후 재점검 사항에 대해 작성	
	☐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 재점검 필요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양병원(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방 문 점 검 표

등 록 사 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참여일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 소 (소재지)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 호 조 무 사 : 명 ☐ 간 호 사 : 명 ☐ 전 산 요 원 : 명 ☐ 행 정 요 원 : 명 ☐ 백신관리 전담자 :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요양병원 예방접종 계획을 작성하고보건소로 제출하였다.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다.			총 인원() 중 ()명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완료하였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팀을 구성하고,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사전에 보건소에서 수령하고, 접종동의를 구득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종사자와 입원환자 명단을 등록하였다.			
알코올 솜, 여분의 접종용 주사기(1mL, 21G 이상 가는 바늘),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를 충분히 구비하였다.			
이상반응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을 구비하였다.			
백신관리 담당자 및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관할보건소에 통지하였다.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및 연락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예방접종 관련사항			
예진표 작성 공간 및 별도의 대기 공간이 있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보관할 공간을 준비했다.			

별도의 청결 구역에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장소가 있다.			
2-1 별도 접종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접종 대상자들이 겹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동선, 접종 순서 등)이 있다.			
접종장소에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의사의 예진 및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접종을 준비할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물품이 처치공간에 구비되어 있다.			
별도의 이상반응 처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처치를 위한 침대를 마련해 두었다.			
2-2 병동 순환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를 지정하고,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병동별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이 수립되어 있다.			
병동별 접종 대상자 명단과 백신 접종 순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에 다른 약품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다.			
다회용 백신의 취급법 관련 포스터 또는 자료를 접종준비인력이나 백신담당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다.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이나 백신잔량을 별도로 보관할 폐기물 전용용기가 마련되어 있다.			
종합 의견	점검결과	내용	
	☐ 전체적으로 양호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및 재점검 필요로 등록된 경우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 또는 향후 재점검 사항에 대해 작성	
	☐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 재점검 필요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자체 점검표

등 록 사 항						
예방접종팀 팀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예방접종팀 담당인력	총 인원	명	☐ 의 사	명		
			☐ 간 호 사		명	
			☐ 행 정 인 력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보건소는 방문시설의 접종 규모를 고려하여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였다.						
접종인력은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다.				총 인원() 중 ()명		
보건소는 방문시설의 접종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방문 시설의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건소는 방문접종팀은 방문시설과 접종방법, 접종시간, 접종 장소 등 접종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사전에 구급차 배치 또는 시도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 신속출동체계를 구축하였다.						
배치될 구급차에 아나필락시스 발생 대비 에피네프린, 자동제세동기가 포함될 것을 확인하였다.						
시설의 접종규모에 맞는 충분한 접종용주사기(1mL, 21G이상 가는 바늘), 알코올솜, 손소독제, 체온계, 주사기 트레이, 마스크를 준비한다.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준비한다.						
시설에서 지정한 예방접종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						
예진표와 안내서를 사전에 방문 시설로 배포하였다.						
접종대상자의 접종동의 구득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 방문 시 필요한 백신 개수를 파악하고 있다.						
사전에 방문시설의 접종 대기, 접종 구역, 접종 후 구역의 현황과 크기, 배치를 파악하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및 연락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접종 완료 후 보건소로 가져와야 하는 물품 목록(예진표, 잔여백신, 잔여주사기, 손상성폐기물 등)을 작성하였다.						

2. 백신 관련 점검사항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2년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다.			
백신 반출 이후 접종 완료시까지 콜드체인 유지 등 관리 방법을 마련하였다.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이나 백신잔량을 별도로 보관할 폐기물 전용용기를 마련하였다.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공 고(안)

○○ 시·도 ○○ 시·군·구 제 000-0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년 0월 0일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1. 예방접종의 종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방접종 비용 전액 무료

2. 예방접종 받을 자의 범위: 전 국민

- *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종 확대 시행(시기별 접종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3. 접종시작일: 00년 0월 0일

4. 접종장소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 * 일부 접종대상자(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 시행

5. 참고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자발적 동의하에 진행되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사용 효율화를 위해 접종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 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	---

제2조	“수탁기관”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 (소 재 지)			
		전 화	전 자 우 편 주 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 료 정 보 시 스템		[]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5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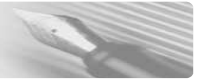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호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코로나19 예방접종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제 호

수료증

소속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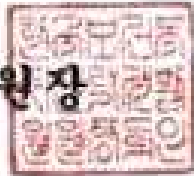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위 사람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02월 0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 율 점 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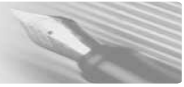
등 록 사 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 소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 호 조 무 사 : 명 ☐ 간 호 사 : 명 ☐ 전 산 요 원 : 명 ☐ 행 정 요 원 : 명 ☐ 백신관리 전담자 :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방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2)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4)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할 공간을 준비했다.			
2)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사전예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을 알고 있다.			
4)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예진 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해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예방접종 실시 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접종받은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8)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접종실시		
1) 접종 전 준비된 백신의 종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3) 다인용 백신의 경우 접종 전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분주해야 함을 알고 있다.		
4) 백신을 접종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손 소독(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 등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 간 눌러줘야 함을 알고 있다.		
4. 접종 후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대응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2)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15~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해야 함을 알고 있다.		
4) 예방 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5)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다..		
6)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7) 필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을 알고 있다. ※ 보관기간:5년		
2) 필요 시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6. 비용상환		
1)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접종받은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2)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 비용상환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2년		
3)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6) 백신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온도는 24시간 모니터링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8)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온도 기록지를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9) 다회용 백신의 경우 보관 가능 유효시간을 알고 있으며, 보관 유효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10) 보관 가능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20 . . .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	성명: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등 록 사 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참여일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 소 (소재지)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 호 조 무 사 : 명 ☐ 간 호 사 : 명 ☐ 전 산 요 원 : 명 ☐ 행 정 요 원 : 명 ☐ 백신관리 전담자 :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매우 잘함	잘함	마비함	매우 미비함	비고
1. 일반사항							
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관련 사업내용 및 예방접종 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2)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충분히 보유할 예정이다.							
4)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관련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할 공간을 준비했다.							
2)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사전예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4) 다인용 백신의 경우 접종 전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분주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백신을 접종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손 소독(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 등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 하여 필요시 접종내역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접종반응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15~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해야 함을 알고 있다.						
8) 예방접종 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9)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다.						
10)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 함	매우 미비함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2년						
3)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6) 백신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온도는 24시간 모니터링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8)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온도 기록지를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9) 다회용 백신의 경우 보관 가능 유효시간을 알고 있으며, 보관 유효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10) 보관 가능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종합 의견	점검결과	내용				
	☐ 전체적으로 양호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및 재점검 필요로 등록한 경우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 또는 향후 재점검 사항에 대해 작성				
	☐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 재점검 필요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

등 록 사 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참여일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 소 (소재지)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 호 조 무 사 : 명 ☐ 간 호 사 : 명 ☐ 전 산 요 원 : 명 ☐ 행 정 요 원 : 명 ☐ 백신관리전담자 : 명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점검결과
1) 보유대수			대
* 위 문항의 보유대수에 따라 아래 항목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2) 구입시기		년 월
	3) 용량		L (리터)
	4)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4-1)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4-2) 상업용 냉장고		
	4-3) 일반 가정용 냉장고		
	4-3-1)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4-3-2)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2	2) 구입시기		년 월
	3) 용량		L (리터)
	4)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4-1)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4-2) 상업용 냉장고			
	4-3) 일반 가정용 냉장고			
	4-3-1)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4-3-2)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3	2) 구입시기	년 월		
	3) 용량	L (리터)		
	4)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4-1)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4-2) 상업용 냉장고			
	4-3) 일반 가정용 냉장고			
	4-3-1)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4-3-2)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시행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백신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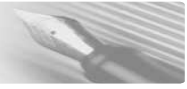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식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관리대장



No	계약일 (갱신일)	요양 기관 번호	의료 기관명	대표자 명	위탁 계약 범위	요양 기관 종별	표시 과목	전화 번호	전자 우편 주소	지정서 번호	계좌정보 (등록일/ 변경일)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등록 /변경일)	참여백신현황	
													코로나 19백신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수 신 : ○ ○ ○ 의료기관장

○ ○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해지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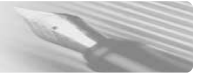
해지 일자 :

※ 계약 해지일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예정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점검표

등 록 사 항						
예방접종센터	시군구명 (공동설치인 경우 모두 기재)		운영개시일			
	주소					
대표자(센터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 의 사 ☐ 간 호 사 ☐ 행 정 인 력	명 명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 예방접종센터는 지상(地上) 실내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 예방접종센터는 접종대상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 예방접종센터 내 각 구역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대기/준비구역, 접종구역, 접종 후 구역						
○ 예방접종센터는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예방접종센터 내 입구와 출구는 분리되어 있다.						
○ 예방접종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 비상발전시설					
	☐ 냉방시설					
	☐ 난방시설					
	☐ 조명시설					
	☐ 전기시설					
	☐ 환기시설					
○ 예방접종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 승강기					
	☐ 경사로					
	☐ 장애인 화장실					
	☐ 도움벨					
	☐ 점자유도블럭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임을 안내하는 표지판(배너 등)을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있다.			
○ 입구에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스캐너를 비치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하고 있다.			
○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			
○ 주사 준비대, 접종실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두고 있다.			
○ 방문객과 접종대상자 중 마스크 미착용 인원을 위한 여분의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다.			
○ 접종대상자간 2m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 각 구역별로 안내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2. 예방접종 관련 점검사항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 입구에서 접종대상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사전예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당일 예약자 명단을 구비하고 있다(시스템상 명단으로도 확인 가능)			
○ 접종대상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공간에 예진표, 필기구를 충분히 비치하고 있다.			
<접종실시>			
○ 주사기 제거 등 주사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 접종 공간(주사실) 내에서 접종대상자의 신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사용한 주사기를 버릴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가 준비되어 있다.			
○ 접종대상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접종 후>			
○ 관찰실에 이상반응 안내에 관한 안내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다.			
○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이상반응을 관찰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관찰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자와 공간을 확보하였다.			
○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 응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 응급처치 공간과 침대가 구비되어 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구비하고 있다.			
<기록보존>			
○ 예방접종 예진표를 스캔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컴퓨터에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다.) ※ 보관기간:5년			
○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접종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3. 백신 관련 점검사항			
○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다. ※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2년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 「백신 전용 초저온냉동고», 「백신 전용 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초저온 냉동고 또는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 백신보관냉장고는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정기적으로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다회용 백신의 경우 개봉일시, 사용만료일시를 백신 바이알에 기입하고 있다.			
4. 백신 해동 및 준비			
○ 백신 수송용기 개봉 후 초저온 냉동고에 넣을 때 사용하는 개인보호구가 준비되어 있다.			
○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청결구역에서 백신을 회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대가 있다.			
○ 백신을 회석 또는 준비 할 수 있는 물품(회석용 주사기, 접종용 최소잔여량주사기, 알코올 솜,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0.9%생리식염수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 백신 준비구역(준비실)에 백신 해동·회석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가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다.			
○ 준비대 오염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 예방접종 전·후로 손위생을 실시 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다.			
○ 해동백신 이동시 사용가능한 카트가 준비되어 있다.			
5.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현황			
<백신보관 초저온냉동고>	점검결과		비고
○ 설치대수	대		
○ 설치시기	년 월		
○ 용량	L(리터)		
○ 초저온 냉동고 기능	예	아니오	
- -60℃부터 -90℃까지 조절 가능			
- 초저온 냉동고는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져 있음			
- 온도 일탈 알람 등 온도 모니터링 기능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1	○ 설치대수	대	

	○ 구입시기	년 월		
	○ 용량	L (리터)		
	○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 상업용 냉장고			
	- 일반 가정용 냉장고			
	·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2	○ 설치대수	대		
	○ 구입시기	년 월		
	○ 용량	L (리터)		
	○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 상업용 냉장고			
	- 일반 가정용 냉장고			
	·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성명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주소	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임신부)	[]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또는 [] 마지막 생리일) : 년 월 일 [] 신고 시 이미 출산 한 경우, 출산일 : 년 월 일						
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임신부) 재태주수 주 - 재태주수를 모르는 경우: [] 임신 초기(0-13주) [] 임신 중기(14-27주) [] 임신 후기(28주 이상)						
예방접종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임신기간 동안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일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접종 전 특이사항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출생 체중(kg) [] 선천성 기형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						
	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						
	이상반응 종류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연조직염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경련		☐ 뇌증 혹은 뇌염 ☐ 길랭바레증후군		
		그 밖의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발열 ☐ 골염 혹은 골수염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관절염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진행상황	1. 진행 중	☐ 생명위중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치료 안함					
	2. 상태종료	☐ 완전회복 ☐ 경미장애/후유증 ☐ 영구장애/후유증 ☐ 사망					
	3. 모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서명란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 접종 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 부종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어오름
 - 통증·발적·부어오름·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 뇌증(腦症)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① 뇌전증 발작
 -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 뇌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 ☐ 길랭바레(Guillain-Barre)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 알레르기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 ② 천명(쌽쌽거림)
 - ③ 안면 부어오름 또는 전신 부어오름
-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쌽쌽거림)과 호흡곤란
 - ② 후두 연축/부어오름
 -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어오름, 전신 부어오름)
-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 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어오름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 발 열
 -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³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	
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접종백신 ☐ 화이자 ☐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노바백스
발생 인지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1. 증상과 징후를 표시하여 주세요.

구분	경증	중증
피부·점막	☐ 피부발진이 없는 전신 소양증 ☐ 전신 따끔거림 ☐ 접종부위의 두드러기 ☐ 충혈되고 간지러운 눈	☐ 전신두드러기 또는 전신홍반 ☐ 국소적 또는 전신적 혈관부종(유전성 혈관부종 아님) ☐ 피부발진을 동반한 전신 소양증
심혈관계	☐ 다음 증상 중 적어도 2가지가 있어 말초 혈액이 감소된 경우 <i>(☐ 빈맥 ☐ 저혈압이 아니지만 모세기관 재충전 3초이상 ☐ 의식수준 감소)</i>	☐ 저혈압 ☐ 다음 증상중 적어도 3가지가 해당하는 갑작스런 쇼크 <i>(☐ 빈맥 ☐ 모세기관 재충전 시간 3초 이상 ☐ 중심맥박압 감소 ☐ 의식상실에 준하는 단계이거나 의식상실)</i>
호흡기계	☐ 지속되는 마른기침 ☐ 쇠속소리 ☐ 천명이나 그렁거림 없는 호흡곤란 ☐ 목이 막힌 느낌 ☐ 재채기, 콧물	☐ 양측성 천명음(기관지 연속) ☐ 쌉쌉거림 ☐ 상기도 부종(입술, 혀, 목, 목젖, 후두) ☐ 아래 2가지이상의 호흡기질환 <i>(☐ 빈호흡 ☐ 청색증 ☐ 그렁거림 ☐ 후전(recession) ☐ 보조호흡근의 사용증가 (흉쇄유돌근, 늑간, 함몰 등))</i>
위장관계	☐ 설사 ☐ 복통 ☐ 메스꺼움 ☐ 구토	-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증상이 발생한 시간간격을 기록해주세요. 시간 분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처치한 내용을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 ☐ 에피네프린 주사
 ☐ 항히스타민제 투여
 ☐ 부신피질스테로이드 투여
 ☐ 산소투여
☐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4. 증상발생시 활력징후를 적어주세요

- ☐ 혈압(/ mmHg)
 ☐ 맥박(회/분)
 ☐ 체온(℃)
 ☐ 호흡수(회/분)

5. 증상에 대한 처치 후 병원을 방문했나요?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응급실 ☐ 입원 ☐ 중환자실 ☐ 외래 ☐ 기타))

발생인지 기관 작성자 : _____

6. 현재(조사당시) 상태는 어떤가요?

☐ 자연회복 ☐ 치료 후 당일 회복 ☐ 치료 후 외래 진료 ☐ 입원/입원기간 연장 ☐ 사망 ☐ 기타

7.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 경험이 있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경증 또는 중경증 ☐ 중증)
원인 및 시기(_____)

8. 과거에 예방접종 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예방접종명 _____)

9.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로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음식 ☐ 약물(예방접종은 8번에서 응답) ☐ 기타 _____)

10. 현재 알레르기 또는 천식 약물 등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 알레르기 약물(류코트리엔길항제) ☐ 항히스티만제 ☐ 점안약 ☐ 비강스프레이 ☐ 천식흡입기
☐ 기타 _____)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 위 사항 이외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주세요.

※ 작성방법

1. 1~5문항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기관의 담당 간호사가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고,
2. 6~10문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된 보고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1. 조사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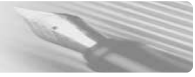
조사 주체	_____시(도) 역학조사관 _____ (연락처: _____)
조사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조사 대상 정보	○ 성명 : _____ ○ 성별 : _____ ○ 접종 당시 연령 : 만 _____세 ○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주소지 : _____ ○ 이상반응 의료기관 진단명 : <u>(예) 비특이적 림프절염</u> (질병 코드: <u>(예) 188</u>) ○ 백신 접종 회차 ☐ 1차 ☐ 2차 ☐ 모름 ○ 조사시 상태 ☐ 사망 ☐ 중증이상반응 ☐ 회복중 ☐ 완치 ☐ 모름 ○ 부검여부 ☐ 예 ☐ 아니오 ☐ 예정 (예정일: _____) ○ 신고자 ☐ 본인 ☐ 가족 ☐ 기타 (_____)

2. 조사내용

예방접종 내역	<table border="1"> <tr> <th>예방접종종류</th> <th>제 품 명</th> <th>제 조 회사</th> <th>제 조 번호</th> <th>유통기간</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예방접종종류	제 품 명	제 조 회사	제 조 번호	유통기간					
	예방접종종류	제 품 명	제 조 회사	제 조 번호	유통기간						
○ 접종일시 (년/월/일/시간) : _____ ○ 접종부위 : _____ (좌/우) ○ 접종방법 : ☐ 근주 ☐ 피내 ☐ 피하 ☐ 경구 ○ 접종 후 관찰 : ☐ 유 ☐ 무 ○ 접종 후 주의사항 교육 : ☐ 유 ☐ 무											
예방접종 예진의 및 접종인력	○ 접종기관 형태: ☐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 방문접종팀 ☐ 자체접종기관 ○ 접종기관명: _____ ○ 예진의 : ○○○ (의사 면허번호 : ○○○○○○) ○ 접종자 : ○○○ (의사/간호사 면허번호 : ○○○○○○)										
	○ 접종 교육 이수 여부: ☐ 이수함 ☐ 이수 안함 ☐ 기타 (교육 이수일: _____ 교육주관: _____ 교육명: _____) ○ 교육 이수자: ☐ 의사 ☐ 간호사 ☐ 기타(_____) (교육이수 형태: ☐ 온라인 ☐ 오프라인)										

치료기관 및 담당의사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치료기관명: ○ 담당의사 :
피해발생경위	○ 최초 증상 : ○ 증상 발생 일시 (년/월/일/시간) : ○ 접종부터 증상발생까지 걸린 시간 : 일 시간 분 ○ 증상 경과: ○ 현재 증상: ○ 신고 경위 : ○ 임상 경과 (증상, 일시, 방문 의료기관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 ○ 조사 당시 임상 결과[완쾌, 회복 중, 입원(일반, 중환자실), 사망, 영구적 장애 등] :
이상반응 중증도	☐ 경증 ☐ 중증 (☐ 입원 또는 입원 연장 ☐ 영구적인 장애 ☐ 선천성 기형 ☐ 생명 위협 ☐ 사망)
현재 건강 상태 및 과거력	○ 기저 질환 및 의학적 과거력 : ○ 가족력 : ○ 현재 질환(선천적 질환 포함) ☐ 있음 ☐ 없음 (있을 시 질병명: _____) ○ 임신 여부(성인 여성인 경우) : ○ 코로나19 검사 ☐ 있음 ☐ 없음 (있을 시 결과: ☐ 양성 ☐ 음성) (양성시 확진 시가: _____) ○ 평소 약물, 음식물 등에 대한 알러지 유무: ☐ 있음 ☐ 없음 ☐ 모름 ○ 알러지 형태: ☐ 약품 ☐ 음식물 ☐ 기타 (해당 알러지 원인: _____) ○ 과거 예방접종 후 알러지 반응 발생 유무 ☐ 있음 ☐ 없음 (있을시 해당 예방접종명: _____) ○ 백신 접종 전 급성 질환 ☐ 있음 ☐ 없음 (있을시 해당 급성 질환명: _____ 시가: _____) ○ 접종 전후 약물 복용력 ☐ 있음 ☐ 없음 (있을시 약물명: _____ 시가: _____) ○ 백신 접종 전 입원 ☐ 있음 ☐ 없음 (있을 시 입원원인: _____ 시가: _____)
주요 검사소견 (검사 시행 날짜 병기)	○ 임상 진찰 소견 : ○ 실험실적 검사 소견 : ○ 영상학적 검사 소견 : ○ 기타 :
관련자 면담	○ 예진 의사 : ○ 접종자 : ○ 보호자/환자 : ○ 담당의사 :
동일 제조번호	○ 동일 제조번호,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일자 접종자

백신 접종자의 이상 유무	: ()명 중 이상반응 없는 사람 ()명, 이상반응자 ()명(이상반응 종류:)
백신관리 사항	○ 백신배송 형태 : ☐ 냉동 ☐ 냉장 ☐ 실온 (해당 온도:) ○ 백신배송일(월/일 오전 오후) : ○ 접종장소 내 백신보관 상태 : ☐ 냉동 ☐ 냉장 ☐ 실온 (해당 온도:) ○ 접종 전 백신보관 상태 : ☐ 냉동 ☐ 냉장 ☐ 실온 (해당 온도:) ○ 백신 배송량 : 바이알 ○ 백신 사용량 : 바이알 ○ 백신냉장(동)고 : ☐ 유 ☐ 무 (특이사항:) ○ 냉장(동)고 온도 : (백신 보관 장비 온도기록지) ○ 온도측정방법 : 외부측정장치 ☐ 유 ☐ 무 ○ 자동온도기록장치 : ☐ 유 ☐ 무 ○ 정전여부 : ○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 ☐ 유 ☐ 무 (특이사항:) ○ 콜드체인 유지 : ☐ 양호 ☐ 불량 ○ 자가발전기 : ☐ 유 ☐ 무
관련 문헌 검토 사항	○ WHO GACVS : ○ 미국 IOM : ○ WHO AEFI Guideline : ○ 기타 연구 문헌(연구 디자인 병행 기재, 예) 사례-대조군 연구, 사례 보고 등) :
인과성 평가 결과	○ 백신 자체의 문제 : ○ 예방접종 과정상 오류 : ○ 진단기준 부합 여부(이상반응 역학조사 지침, Brighton Collaboration case definition 등) - - - ○ 알려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인지 여부(출처 포함) - - ○ 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평가(질환의 알려진 주요 원인, 선행 증상, 검사 결과 등)
잠정결론	인과성 평가 ☐ definite ☐ probable ☐ possible ☐ unlikely ☐ definitely not related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2. 30.>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장소	접종 일시		
진료비		간병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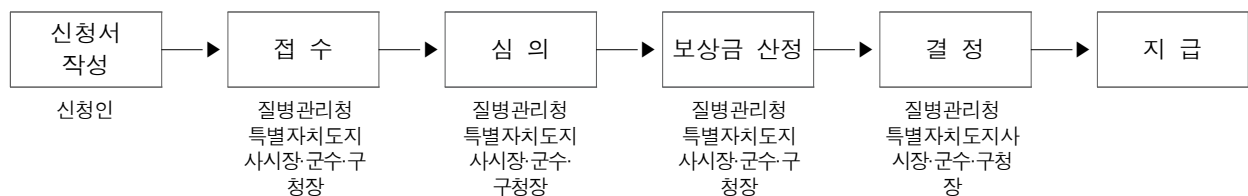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30.>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사망자 또는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일시		
	접종 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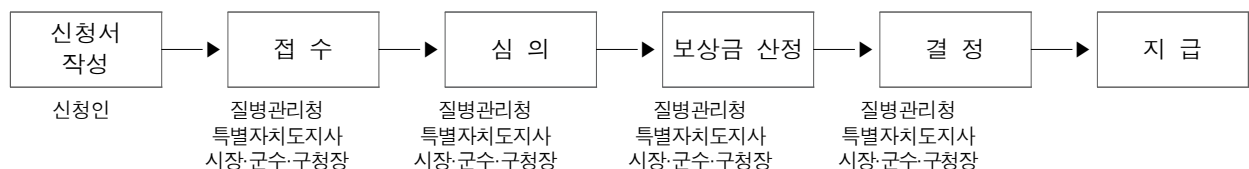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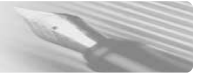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의 신 청 서				
피접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④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결과요지				
⑤결과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⑥이의신청의 이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피접종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화번호 :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있을 경우)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국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 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체크리스트				
서류작성주체	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여부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예	☐ 아니오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예	☐ 아니오
		이의신청서	☐ 예	☐ 아니오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예	☐ 아니오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 예	☐ 아니오
	4	진단서	☐ 예	☐ 아니오
	5	의무기록사본	☐ 예	☐ 아니오
	6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 예	☐ 아니오
	7	진료비영수증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	☐ 예	☐ 아니오
	8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호 별지 제1호 서식)	☐ 예	☐ 아니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체크리스트

서류작성주체	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여부	
시·군·구 제출서류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예	☐ 아니오
	10	과거예방접종력	☐ 예	☐ 아니오
	11	예방접종 예진표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별지 제1호 서식)	☐ 예	☐ 아니오
	1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예	☐ 아니오
	13	백신보관 냉장고점검표 및 관리대장	☐ 예	☐ 아니오
	14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서식)	☐ 예	☐ 아니오
	15	약품보관증(봉인의약품 시)	☐ 예	☐ 아니오
	16	의료기관 진료비내역서	☐ 예	☐ 아니오
	17	사망진단서 및 부검소견서(사망 시)/심리평가보고서(불안반응 시)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	☐ 예	☐ 아니오

()시/도 ()년 ()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연번	이름	주민번호	접종백신의 제품명 ^①	접종 차수	접종기관명	이상반응 종류	접종일시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경과 시간		보상신청 금액			신속절차 요건 충족 여부 (O / X)	기타 의견 (기초조사 의견)
							접종일시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일시 (경과기간)	피해보상 신청금액 ^①	피해보상 기존 ^② 신청금액	합산 ^③ 금액		
1	홍길동	000000-00000000	아스트라 제네카	1차	000	??	2021.2.26.	2021.2.26. (6시간)	20만원	-	20만원	O	
2	임꺽정	000000-00000000	화이자	2차	000	??	2021.9.10.	2021.9.11. (12시간)	40만원	-	40만원	X	
3	손오공	000000-00000000	아스트라 제네카	2차	000	??	2021.7.26.	2021.7.27. (24시간)	20만원	10만원	30만원	X	
4													
5													
6													
7													
8													
9													
10													
신속절차 요건 충족 총 합계 : 건													

① 금번에 신청하는 피해보상 금액, ② 이전까지 신청했던 피해보상의 금액 합계, ③ 금번 신청 금액까지 합산한 피해보상신청의 총액(①과②를 합산한 금액)

(2021. 2. 24. 기준)

접종백신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신속요건 보상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아스트라 제네카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3일 이내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화이자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3일 이내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모더나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3일 이내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 상, 신속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과 동일한 절차로 보상신청 진행

※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는 수정될 수 있음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표시란은 수령자가 기록할 것

① 제품명		② 수 량	
③ 규 격		④ 저장방법	
제조(수입)업자	⑤ 상 호		
	⑥ 주 소		
	⑦ 제조번호	⑧ 유효기한	
판매(출하)자	⑨ 상 호		
	⑩ 주 소		
	⑪ 포장형태	⑫ 발송일시	
수령자	⑬ 상 호		
	⑭ 주 소		
	⑮ 포장 형태 및 온도 ※	⑯ 수령일시 ※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판매(출하)자 (서명 또는 날인) 수 령 자 (서명 또는 날인)			

※ 위 양식은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 예정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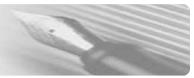
백신 보관 장비 온도기록지											
※ 접종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백신 보관 장비 1대당 1장씩 작성 필요											
접종기관명						보관장비명		예) 접종실 냉장고 ②			
점검기간			2021. 5. 1. ~ 5. 31.			백신관리담당자		홍길동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부온도(°C)	실내온도 (°C)	점검자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부온도(°C)	실내온도 (°C)	점검자		
1	오전	10:00	6.2°C	22.5°C	홍길동	16	오전	11:30	4.7°C	27.0°C	고길동
	오후	17:30	5.3°C	20.0°C	홍길동		오후	16:30	7.0°C	25.8°C	고길동
2	오전					17	오전				
	오후						오후				
3	오전					18	오전				
	오후						오후				
4	오전					19	오전				
	오후						오후				
5	오전					20	오전				
	오후						오후				
6	오전					21	오전				
	오후						오후				
7	오전					22	오전				
	오후						오후				
8	오전					23	오전				
	오후						오후				
9	오전					24	오전				
	오후						오후				
10	오전					25	오전				
	오후						오후				
11	오전					26	오전				
	오후						오후				
12	오전					27	오전				
	오후						오후				
13	오전					28	오전				
	오후						오후				
14	오전					29	오전				
	오후						오후				
15	오전					30	오전				
	오후						오후				
						31	오전				
							오후				

-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이 유통업체에서 백신 수령 시, 입고 기록시 사용
- * 백신보관장비(초저온 냉동고, 냉장고)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입고 기록지						
접종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입고기간	2021. 3. 1.(월) ~ 3. 31.(목)					
연번	입고일시	백신명	로트번호	수량 (vial)	입고자 이름	백신관리 담당자
1	3. 8. 11:00	아스트라제 네카社	XYZ123	50	홍길동	나백신
2	3. 23. 15:00	아스트라제 네카社	XYZ124	30	고길동	나백신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 입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 접종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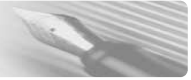
서 식 29-2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양식(예방접종센터 등)



-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냉장상태로 운송할 경우 유통업체가 2장 작성하여 백신 운송 및 의료기관 수령을 확인
- * 자체접종 의료기관과 상호간 확인하고 보관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제품명		수량	vials	
저장방법	냉장			
유통업체	상호			
	포장형태			
	출발지		발송일시	
수령자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주소			
	포장형태/온도		유효기간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을 운송·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통업체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 * 자체접종하는 의료기관이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입고 시 사용
- * 백신보관장비(냉장고)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입고 기록지								
자체접종 의료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입고기간		2021. 3. 1.(월) ~ 3. 31.(목)						
연번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일시 ¹⁾	입고 관리				유효 기간 ²⁾	입고자 이름	백신관리 담당자
		입고 일시	백신명	로트 번호	수량 (vial)			
1	3. 9. 13:00	3. 9. 15:00	화이자社	abc123	25	3. 14. 12:59	이안전	나담당

1) 중앙 또는 권역 예방접종센터 초저온 냉동고에서 백신을 꺼낸 일시

2)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일시 + 120시간(2~8℃)이며,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관리 담당자가 작성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 입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 보건소가 방문접종 등을 위해 보건소 외부로 코로나19 백신을 반출 시 사용하며, 보건소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일 자 : 년 월 일
관리기관 : 000 보건소 또는 000 예방접종센터

※ 동일 일자에 반출-사용-반납된 현황을 1일 1대장으로 정리(필요시 페이지 추가)

<백신 반출 현황>

연번	반출시간	백신 반출 목적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반출자 이름
1	10:00	A시설 거주자 a명 접종	가	abc123	5	홍길동
2						
3						

<백신 사용 현황>

연번	사용시간	백신 사용 내역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사용자 이름
1	10:00~ 14:00	A시설 거주자 b명 접종	가	abd123	4	홍길동
2						
3						

<백신 반납 현황>

연번	반납일시	백신 사용 내역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반납자 이름
1	14:00	A시설 거주자 b명 접종 후 남은 잔량	가	abd123	1	홍길동
2						
3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반출, 사용, 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반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반납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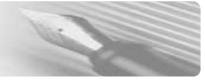
보건소 백신관리 담당자 고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 | | | | | | |
|---------|----------------------------|------|-----------|--|--|
| 예방접종센터명 | | 보관장소 | ① 초저온 냉동고 | | |
| 백신관리기간 | 2021. 3. 8.(월) ~ 3. 14.(일) | | | | |
- | 연
번 | 반출일시 | 백신명 | 로트
번호 | 수량
(vial) | 반출자
이름 | 반출 목적 | 반출 장소 | 인계자
이름 |
|--------|-----------------|------|----------|--------------|-----------|----------------------|-------|-----------|
| 1 | 3. 8.
12:00 | 화이자社 | abc123 | 30 | 홍길동 | 내원자 접종 | ① 냉장고 | 김예방 |
| 2 | 3. 8.
14:00 | 화이자社 | abc123 | 5 | 가나다 | 내원자 접종 | ② 냉장고 | 박접종 |
| 3 | 3. 9.
13:00 | 화이자社 | abc123 | 25 | 홍길동 | 자체접종
의료기관
백신분배 | A의료기관 | 이안전 |
| 4 | 3. 10.
09:00 | 화이자社 | abc123 | 20 | 가나다 | 자체접종
의료기관
백신분배 | B의료기관 | 이안전 |
| | | | | | | | | |
-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서 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백신보관장비(냉동고, 냉장고)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의료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백신관리기간	2021. 3. 8.(월) ~ 3. 14.(일)					
연 번	반출일시	백신명	로트 번호	수량 (vial)	반출자 이름	비고
1	3. 8. 12:00	아스트라제네카社	XYZ123	30	홍길동	
2	3. 8. 14:00	아스트라제네카社	XYZ123	5	가나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서 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코로나19 백신 회수 인수인계서				
“※” 표시란은 유통업체 백신회수자가 회수당일 기록할 것				
접종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접종기관 주소				
<잔여 백신>				
제품명	로트번호	시스템 상 회수량	실 회수량(※)	비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파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반납 및 회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접종기관 백신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유통업체 백신회수자			(서명 또는 날인)	

※ 위 양식은 유통업체 등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지자체용(부록)-

< 목차 >

<부록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53
<부록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155
<부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159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163
<부록 5>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집행기준(안)	165
<부록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관리 지침	184
<부록 7>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210
<부록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218
<부록 9-1>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정보	219
<부록 9-2>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준비	227
<부록 10>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접종기관 관리사항)	230
<부록 11> 백신 보관 온도 이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	236
<부록 12> 접종물품 정보 안내	241
<부록 13> 예방접종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및 온도 유지 관리	243
<부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용) 매뉴얼	244
<부록 15>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점검 관리(보건소용) 매뉴얼	253
<부록 16>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접종대상자 이동 동선(안)	257
<부록 1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 접종) 자체 점검 사항	258
<부록 1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체 점검표	260
<부록 19> 개인보호구 착탈의 순서	265
<부록 2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	266
<부록 21>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리플릿)	268
<부록 20> 코로나19 예방접종 Q&A	27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8-12주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 ▶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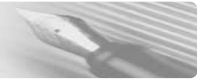
-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00시 · 군 · 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8-12주
화이자	- 핵산백신(mRNA)	2회	21일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
-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격리해제 후 접종 가능)
- ▶ 발열(37.5℃)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 연기)
- ▶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대상자에서 제외

< 코로나19 백신 금기대상자 >

-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된 경우
 - (화이자, 모더나 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 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 polysorbate는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기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 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주의 필요합니다.

백신 종류	코미나티주 (화이자 社)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아스트라제네카 社)
구성물질	2[(polyethylene glycol)-2000]-N, N-ditetradecylacetamide 1,2-distearoyl-sn-glycero-3-phosphocholine Cholesterol (4-hydroxybutyl)azanediyl)bis(hexane-6, 1-diyl) bis(2-hexyldecanoate) Potassium chloride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Dibasic sodium phosphate dihydrate Sucrose	L-Histidine L-Histidine hydrochloride monohydrate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Polysorbate 80 Ethanol Sucrose Sodium chloride Disodium edetate dihydrate water for injections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에서의 예방접종 후 관찰시간

- ▶ 모든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 ▶ 단, 다른 원인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예진 시 임상적 고려사항

▶ 현재 임신 중 입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태어나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감기, 설사 등의 경미한 질환은 예방접종 금기대상은 아니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 받도록 하여야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코로나 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감염과 예방접종 사이 권고되는 최소 간격은 없으나 첫 감염 후 6개월 이내 재감염사례가 드문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첫 감염 후 6개월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연감염(natural infection)에 의한 면역 지속 효과에 대한 자료가 더 발표되면 동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수동항체치료(혈장치료가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수동항체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 항체치료 종료 후 최소 90일 동안 예방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근 14일 이내 백신(코로나19 백신 외)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14일 이내에 접종되었거나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핵산백신(mRNA)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간, 핵산백신(mRNA)과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과의 교차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1차와 2차 접종 시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이루어졌다면 부가적인 접종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접종을 받았다면, 예방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동일한 제형의 백신 접종은 금기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응급처치 및 병원 치료 등

▶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시 고려사항인 PEG의 경우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 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이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십니까?**

모든 백신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나,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하여야 합니다.

▶ **그 외**

- **(만성질환자)** 임상시험 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와 비교 시 비슷한 면역반응이 나타났고 백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 **(HIV 감염자를 포함한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으며, 예방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이 권고됩니다.
- **(수유부)** 현재까지 수유부에게 접종했을 때 수유부 및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유부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 백신별 접종 후 이상반응

백신명	코미나티주 (화이자 社)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아스트라제네카 社)
이상 반응	- 자주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이었습니다.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종종 메스꺼움(1.1%), 권태감(0.5%)과 림프선염(0.3%)이 보고되었습니다. - 광범위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접종 후 4건의 급성 안면 마비가 관찰되었으며, 모든 경우는 몇 주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고 예방접종 후 수일이내 소실되나 이상반응이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국소 반응은 4%, 전신 반응은 13%이었습니다. - 자주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압통(60% 이상), 접종부위 통증·두통·피로감(50% 이상), 근육통·권태감(40% 이상), 발열·오한(30% 이상), 관절통·메스꺼움(20% 이상)이었습니다.



1.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백신명	코미나티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mRNA-1273*
제조사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국외 허가사항)
구성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6도즈)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10도즈)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10도즈)
접종 횟수(간격)	2회, 21일	2회, 8-12주	2회, 28일
접종량 및 방법	희석된 백신 0.3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 모더나社 백신의 경우 아직 국내 허가승인 전으로 국외허가사항 기준으로 작성됨

- (이른 접종)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 (접종 지연)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인지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접종 완료

2.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1,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을 권고함
- 만약 부주의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3. 추가 접종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접종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4.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며, 만약 14일 이내 접종 시 또는 부주의로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되었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5.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6.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특례수입 승인되었으나 접종 우선순위는 아니므로 추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종여부 확정

7.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8. 백신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접종 받은 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스케줄대로 진행
-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용량 접종) 권장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투여 한 경우(예 : 투여 중 일부 백신이 누출되는 경우) 등 오류가 발견된 후 최대한 빨리 권장 용량으로 재접종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㉓ **백신 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필요**

- (보고기관)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또는 적은 용량으로 접종되거나 많이 희석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받은 자에게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시 (접종량) 접종량 오류 선택 → (메모) 접종량 오류 사유 작성
- (보건소) 유선 보고된 접종 실수·사고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7일 후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및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안내
 - * 이상반응 발생 확인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에 따라 발생 신고

The screenshot shows the 'COVID-19 Vaccination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백신관리' (Vaccine Management) and '접종관리' (Vaccination Management).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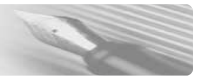
- 대상자 정보 (Recipient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name, ID number, and date of birth.
- 접종정보 (Vaccination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vaccine name, lot number, expiration date, and vaccination date.
- 접종량 (Vaccination Dose):** Includes a dropdown menu for '접종량' (Vaccination Dose) and a text input field for '메모' (Memo). The '메모' fiel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접종내역 (Vaccination History):** Includes a table for recording vaccination history.

9.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는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 필요

부 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교육 시기) 예방접종 시행 전 교육 이수 완료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이수(온라인 교육시스템 이용 방법은 [별첨] 자료 참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교육과정 이수
- (교육 과정) 대상자별 5개 교육과정

교육 내용	세부내용	교육 시간 (분)	교육 대상자				
			지자체 담당자	접종센터 의료인 (의사간호사)	위탁 의료기관 의료인 (의사간호사)	예방접종 업무관련 자원인력	유관기관 담당자 (콜센터 등)
사업 개요	코로나19 개요 (임상증상, 전파경로, 취약계층 등) 추진 배경 및 방향 사업 추진 체계도 예방접종 목적 및 목표접종을 예방접종 시행원칙 기관별 역할(질병청, 시도, 시군구, 접종기관)	11	●	●	●	●	●
		8	●	●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개요 예방접종 사전준비-시행-사후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및 기준 백신별 정보 다양한 백신 호환성 예방접종 일정 예방접종 방법 백신 접종 오류 사례 예방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12	●	●	●	●	●
		33	●	●	●	●	●
접종기관	접종센터	10	●	●			●
	위탁의료기관	7	●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이상반응 능동감시 중증이상 반응 신속대응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9	●	●	●	●	●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 및 보고체계	20	●	●	●	●	●
백신 공급 및 유통	백신 확보 및 공급 백신 공급 절차 백신 수송 및 유통	5	●				

교육 내용	세부내용	교육 시간 (분)	교육 대상자				
			지자체 담당자	접종센터 의료인 (의사간호사)	위탁 의료기관 의료인 (의사간호사)	예방접종 업무관련 지원인력	유관기관 담당자 (콜센터 등)
백신의 보관 및 관리	백신 관리	13					
	잔여 백신 관리		●	●	●	●	●
	개봉한 백신 폐기						
	접종 부대물품 공급 및 관리						
예방접종 위기 소통	위기 소통 방법	8	●				
예방접종 시스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24	●	●	●	●	●
접종 술기	mRNA 백신	16	●	●	●		



제1장 예산집행 방향 및 절차

1. 예산집행의 기본 방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역(시·군·구)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
 - * 시·군·구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 백신 접종
-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을 금하며, 임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산성 물품(전산장비, 각 시설장비, 사무용가구 등)은 임차 방식으로 사용할 것
- 별도 교부 예정인 인건비 예산 및 부대비용(고용부담금, 여비, 식비 등)과 구분하여 집행할 것

2.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3. 예산구분

- 회계구분: 일반회계
- 국고보조율: 국비 100%
- 세부사업명: 감염병예방관리(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09-091-4800-4838-303)
- 구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경상적 보조금이며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로 집행할 수 없음

4. 국고보조금 적용범위

-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매월)
 - * 현재 재정당국과 매월 운영비 약 50백만원으로 예산 협의 중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협의 중인 예산범위에 맞추어 예방접종센터 운영 준비 필요

5.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할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국고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

- 지자체(시·도)는 아래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자 지정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부서로 공문 병행 시행

** 시도에서 예방접종센터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비용 일괄 집행 가능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질병관리청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시·도)
	국고 보조금 교부	질병관리청
사업 시행	지자체(시·군·구)로 국고 보조금 재교부	지자체(시·도)
	사업 시행	지자체(시·도)
사업실적 관리	모니터링	질병관리청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자체(시·도)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 통지	질병관리청

[그림] 사업절차도

제2장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지자체(시·도)는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약서 등을 첨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예산교부신청서류>

- 예산신청공문, 교부신청서, 해당기관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질병관리청은 제출자료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국고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대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국고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내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 요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질병관리청장은 사업 수행 중 선정(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일반 사항 >

- 지자체(시·도)은 교부 받은 국고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집행 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집행 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영수증 및 증빙 서류>

-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가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보조 사업자는 예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보조 사업자(지자체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는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을 의미
- 보조금의 사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출 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함

< 기타 >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 부득이한 사유로 자산성 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것

<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집행가능 내역(예시) >

연번	내역	집행방식	비고
1	센터 시설 임차	임차	
2	센터 시설 공공요금	공공요금	
3	발열감시 카메라	임차	
4	PC	임차	
5	모니터	임차	
6	스캐너	임차	
7	프린터	임차	
8	TV	임차	
9	책상	임차	예진용, 의료진용
10	의자	임차	의료진용, 접종자대기용
11	캐비닛	임차	문진표 및 물품 보관용
12	냉장고	임차	디지털온도계 필수 부착
13	의료인력 개인보호구	구매	페이스실드, 장갑, 마스크, 일회용 가운
14	디지털온도계 (내부온도 확인용,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 구비)	구매	여분수량 준비 필요
15	응급키트	구매	에피네프린, H1·H2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제, 정맥수액, 기도삽관 키트, 심폐소생술 마스크
16	접종 준비대	구매	소모품
17	의료용 트레이	구매	소모품
18	전화기	구매	소모품
19	혈압계	구매	소모품
20	체온계	구매	소모품
21	청진기	구매	소모품
22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 연속맥박측정기	구매	소모품
23	알코올 캔, 알코올 솜	구매	소모품
24	쓰레기통	구매	소모품
25	의료용폐기물 처리통, 봉투	구매	소모품
26	센터 안내표지판	구매	소모품
27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매	소모품
28	인쇄용품(토너, 용지 등)	구매	소모품
29	사무용품(문구류 등)	구매	소모품
30	wi-fi 공유기	구매	디지털 온도계 부착 필요 조건
31	환자용 침대(스트레치카)	구매	소모품
32	각종 용역(청소, 소독 등)	계약	

제3장 사업 시행

1.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시

2. 지원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질병청 및 지자체(시·도)에서 지정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역(시·군·구)별 예방접종센터 1개소,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추가 1개소까지 국비 지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센터 수는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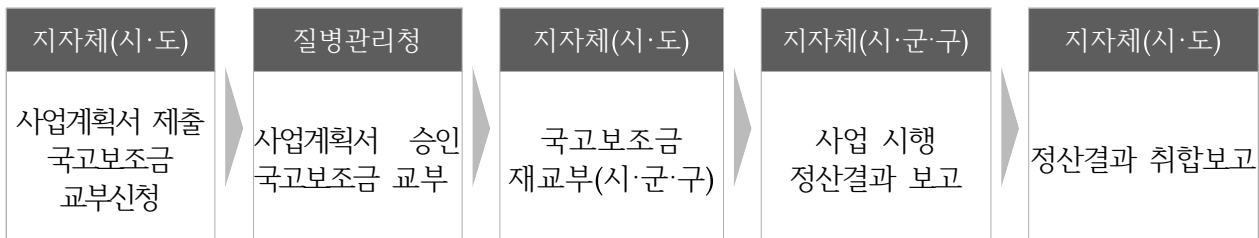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지역(시·군·구) 예방접종센터 및 운영비
 -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소요된 비용
 - ※ 지원 항목: 장소임차료, 공공요금, 각종 장비 임차료, 소모품, 용역 등

4. 지원방법

- 질병관리청에서 각 지자체(시·도)로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산을 교부하면, 각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별 예산 재교부
 - * 시·도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산 차등 재교부 가능

5. 지급 절차



1.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질병관리청장은 사업 실적 파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장은 지원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사용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동 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2. 사업완료 실적보고 및 정산 보고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 붙임 3 실적보고서 서식, 붙임 4 정산보고서 및 별지 1~3호 서식
- 시·도(시·군·구)는 보조사업 완료 후 세부내역사업별로 정산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구분 및 집행 관리
 - ※ 붙임 3 실적보고서 서식, 붙임 4 정산보고서 및 별지 1~3호 서식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정산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 서식으로 제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 후 구분·계리하여 집행 관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반납하여야 함
 -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기 보고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정산 정정보고’(서식5)에 따라 작성·보고함

3.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숙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

사 업 계 획 서

☐ 목적

○

☐ 사업기간

○

☐ 시행기관

○

☐ 사업내용

○

☐ 사업비

○ 회계구분

○ 국고지원 세부사업명

○ 산출내역

○ 예산현황

☐ 사업효과

0000년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가. 결산 총괄표

○ (000 시·도)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D)	불용액 (E)	이자 발생액	반납액 (국비)	예산액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집행률 (%)	예산액대비 (C/A)	현액대비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나. 사업목적

○

다. 사업내용

○

라. 주요성과

○

마. 2021년도 결산 세부내역

1) 결산내역 및 근거

○

2) 세부내역별 결산내역(국비만 작성)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반납액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가. 어린이 예방접종								

바. 2021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첨)

붙임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서식)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질병관리청		
프로그램명	질병예방및대응체계구축	단위사업명	감염병관리
세부사업명	감염병예방관리	보조사업명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 원)

보조금(㉔)	지자체부담금(㉕)		자기부담금(㉖)	합 계 (㉔=㉔+㉕+㉖)	보조금비율 (㉖=㉔÷㉔)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 원)

당기분 집행액 (㉑)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㉒=㉑+㉓)	수익금		
	전기 이월액(㉔)	집행액 (㉕)		발생액 (㉖)	반환액 (㉗)	미반환액 (㉘=㉖-㉗)
보조사업비 총액㉑ 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 한 집행 액	당기분 집행액(㉑) + 전 기이월분 집행액(㉓)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 생액(입 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 익금중 미반 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㉙=㉑-㉑)	전기이월잔액 (㉚=㉔-㉕)	집행잔액 (㉛=㉙+㉚)	발생이자 (㉜)	차기 이월액 (㉝)
보조사업비 총액㉑- 당 기분 집행액(㉑)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㉔ - 전기 집행액(㉕)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 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㉞=㉙+㉜-㉝)	보조금 반환액 ^{주4)} (㉟)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주4)} (㊱)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㊲=㉞-㉟-㊱)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㉖)×㉟)- 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㉟×㉟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 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㉖)× ㉟)-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 는 ㉟×㉟÷㉟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4. 별지 1~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 원)

내역사업	시도(시군구)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xxx,xxx	△△.△%
			소계				
합계							

【별지 제2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내역사업	시도(시군구)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0000.00.00	OO개소	xxx,xxx	
			소계			xxx,xxx	
합계							

【별지 제3호 서식】국고보조금 집행 실적(세부내역사업별)

시·도 명칭: (담당자/부서/연락처 기재)

(단위 : 원)

내역사업_내내역사업(보조세목)	예산액	교부액(A)	현액* (변경 예산액) (B)	집행액(c)	집행잔액(B-C)			이자 발생액	비고 (시도담당자/ 부서/연락처)
					계	이월액	불용액		
계									
1. 감염병예방관리									
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									

* 현액 : 당초 교부금액에 대해 내역변경(조정)된 예산액

붙임 5 정산 정정보고(서식)

일반 회계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정내역

<변경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시도담당자/부 서/연락처)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변경고지		자세히 기재

* 변경고지 : 당초 고지된 집행잔액에 대한 수정

<추가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시도담당자/부 서/연락처)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추가고지		자세히 기재

* 추가고지 : 당초 고지된 집행잔액 납부 후 추가 집행잔액 발생

<신규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시도담당자/부 서/연락처)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신규고지		자세히 기재

* 신규고지 : 집행잔액 최초 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1.] [법률 제15022호, 2017.10.31., 타법개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2017.10.3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1.]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인력 운영·관리 지침 편집

코로나19 예방접종 인력 운영 · 관리 지침

1 | 개 요

- 이 지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한 방문접종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지원인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지원인력의 운영, 복무관리, 근무조건, 보상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 적 용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운영되는 의료·지원인력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음

3 | 용어의 정의

- (의료·지원 인력) 예방접종을 위한 방문접종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예진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인력 등
-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무를 제공한 일수'로, 2일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
- (보상수당)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의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

※ 공공인력은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

4

지자체 전달자 지정·운영

- (구성) 인력 운영·관리 및 편의지원을 위해 각 시·군·구 추진단 내 접종기관 운영팀에 전달자 지정·운영
- (전달자 역할) 인력관리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 (인력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복무·건강상태 등 관리
 - * 계약기간, 수당지급, 근로자의 의무(임무성실수행, 지침준수 등) 등을 규정
 - (복무관리 및 수당지급) 전반적 복무관리 및 수당지급업무 수행,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회계 등 관리 철저
 - ※ 의료·지원인력의 복무관리 및 수당지급은 인력을 운영·활용하는 시·군·구에서 하여야 함
 - (건강상태 관리) 출퇴근 시 점검, 체온측정 등 건강상태 관리
 - (애로해소 노력) 의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노력

5

의료·지원인력의 운영

- (기본원칙) 소 국민 접종, 코로나19 지속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분석을 통해 접종인력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 (운영 주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은 예방접종센터 운영주체로 접종인력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의사회, 간호사회, 건보공단 등 직능단체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접종 인력 운영계획 수립·운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접종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시·도에서 조정 등 수급을 총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도내 의사회, 간호사회, 건보공단 등 직능단체와 의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방법) '21.2월부터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내 자원을 분석하여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진 의사) ①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MOU 체결 등 협의를 통한 민간 지원 의사, 계약 의사(시설 방문접종 시) 확보를 우선으로 함

- 민간 지원 의사 모집과 병행하여 ②공중보건 의사, ③개원 의사 대상으로 日 또는 周, 月단위 등 순환근무(이 경우 간호사와 동시 근무 하도록 협조), ④공공 병원 의사 순환근무, ⑤병·의원과 협약 등을 통한 의사 순환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집 추진

○ (간호사) ①시·도 및 시·군·구 간호사회 MOU 체결 등 협의를 통한 민간 지원 간호사 확보를 우선으로 함

- 민간 지원 간호사 모집과 병행하여 ②개원 병·의원 협조를 받아 日 또는 周, 月단위 등 순환근무, ③공공병원 협조를 받아 日 또는 周, 月단위 간호사 순환근무, ④병·의원과 협약 등을 통한 순환근무, ⑤소방청 간호사, ⑥방문보건간호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집 추진

* 질병관리청-소방청 협의 후 중앙차원에서 접종센터 지원방안 별도 통보(2월)

○ (행정지원인력) 민간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충원시 자체 공무원 등 지원인력 확보

□ (운영계획)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정협의체 심의를 거쳐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인력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조정계획을 포함한 시·도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접종인력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기 및 방법은 공문으로 송부 예정

【시군구, 시도 의정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시도는 시도지사^와 시도 의료계 대표, 시군구는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료계 대표로 구성(참여하는 의료계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의협, 병협, 간협은 반드시 포함)
 - * 중앙차원에서는 의협회장, 병협회장, 간협회장과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이 참여하는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중
- (논의사항)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전반
 - 시도, 시군구 백신 예방접종계획 공유 (반드시 공유)
 - 백신접종 관련 민간 의료자원 지원방안 (지원인력 Pool 작성)
 - 지자체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
- (운영) 지자체 의정협의체 구성 후 매주 실무위원회 운영
 - * 중앙 실무위원회 : 의료계(부회장급), 정부(담당 국장급)가 매주 개최 중

6

교육, 안내 등

-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접종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에서 예방접종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방문접종 및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전 발열, 기침, 콧물 등 의심증상 사전체크 및 감염 예방 관련 안전교육 실시
- 현장상황 설명, 관련 지침* 배부, 업무 안내 등(현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

7

근로계약서 및 근무상황부 작성·관리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지원인력에 대해 근무조건 등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별첨2, 3) 작성(대행), 관리
 - 근로계약서(별첨2, 3)는 민간인력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작성 시 신분증 및 면허증·자격증 사본,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아울러,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별첨4)'를 징구
- ※ 월 2~3회 등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 (근무지 또는 근로기간 변경 시, 계약서 관리) 근무지 또는 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관리
 - (근무지 변경) 접종상황 및 의료인력 수급상황 변동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 (근무기간 변경)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종료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 (근무상황부 작성 및 관리)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지원인력의 복무상황 및 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 포함)을 확인하고 관리
 - 의료·지원인력이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

8 | 의료·지원인력의 근무조건 등

- (근무장소) 소속된 방문접종팀이 방문하는 시설 또는 각 지자체가 지정한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
- (근무기간) 민간인력의 경우 월·주당 ○일 등 정기 또는 부정기로 근무 가능, 접종규모에 따라 의료·지원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지자체 접종대상자 및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일(8시간) 이내로 계약 체결 가능
 - 공공인력(공보의 등)의 근무기간은 복무명령에 따름
 - 근무기간 연장시, 당사자 및 원 소속기관 동의 필요
- (기본근무시간) 1일 8시간(교육시간 포함, 중식 1시간 제외) 근무가 원칙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 기관(시설)의 장은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의료·지원인력이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수당의 종류)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품

- (근무수당,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기본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야간·휴일에 관계 없이 직종별로 차등 지급
 - (근무수당) 민간인력에 대해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공공인력에 대해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병가로 근로제공 없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
- (위험수당)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 종사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직종간 차등 없이 정액으로 지급
- (전문의수당)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교육수당) 근무 투입 전 사전교육 이수 시, 지급하는 정액금
- (초과근무수당) 야간·휴일·직종에 관계 없이 기본근무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 1일의 초과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 역월(曆月)상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1시간 이상시 인정(1시간 미만 절사)
- (출장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매일 지급하는 수당

□ (지급원칙)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 지급함이 원칙이며, 개인 또는 기관의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 근무도 지급

* 그 기간의 산정은 역(曆)에 의함(1개월 산정례 : 2.26.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익월 3.25.까지 - 민법 제160조 준용)

※ 수당 지급 기준은 중수본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

- 다만, 총 근무일수가 1일(8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 (산정례) 총 근무일수가 7시간 30분인 민간인력 간호사의 경우, 교육수당 150,000원, 출장비 9~11만원, 위험수당 140,630원(=150,000원/8*7.5), 근무수당 187,500원(200,000원/8*7.5)을 각 지급

□ '공공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 (공통 수당) 직종별 차등 없이 지급하는 수당

- (교육수당)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 (초과근무수당) 1시간 당 1만원(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을 지급
- (출장비)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지역 9만원 지급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관내·관외를 구분, 관외의 경우 출장비 정액 지급하되 관내의 경우 출장비 미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②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개별 수당) '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직종별 차등 지급하는 수당

- (특별지원활동 수당) '근무기간 1일 당' 군의원·공보의·중앙부처·공공기관 소속 의사에 대해 12만원, 간호사에 대해 7만원 지급(국비)
-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지자체 소속 공보의에 대해 '근무기간 1일당' 4.5만원 지급(지방비)

<직종별 인건비 내역>

구 분	인 건 비 내 역
군 인	●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군의원)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행정지원 7만원(일당)
공보의	●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원(국비) * 타 시·군으로 배치된 경우에 한함
공공기관* 소방청	●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응급 구조사 일 7만원
지자체 소속 공보의	●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4.5만원(지방비) * 관할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업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공공기관은 국·공립병원 등을 의미하며, 보건소는 포함되지 않음

※ 보건소 내 간호직 공무원 등 활용 시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수당 지급 가능(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30(21.1.4.) 참조)

□ '민간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 (공통 수당) 직종별 차등 없이 지급하는 수당

- (교육수당)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 (초과근무수당) 1시간 당 1만원(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을 지급

○ (개별 수당) 직종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수당

- (근무수당)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직종별 차등 지급
- (위험수당) 의료인력의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일차에 15만원, 2일차 부터는 5만원을 지급
- (출장비) 의료인력에 대해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지역 9만원 지급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관내·관외를 구분, 관외의 경우 출장비 정액 지급하되 관내의 경우 출장비 미지급

<직종별 인건비 내역>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 근무 수당 = 총 근무일수 × 35만원 ●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 전문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10만원)
간호사	● 근무 수당 = 총 근무일수 × 20만원 ●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행정지원인력	● 근무 수당 = 행정지원인력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 예정

<총 근무일수 예시>

◆ 14일 근무기간 중 2일의 비번(휴일) 포함된 경우 → 14일간의 수당 지급

* 총 근무일수(14일) : 실제근무일수(12일) + 대기일수(2일)

* 대기일수(2일) : 실제근무일수(12일) * 0.2

◆ 14일 근무기간 중 비번(휴일) 없이 일한 경우 → 16일간의 수당 지급

* 총 근무일수(16일) : 실제근무일수(14일) + 대기일수(2일)

* 대기일수(2일) : 실제근무일수(14일) * 0.2

※ 대기 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산정(실제 근무일수가 5일인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4대 보험 가입 및 부과)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자인 의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시·군·구)은 관계법상 적용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단,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는 1일이라도 근무 시 적용

<사회보험료율>

구 분	근로자부담금	사업자부담금	비 고
국민연금	4.5%	4.5%	근로자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됨.
건강보험료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료	0.8%(근로자 실업급여)	0.8%(사용자 실업급여) 0.85%(사용자 고용안정)	
산재보험료	-	1.03% (직종에 따라 차등 부과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은 매월분의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비용부담 및 행정처리

- (비용부담) 국가 부담(국비 1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 (행정처리) 의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시·군·구)에서 처리(지자체 배정)

※ '15년 메르스 당시 수당 지급액

- * (군인)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수당 지급(군의원 80만원, 간호사 등 60만원 일괄 지급)
- * (민간) 기본근무수당(간호사 15만원, 의사 30만원)에 위험수당(15만원+일5만원), 전문직 수당(중환자실 근무등, 5만원), 교육수당(10만원), 야근수당(1만원/시간) 등 가산, 교통비(5만원) 별도 지급 등

10

의료·지원인력의 편의 지원

□ 숙박 편의 지원

- 각 지자체는 숙박시설 이용가능 여부, 객실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목록을 집중·지원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교통 편의 지원

- (교통편 안내) 근무지의 각종 교통편을 사전 안내
- (차량 편의 제공) 근무지와 기차역·버스터미널 간 및 숙소 간 대중교통 이용 곤란 시, 차량 편의(통근차량 등) 제공할 수 있음
- (무료철도이용 편의 제공)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무궁화호”와 (주)SR에서 운영하는 SRT 승차 시, 무료이용 편의 제공(별첨7) 참조)

□ 출장비(=기타비용) 지원

- (출장비) 숙박비·일비·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근무자에게 정액 지급
 - (숙박비) 서울시 소재 근무 및 숙박 시 7만원/1일, 광역시 6만원/1일, 그외지역 5만원/1일 정액 지급
 - * 지자체에서 숙박시설을 마련하여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숙박비 미지급
 - (일비·식비) 전지역 공통으로 각각 2만원 정액(4만원) 지급

11

접종·지원인력의 예우에 관한 조치 사항

□ 예방접종활동 중 건강관리 지원

- (상시 모니터링) 해당 시·군·구 접종기관운영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염 여부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 계절적 요인(폭염 등에 따른 온열질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이나 피로 누적 등에 의한 건강상태도 주기적 파악

○ (확진 시, 보상) 민간인력이 예방접종 지원활동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기본근무수당을 지급

- 계약 종료 시까지도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14일)까지 기본근무수당 추가지급* 가능

*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는 그 때까지, 14일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4일까지만 지급

- 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공가 조치가 가능한 공무원, 군인, 공보의 등은 위 규정 미적용

○ (격리 시, 보상) 민간인력이 접종 및 지원활동 중 자가격리*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기본근무수당을 지급(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거나, 병원에서 의료·지원인력에게 자가격리를 권하는 경우 등 지자체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 공가조치가 가능한 공무원, 군인, 공보의 등은 위 규정 미적용

별첨 1 : 보수지급 상세기준(민간인력용)

< 보수지급 상세기준 >

- (기본 근무수당)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료·지원인력 별 기본수당 정액 지급
 - (의 사) 정액 일 35만원
 - (간호사) 정액 일 20만원
- (전문의수당)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
 - 정액 일 10만원
- (위험수당)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정액 지급
 - 첫째날 정액 15만원 지급 후 둘째날부터 정액 일 5만원
- (교육수당)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에 따른 인력별 정액 1회 지급 정액 15만원
- (출장비) 식비와 교통비 등 기타 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관외 모집된 경우에 일비·식비·교통비·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기타지역 9만원 지급
- (초과근무 수당) 일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야간·휴일·인력구분에 상관 없이 1시간당 1만원 추가, 5시간 이상 근무시 5만원 정액지급
 - *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하고, 1일의 초과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 역월(曆月)상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1시간 초과 시 인정(1시간 미만 절사)

구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천원)	10	20	30	40	50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지원인력 근로계약서 (민간의료인력용)

○시·군·구(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지원인력(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번호	최초계약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사·감독 하에 성실하게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활동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접종인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제3조 (업무의 내용 등)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간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근로 장소)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 장소 :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2. 기타 제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5조(근로 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지원활동을 위한 복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무성실수행)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지침준수) 모든 활동 조건, 감염 시 치료, 후송, 격리조치 등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 관련 지침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준수한다.

3. (개인안전) 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활동 중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며, 의심증상 발현 및 감염 시에는 신속히 보고 후 중수본의 대응방침에 따른다.
4. (근무지이탈 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책임자와 협의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5. (근무상황부 제출) 일과 종료 후 지원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6.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서명)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에 서명 제출한다.
7. (언론접촉 및 활동사항 비공개)
 - (가)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지원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외부로(언론 및 사회소셜네트워크(SNS) 등 포함) 공개하지 않는다.
8. (품위유지) 활동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활동 의료·지원인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개인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코로나-19 예방접종활동 의료·지원인력의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의료·지원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근무수당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일 1일 정액 지급
 - (가)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2. 전문의수당: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에게 1일 정액 10만원 지급
3. 위험수당 : 1일차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 정액 지급
 - (가) 의료인에 한하여 지급

4. 교육수당 : 투입 전 교육 이수 시 15만원 지급

5. 초과근무 수당 :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 1만원씩 추가 지급
(4시간 이상 근무시 1일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급)

6.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관외 모집된 경우에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 외 지역 9만원 정액으로 지급

제8조 (근로자 자격상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본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위반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취소(근로계약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코로나-19 예방접종활동 의료·지원인력 관계부처 협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등 관계 법령과 통상관례를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시·군·구 (인)

근로자 : (인)

* 근무지 :

별첨 3 :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본인 _____은(는) 예방접종센터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의료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병원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예방접종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 21조 2항(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 사용을 하지 않는다.
4. 예방접종센터 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예방접종센터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될) 수 없으며, 본 예방접종센터와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예방접종센터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예방접종센터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예방접종센터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예방접종센터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개인 정보보안 책임자(정보센터내 0000)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소속기관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4 : 근무상황부 양식

근무상황부(예, OO 예방접종센터)

< 근무자명 : >

연번	날짜	성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부터	까지	시간	

소속 작성자 : (인)

직책 책임자 : (인)

'21.0월 시도 예방접종 인력운영 계획

< 000시 · 도 00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1 시 · 군 · 구 현황 및 문제점

- (의사)
-
- (간호사)
-
- (행정지원인력)
-

2 시 · 도 내 인력조정

- (의사)
-
- (간호사)
-
- (행정지원인력)
-

3 향후 조치사항

○

4 중앙정부 건의사항

○

붙임1

'21.0월 시도 인력조정 현황

1. 방문접종(시도 → 질병청)

① (1단계) 시군구별 방문접종팀 인력 현황

구분	방문대상 요양시설 개소 수*	방문접종 대상 인원(명)	방문 접종 팀 수 (팀)	시군구별 소요인력 ^(A) (명)			시군구별 최종 확보 인력 ^(B) (명)			시군구별 과부족 인력 ^(C) (C=B-A) (명)		
				의 사	간 호 인력	행정 인력	의 사	간 호 사	행정 지원	의 사	간 호 사	행정 지원
시도(합계)												
고창군												
000시군구												
000시군구												

<작성방법>

- 방문대상 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개소 수, 방문접종 대상 인원(명) : 시군구별 전체 현황을 작성
- 시군구별 소요인력, 시군구별 최종(예정을 포함) 확보 인력^(B)(명), 시군구별 과부족 인력^(C) (C=B-A) (명) : 시군구별 전체 현황을 작성

② (2단계) 시도 인력조정계획

- ☞ 1단계 시군구별 방문접종 인력현황의 과부족 인력(노란색 음영)에 대해 시도 총원조치와 중앙부처 건의 인력수를 작성 함
- ☞ 시군구 과부족인력에 대해 시도에서 의료원 등 공공병원, 시도의사회를 통한 총원인원과 조정 내역(예정을 포함)을 작성하고, 최종 중앙부처 건의 인력 수 작성

구분	시군구 과부족 인력(명)		시도 총원 조치(명)		시도 조정내역	중앙부처 건의 인력수(명)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시도(계)							
고창군							
000시군구							
000시군구							

③ (3단계) 중앙부처 건의 인력 검토자료

☞ 중앙부처 건의 인력 수에 한하여 작성 함(예시, 고창군에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경우 의사1명, 간호사 2명만 작성 함)

○ 의사

구분	1. 방문 대상 규모 (명)	2 방문대상 시설 수	3. 지자체 유형	4. 소요기간	5. 시군구 내 의료인력 현황												6. 지방의정협의체구성 여부	7. 지방의정협의체 운영실적	8. 시도판단 지원필요성	9. 시도단원선위선위(우순순으로 제출)	10. 보건소 담당자(전화번호)	
					①공보의 수	② 보건소 (보건지소 등 포함) 의사 (공보의, 비정규직, 명)				③ 공공병원 의사인력명				④ 민간 의사인력명								
						전체	투입	미투입	투입률	전체	투입	미투입	투입률	전체	투입	미투입						투입률
시도 계																-		-				
00 시군구																						
00 시군구																						
00 시군구																						

<작성안내>

- 방문대상 규모, 방문대상 시설 수 : 해당 의사 수행 방문대상 규모와 방문대상 시설 수를 기입
- 지자체 유형 : 도시, 농어촌, 농농복합 중에서 1개 선택
- 소요기간 : 일단위로 작성, '21.4.7~4.24 등 인력배치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
- 시군구 내 의료인력 현황 : 시군구 내 의료자원 수를 정확히 기입하기 바람, 기입 없는 경우 판단 곤란으로 지원 불가. 반드시 제출
- * ① 공보의 수, ②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의사 인력(공보의, 정규직, 비정규직, 명) ③ 공공병원 의사인력(명), ④ 민간 의사인력(명)
- 지방의정협의체 구성 여부 : 지방의정협의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인력 지원 없음
- 지방의정협의체 운영실적 : 지방의정협의체 운영 횟수만 기입
- 시도 판단 지원 필요성, 시도 판단 지원 우선 순위(우선 순위 순으로 제출) : 각 시도는 시도가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거와 우선 순위를 기입

② 간호사

구분	1. 방문대상 규모(명)	2. 방문대상 시설수	3. 지자체 유형	4. 소요기간	5. 시군구 내 의료인력 현황												6. 지방의정협의체구성 여부	7. 지방의정협의체 운영실적	8. 시도판단 지원 필요성	9. 시도판단원 선순위 우순위 (우선순위로 순제출)	10.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포함) 간호사 인력(정규직, 비정규직, 명)				② 공공병원 간호사 인력(명)				③ 민간 간호사 인력(명)								
					전체	투입	미투입	투입률	전체	투입	미투입	투입률	전체	투입	미투입	투입률					
시도 계															-		-				
00 시군구																					
00 시군구																					
00 시군구																					

- 작성안내 : 상기의 의사에 준하여 작성

2. 지역접종센터(시도 → 질병청)

① (1단계) 시군구별 접종센터 인력 현황

구분	센터수	접종센터 접종대상 인원(명)	시군구별 소요인력 ^(A) (명)			시군구별 최종 확보 인력 ^(B) (명)			시군구별 과부족인력 ^(C) (C=B-A) (명)		
			의사	간호사	행정 지원	의사	간호 인력	행정 인력	의사	간호 인력	행정 지원
시도(합계)											
000시군구	1										
000시군구 (예시)	1										
000시군구	1										

<작성안내>

- 접종센터 수 : 시군구에 두 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으로 000시군구(예시)와 같이 작성
- 접종센터 접종대상 인원(명) : 해당 월 단위 접종센터 대상인원을 작성
- 시군구별 소요인력^(A)(명) : 접종센터 소요 전체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인력 소요
- 시군구별 최종 확보 인력^(B)(명) : 공보의, 공공병원, 민간 채용, 개원 병의원 순환근무 등을 통한 시군구별 최종 확보 인력을 작성
- 시군구별 과부족인력^(C)(C=B-A) (명) : 시군구별 과부족 인력을 작성

② (2단계) 시도 인력조정계획

- ☞ 1단계 시군구별 접종센터 인력현황의 과부족 인력(노란색 음영)에 대해 시도 총원조치와 중앙부처 건의 인력수를 작성 함
- ☞ 시군구 과부족인력에 대해 시도에서 의료원 등 공공병원, 시도의를사회를 통한 총원인원과 조정 내역(예정을 포함)을 작성하고, 최종 중앙부처 건의 인력 수 작성

구분	시군구 과부족인력(명)		시도 총원 조치(명)		시도 조정내역	중앙부처 건의 인력수(명)	
	의사	간호인력	의사	간호인력		의사	간호인력
시도(계)							
고창군 보건소							
000보건소							
000보건소							

③ (3단계) 중앙부처 건의 인력 검토자료

- ☞ 중앙부처 건의 인력 수에 한하여 작성 함(예시, 고창군보건소에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경우 의사1명, 간호사 2명만 작성 함)

○ 의사

구분	1. 센터 접종대상 규모 (명)	2. 의사 인력 현황			3. 지자체 유형	4. 소요기간	5. 시군구 내 의료인력 현황																6. 지방 의협의 체 구성 여부	7. 지방 의협의 체 운영 실적	8. 시도 판단 지원 필요 성	9. 시도 판단 지원 우선 순위 순위로 제출)	10. 보건 소 담당 자 (전화 번호)
		소요 의사 수	확보 의사 수	필요 의사 수			① 공보의 수	② 보건소 (보건지소 등 포함) 의사 인력(정 규직, 비정규직, 명)				③ 공공병원 의사 인력(명)				④ 민간 의사인 력(명)											
								전체	투입	미 투입	투입 률	전체	투입	미 투입	투입 률	전체	투입	미 투입	투입 률								
시도 계																		-		-							
00 시군 구																											
00 시군 구																											
00 시군 구																											

<작성안내>

- 센터 접종대상 규모(명) : 해당 월에서 접종센터 접종대상 인원 수를 작성
- 의사 인력 현황 : 소요 의사 수, 확보 의사 수, 필요 의사 수를 각 각 작성
- 지자체 유형 :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중에서 1개 선택
- 소요기간 : 일단위로 작성, '21.4.7~4.24 등 인력배치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
- 시군구 내 의료인력 현황 : 지역내 의료자원 수를 정확히 기입하기 바라며, 기입 없는 경우 판단 곤란으로 지원 불가.
반드시 제출
- * ① 공보의 수, ②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의사 인력(공보의, 정규직, 계약직등, 명) ③ 공공병원 의사인력(명), ④ 민간 의사인력(명)
- 지방의정협의체 구성 여부 : 지방의정협의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인력 지원 없음
- 지방의정협의체 운영실적 : 운영 횟수 기입
- 시도 판단 지원 필요성, 시도 판단 지원 우선 순위(우선 순위 순으로 제출) : 각 시도는 시도가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거와 우선 순위를 기입

○ 간호사

구 분	1. 센터 접종 대상 규모 (명)	2. 간호사 인력 현황			3. 지 자 체 유 형	4. 소 요 기 간	5. 시군구 내 의료인력 현황																6. 지 방 의 협 의 체 구 성 여부	7. 지 방 의 협 의 체 운 영 실 적	8. 시 도 판 단 지 원 필 요 성	9. 시 도 판 단 지 원 선 순 위 (우 선 순 위 순 으 로 제 출)	10. 보 건 소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소 요 간 호 사 수	확 보 간 호 사 수	필 요 간 호 사 수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등 포함) 간호사 인력(정규직, 비정규직, 명)				② 공공병원 간호사 인력(명)				③ 민간 간호사 인력(명)												
							전 체	투 입	미 투 입	투 입 률	전 체	투 입	미 투 입	투 입 률	전 체	투 입	미 투 입	투 입 률									
시도 계																	-		-								
00 시군구																											
00 시군구																											
00 시군구																											

- 작성안내 : 상기의 의사에 준하여 작성

3. 시도(시군구 포함) 집중인력 pool 현황(시도 → 질병청)

☞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인력의 150%이상 풀을 작성하시기 바람

구분	계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필요 인력 (A)	인력 pool (B=C+ D)	충족 율 (B/A)	공공 (C)	민간 (D)	필요 인력 (A)	인력 pool (B=C +D)	충족 율 (B/A)	공공 (C)	민간 (D)	필요 인력 (A)	인력 pool (B=C+ D)	충족 율 (B/A)	공공 (C)	민간 (D)	필요 인력 (A)	인력 pool (B=C +D)	충족 율 (B/A)	공공 (C)	민간 (D)
00시도 (합계)																				
00시군구																				
00시군구																				
00시군구																				
00시군구																				
00시군구																				
00시군구																				
00시군구																				
00시군구																				

코로나19 파견의료·지원인력 열차 무료이용 안내

- (적용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지원인력
 - 민간의료·지원인력 및 공중보건의, 군 의료·지원인력, 공공기관 의료·지원인력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열차로 이동하는 경우 적용
 - ※ 파견의료인력 본인 명의 승차권에 한함
- (대상열차)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새마을호·무궁화호”와 (주)SR에서 운영하는 SRT
- (적용방법) 해당 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확인서(철도무임용)*’와 ‘의료인력면허증·자격증’을 역 창구에 제출하고 이용
 - * 별첨 서식(별첨11-1) 참조
 - (승차권 구매 전) 역 창구에서 무임 발매<코로나19 의료봉사자 확인서(철도무임용)와 의료인력면허증·자격증 제시>
 - (승차권 구매 후) 1년 이내 역 창구에 방문하여 운임 사후 환불<승차권 및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확인서(철도무임용), 의료인력면허증·자격증 제시>
- (무임 적용시기)
 - 승차권 구매일 기준(열차 이용일 아님) 2020.3.5.(목) ~
- (무임 적용 종료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확인서(철도 무임용)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연락처	010 - () - ()			
의료직종	봉사분야				
의료봉사 기관명	예) 00보건소 대표전화 ☎ () - () - ()				
의료기관 주소	예) 00시 00구 00동				
의료봉사 목적의 철도 이용구간	① 이용구간 ()역 ↔ ()역 ② 이용구간 ()역 ↔ ()역				
봉사 기간	(시작일) 2020 년 월 일 ~ (종료일) 2020 년 월 일 ※ 종료일은 필히 날짜를 지정하여 작성하고,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용도	한국철도 제출용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위 사람은 코로나19 의료봉사 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의료봉사자

(서명)

의료봉사 기관명

예) 00보건소

(직인)

이용안내

- 2020년 10월 5일부터 본 확인서 양식(직인 포함) 이외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다른 양식의 의료봉사 확인서는 철도무임 승차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본 확인서에 기재한 **2개의 철도 이용구간(왕복)**을 봉사기간 내에 무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봉사 목적으로 무임이용을 할 경우 **본 확인서 사본을 역 창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의료봉사자의 철도 무임승차권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철도 무임 승차권을 발행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코로나19 의료봉사자의 한국철도 무임수송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직종 및 봉사분야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직종, 봉사분야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신청서 상 표기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직종, 봉사분야 처리 및 보유 후 1년 이내 폐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확인서(SRT운임감면용)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연락처	010 - () - ()
의료직종		봉사분야	
의료봉사 기관명	예) 00보건소 대표전화 ☎ () - () - ()		
의료기관 주소	예) 00시 00구 00동		
의료봉사 목적의 철도 이용구간	① 이용구간 ()역 ↔ ()역 ② 이용구간 ()역 ↔ ()역		
봉사 기간	(시작일) 2020 년 월 일 ~ (종료일) 2020 년 월 일 ※ 종료일은 필히 날짜를 지정하여 작성하고,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용도	SR 제출용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위 사람은 코로나19 의료봉사 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의료봉사자

(서명)

의료봉사 기관명

예) 00보건소

(직인)

이용안내

- 2020년 10월 5일부터 본 확인서 양식(직인 포함) 이외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다른 양식의 의료봉사 확인서는 SRT 무임승차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본 확인서에 기재한 **2개의 철도 이용구간(왕복)**을 **봉사기간 내에** 무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봉사 목적으로 무임이용을 할 경우 **본 확인서 사본을 역 창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의료봉사자의 SRT 무임승차권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철도 무임 승차권을 발행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코로나19 의료봉사자의 한국철도 무임수송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직종 및 봉사분야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직종, 봉사분야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신청서 상 표기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직종, 봉사분야 처리 및 보유 후 1년 이내 폐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이 자료는 접종센터나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초기 처치를 위한 기본 안내서입니다.
-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나필락시스 개요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고, 발병은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중증도와 임상특징으로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움⁵⁾
-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관찰해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물,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함⁶⁾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나, 최근 미국 발표자료에 따르면 mRNA 백신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2.5~4.7명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고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 발생함⁷⁾

증상 및 징후⁸⁾

- 아나필락시스는 다음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음
 - ✓ 증상의 갑작스런 발병 및 급속한 진행
 - ✓ 기도 와/또는 호흡 과/또는 순환기 문제
 - ✓ 피부 또는 점막 변화 (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

5) The Green Book. Vaccine safety and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sation chapter 8. Public Health England. 2013

6)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7) Reports of Anaphylaxis After Receipt of mRNA COVID-19 Vaccines in the US-December 14, 2020-January 18, 2021. JAMA. Published online February 12, 2021

8) RCUK. Anaphylaxis guideline, 2021

기도(Airway) 문제	호흡(Breathing) 문제	순환기(Circulation) 문제
- 기도 부종 (목과 혀가 부어 호흡 및 삼키기 어려움, 기도가 막히는 느낌) - 쉼 목소리 - 협착음 (기도 폐쇄로 인한 고음의 흡기 소음)	- 숨가쁨 (호흡수 증가) - 쌉쌉거림 (기관지 경련) 과/또는 지속적인 기침 - 인후 부종이나 조임	- 쇼크의 징후 : 창백하고 끈적함 - 두드러진 빈맥 - 부정맥 - 저혈압 : 실신(현기증), 허탈 - 의식수준 감소, 의식소실 - 심장마비

○ 고려사항

- 피부 또는 점막 변화만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징후가 아니며, 피부나 점막 변화 없이 기관지 경련 또는 저혈압만 나타날 수 있음
- 국소적인 이상반응이더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 면밀히 관찰 필요
- 특히,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인지장애가 있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신경질환자 등 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

감별진단⁹⁾

○ 접종자의 불안감과 과호흡으로 인한 졸도나 기절과 아나필락시스는 구분되어야 함

구분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	아나필락시스
발병	예방접종 전, 중 또는 몇 분 이내	일반적으로 15분 이내 발생 (15분 이후에도 발생 가능)
양상	일반적으로 창백하며 차고 축축한 피부	피부 가려움, 눈과 얼굴 부기, 전신 발진
	정상 호흡	거친 호흡, 쌉쌉거림, 천명음, 지속적인 기침
	서맥, 저혈압은 일시적이며 누운 자세에서 회복	빈맥, 저혈압
	일시적인 의식상실, 어지러움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좋아짐)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의식상실, 죽을 것 같은 느낌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워도 좋아지지 않음)

9) RCUK. Anaphylaxis guideline, 2021

환자 자세¹⁰⁾

- ✓ 환자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거나, 걷거나 혹은 앉을 시 수 분 이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 환자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걷거나 일어서서는 안 됨

-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힐 것
 - 심장으로 혈액 환류량이 개선되며, 환자를 똑바로 일으킬 시 심장을 통해 순환하는 혈류량의 감소 및 저혈압을 유발함
- 구토 시, 환자를 옆으로 눕힘
- 호흡 개선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주로 앉기를 원함
 - 이때 환자는 의자에 앉지 말고 양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편 상태로 앉아야 하며, 앉을 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지속 관찰해야 함
 - 의식 상태나 혈압 하락 시 즉시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혀야 함
 - 안정화되기 전까지 환자를 일어서거나 걷게 하면 안 되며, 안정화되기까지 보통 최소 1시간 (에피네프린 1회 투여 이후)에서 4시간 (에피네프린 2회 이상 투여 시)이 소요
- 휠체어나 들것 혹은 스트레처카(Stretcher car)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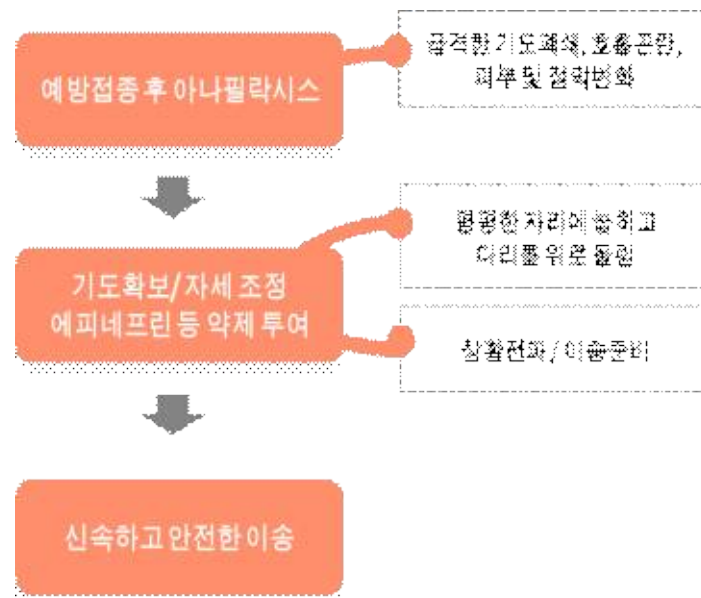
아나필락시스 관리

- ✓ 예방접종을 시행 하는 각 장소에서 즉시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의 사용 만료일 및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상황평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예방접종 담당의료인은 접종 후 15~30분간 관찰 시간 중에 백신 접종부위에 부종, 발적 등이 발생하면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찰

10) ASCIA Guideliens. Acute Management of Anaphylaxis, 2020

- **도움요청** :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관련 상황을 집종기관 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
- **응급처치** :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투여, 수액요법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
 -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에피네프린 보관방법은 사용설명서 반드시 참고)
 -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매 5~15분 간격으로 투여가 가능
 - ※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는 아나필락시스의 1차 약제가 아님
- **응급의료기관 이송** : 응급처치는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로 지정된 응급 의료센터로 이송



[그림 1] 아나필락시스 대응 흐름도

사전 준비 사항

- 이송체계 마련 : 응급환자 발생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번호, 위치, 이송거리 등을 확인
- 사전준비약품 및 장비

에피네프린 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
H1 항히스타민(예: diphenhydramine)	산소(Oxygen)
혈압계	기관지 확장제(예: albuterol)
청진기	H2 항히스타민(예: famotidine, cimetidine)
연속맥박측정기(timing device to assess pulse)	정맥수액(IV fluid)
	기도삽관 키트
	심폐소생술 마스크

※ 출처: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 담당자별 역할 마련 : 접종 후 관찰 구역에서 접종 후 대상자를 모니터링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행정요원은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응급구조사는 즉시 이송

[표 2] 담당자별 역할 (예시)

연령	역할
예진 의사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간호사	• 약제 준비 및 투여 • 응급간호관리 • 이송 시 동행(필요시)
행정요원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 (대기중) 구급차 준비요청 • 기관내 상황전파
응급구조사(구급차)	• 환자 이송

아나필락시스 치료

- 환자를 위를 바라보도록 평평한 곳에 눕히고 발을 높게 해줌
- 에피네프린 1:1000, 0.01 ml/kg(maximum 0.5ml) 또는 필요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성인용(0.3mg)을 즉각 근육 주사
 - :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하며, 2~3회 투여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맥주사(0.05~0.1mg) 고려(정맥주사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만 사용)
 - :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1회용이며, 유효기간과 약물 용액이 투명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 공급
 - : 쉼 목소리, 혀 부종, 협착음, 인두부종 등이 있을 때에는 기도 폐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 내 삽관 고려
- 활력 징후(혈압, 심박동, 호흡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에피네프린 주사 이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80 mmHg 이하이면 수액제제를 정맥 주입
- 에피네프린 주사 이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80 mmHg 이하이거나 쇼크가 지속되면 혈관 수축제(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페닐에프린) 등을 추가로 투여
- 초기 소생술 후 혈액학적으로 안정되면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투여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증상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

구분	증상 및 처치
진단	가장 흔한 징후와 증상은 피부증상(두드러기, 혈관 부종, 홍조, 가려움증)
	위험징후 : 증상의 급속한 진행, 호흡곤란 (협착음, 천명,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청색증), 구토, 복통, 저혈압, 부정맥, 가슴 통증, 실신
응급관리	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에피네프린 투여의 절대 금기는 없음

	기도 유지 : 혈관 부종에서 임박한 기도방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기도 삽관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 필요에 따라 5~15분 간격을 반복할 수 있음
	자세 조정 : 환자를 눕히고 하지를 올림
	산소 : 필요에 따라 안면 마스크를 통해 8~10L/min을 제공 또는 최대 100% 산소제공
	생리식염수 : 1~2L를 급속히 정맥주사하고 저혈압을 치료
보조치료	H1 항히스타민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완화)
	모니터링 : 지속적인 비침습적 혈액 모니터링 및 맥박 산소 측정 모니터링을 수행

- 환자 상담 :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경험하는 환자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처치 및 추가 상담이 필요

발생 보고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 및 아나필락시스 발생 보고

☞ <서식 19 >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 증상과 징후, 발생 시간(분), 처지내용, 활력징후, 병원방문 여부 등(기초조사서 1~5번 문항) 작성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면 환자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반응을 확인.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주변에 심장정지가 발생했다고 알리고(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 즉시 가슴압박 등 심폐소생술 시작
 - 의료인의 경우 맥박과 호흡을 10초 이내로 동시에 확인해야 하며, 심장정지가 의심 되면 맥박을 명확히 확인 못한 경우에도 가슴압박을 실시하도록 권고
 - 맥박 확인 위치는 성인에서 목동맥을 만져서 확인
- 순환 : 가슴압박은 가슴 정중앙(흉골의 아래쪽 1/2지점)을 압박, 성인 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

- 기도유지 : 머리기울임 - 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유지
- 인공호흡 : 인공호흡량은 1초에 걸쳐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500~600ml, 6~7ml/kg)로 시행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 가슴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30:2비율)
 - 전문기도가 삽입된 경우에는 가슴압박 중단 없이 10초에 1회의 간격으로 인공호흡을 시행



[그림 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그림 3]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

* 가슴압박 : 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유지한다.

* 출처 : 질병관리청, 한국심폐소생협회.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2021.

- 약물
 - 에피네프린은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투여
 - 심폐소생술 중에는 1.0mg의 에피네프린을 IV로 투여
 - 1-2 L의 균형 정질용액(balanced crystalloid)이나 생리식염수 투여를 고려
- 산소투여 : 심폐소생술 중에는 가능한 100% 산소 투여
- 자동제세동기 사용
 - 심폐소생술 중 자동제세동기가 사용 가능하면 즉시 사용
 - 자동제세동기는 전원을 켜 후 자동제세동기로부터의 음성 신호에 따라 사용(전극 부착-심전도 분석-제세동 순서로 진행)

구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8.)	영국(12.30.)
접종시작	미국(12.14.), 영국(12.8.)	미국(12.21.이후)	영국('21.1.4.)
임상시험 참여자	16세 이상(43,448명)	18세 이상(30,351명)	18세 이상(23,745명)
이상 반응	- 접종부위 통증(84.1%) - 피로감(62.9%) - 두통(55.1%) - 근육통(38.3%) - 오한(31.9%) - 관절통(23.6%) - 발열(14.2%) - 접종부위 부기(10.5%) - 접종부위 발적(9.5%) - 메스꺼움(1.1%) - 권태감(0.5%) - 림프선염(0.3%)	- 접종부위 통증(92.0%) - 피로감(70.0%) - 두통(64.7%) - 근육통(61.5%) - 관절통(46.4%) - 오한(45.4%) - 메스꺼움/구토(23.0%) -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 발열(15.5%) - 접종부위 부기(14.7%) - 접종부위 홍반(10.0%)	- 접종부위 압통(>60%) -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50%) - 근육통, 권태감(>40%) - 발열, 오한(>30%) - 관절통, 메스꺼움(>20%)

* 자료원: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OF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OF THE MODERNA COVID-19 VACCINE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REG 174 Information For UK Healthcare Professionals



제 품 명: 코미나티주

- ◇ 희석 시 흰색 내지 미백색의 현탁액이 되는 냉동 상태의 의약품이 충전된 무색 투명한 바이알입니다.
- ◇ 특수 제작된 수송용기(thermal shpper)로 배송되며 초저온 냉동고에 냉동(-90°C ~ -60°C) 보관합니다.
- * (포장단위) 0.45 mL x 195 바이알/ 상자

① 금기 사항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첫 번째 예방접종 또는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② 구성 물질 참조)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포함)이 있었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금기 대상입니다.

②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¹¹⁾

- 고순도 BNT162b2 mRNA 외에도 코로나19 mRNA 백신 BNT162b2는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ALC-0315 = (4-hydroxybutyl) azanediyl)bis (hexane-6,1-diyl) bis (2-hexyldecanoate)
 - ALC-0159 = 2-[(polyethylene glycol)-2000]-N,N-ditetradecylacetamide
 - 1,2-Distearoyl-sn-glycero-3-phosphocholine
 - 콜레스테롤
 -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
 - 인산이수소칼륨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 disodium hydrogen phosphate dihydrate
 - 자당 (sucrose)
 - 주사액 (water for injections)
- 화이자 코로나19 mRNA 백신은 방부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백신성분에 동물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Covid19 programme guidance for HCW. Public Health England, ver 3.1, 11 Jan 2021

③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주의 사항

- 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감시 결과, 영국 NHRA는 음식, 약물, 백신, 곤충 쏘임 등에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없는 경우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였으며,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 동안 이상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영국 임상알레르기면역학회(The British Society for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는 여러 종류의 약품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화이자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첫 번째 예방접종에 국소 두드러기(가려움) 피부 반응(전신적 증상 없음)이 있는 경우 30분 이상 관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의약품과 가정용품 및 화장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으로, PEG에 의한 알레르기는 극히 드물지만 백신 접종을 금합니다.
-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2021.1.27. 3차회의결과).
- *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PEG는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 있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④ 제품 용량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개 트레이(tray)에는 195개의 바이알이 들어있습니다.
- 1바이알은 다회 투여 접종용(6회*/vial)입니다.
 - * 코박스-화이자 특례수입의 포장단위에 따름
- 바이알은 고무 마개, 알루미늄 쉴 및 플립-오프 플라스틱 캡이 있습니다.
- 바이알 마개에는 라텍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바이알에는 0.45mL의 의약품이 들어 있으며 1.8mL의 0.9% 생리식염주사용액(Sodium Chloride 0.9%, NaCl 0.9%)으로 희석하여 혼합한 백신은 1회 접종당 0.3mL(30mcg)의 용량으로 접종합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승인사항에 따라 1바이알 당 6회 다회 사용합니다.
- 다만, 1회 예방접종시 0.3mL 가 접종대상자에게 투여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일한 바이알에서 0.3mL 용량을 추출 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여액은 폐기합니다. 서로 다른 바이알의 잔량을 합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주사용 희석제 (0.9% 생리식염주사액)

- 백신 희석을 위해 최소 2mL 의 0.9% 생리식염수주사액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0.9% 생리식염수주사액의 최소 단위는 20mL 이며, 지자체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배포합니다.
- 각 생리식염주사액은 용량에 상관없이 1 회용으로, 희석에 필요한 1.8mL를 추출 후 남은 생리식염수주사액은 폐기합니다.
- 0.9% 생리식염주사제는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환경에서 다른 제품(바늘 및 주사기)과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보관 및 배송

가. 배송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ultra low temperature) 냉동고를 갖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냉동 배송되며, 초저온에서 백신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보관 취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상세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다음은 정보용으로만 제공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은 온도유지 수송용기(thermal shipper)로 배송됩니다. 수송용기 자체는 15~25℃에서 보관 가능, 수송용기 이중 적재는 금지합니다.
- 수송용기는 냉매포장지(Dry Ice Pod), 백신보관상자(Vial Trays), 백신보관상자 유지를 위한 내부상자(Box that holds the Vial Trays) 및 폼 리드(Foam Lid)로 구성됩니다.



빈운송박스 무게: 8.5kg

드라이아이스용량: 20-25kg

드라이아이스 포함 중량: 31.5kg

바이알트레이 1개 포함 중량 : 32.6kg

바이알트레이 5개 포함 중량 : 36.5kg



Softbox



- A: 냉매(드라이아이스) 포장
- B: 백신보관상자(vial tray)
- C: 백신보관상자를 담는 내부상자
(Box that holds the vial trays)
- D: 스티로폼이 부착된 상자윗면(폼 리드)
- E: 보냉 운송 박스

Aerobox



다. 수송용기 개봉

- 수송용기는 적절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반드시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방수·절연 장갑)를 착용하고 개봉합니다
- 냉매(드라이아이스)는 수송용기 사용이 완료된 후 적절한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서 승화를 통해 제거합니다.
- 드라이아이스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며, 관리자가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승화시킵니다.

①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방수·절연 장갑)를 착용합니다.	② 수송용기 내부에 부착된 a 또는 b 형태의 온도 모니터링기기를 5 초 동안 눌러 끕니다.
	a.  b. 
③ 수송용기를 개봉하고 뚜껑을 개봉합니다.	④ 드라이아이스 포장을 꺼냅니다.
	
⑤ 내부 상자(Box that holds the vial trays, 가운데 흰색상자)의 손잡이를 잡고 꺼냅니다.	⑥ 내부상자를 열고 백신보관상자를 꺼냅니다. 백신보관상자는 1 개 또는 5 개가 포함되었습니다(백신보관상자 1 개=195 바이알)
	

* 자료원: 백신보관수송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Shipping and handling guidelines. 3 Dec, 2020

- 백신은 원래 포장에 똑바로 세워서 장기간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백신 투여를 위한 해동 전까지는 백신보관상자에서 바이알을 꺼내거나 개봉하지 마십시오.
- 일단 백신을 해동하면 재 냉동 할 수 없습니다.

라. 보관

① 수송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 수송용기를 초저온 냉동고 대신 사용하는 경우, 최초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수송용기를 열고 점검 및 냉매를 보충하여 $-90^{\circ}\text{C}\sim-60^{\circ}\text{C}$ 를 유지(온도 모니터링 필요)해야 하며, 5일마다 보충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백신보관상자(vial tray)가 개봉되거나 일부 바이알만 보관된 백신보관상자가 초저온을 벗어난 경우(-60°C 이상)에는 실온에서 최대 3분만 유지 가능합니다.
※ 미개봉된 195개 바이알이 보관된 백신보관상자(Vial Trays)는 실온($<25^{\circ}\text{C}$)에서 최대 5분 유지 가능
- 수송용기는 1일 2회 이하, 1회 3분 이하 개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백신 해동 전까지는 백신보관상자(vial tray)에서 바이알을 꺼내거나 바이알을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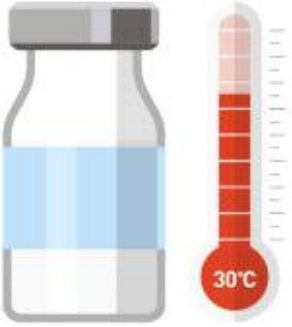
②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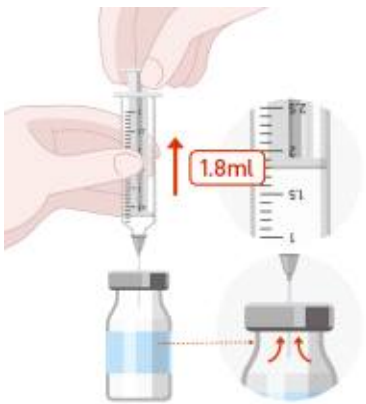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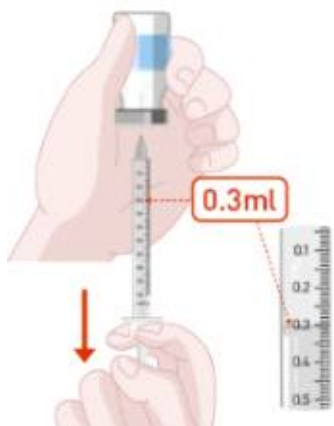
- 해동 또는 개봉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백신은 $-90^{\circ}\text{C}\sim-60^{\circ}\text{C}$ 온도에서 최대 6개월 간 보관 가능합니다.
- 백신보관상자(vial tray)가 개봉되거나 일부 바이알만 보관된 백신보관상자가 초저온을 벗어난 경우(-60°C 이상)에는 실온에서 최대 3분만 유지 가능합니다.
※ 미개봉된 195개 바이알이 보관된 백신보관상자(Vial Trays)는 실온($<25^{\circ}\text{C}$)에서 최대 5분 유지 가능
- 백신보관상자(Vial Trays)를 실온에 노출하였다가 다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한 경우, 다시 꺼내기 전까지 최소 2시간 냉동이 필요합니다.

마. 수송용기의 회수

- 30일 이내로 온도측정기기, 빈 냉매(드라이아이스) 포장지, 폼 리드, 백신보관상자 유지를 위한 내부상자 등을 포함한 수송용기에 접착테이프를 붙여 반송합니다.
- 백신보관상자(Vial Trays)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일상생활 폐기물의 수거 또는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7 화이자 백신 희석 방법

① 희석 전 해동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사용 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해동 함 a 냉장고에서 해동 (2℃~8℃) 바이알 보관상자(tray)는 해동하는데 최대 3 시간 소요, 해동된 바이알은 냉장고에서 최대 5일(120시간) 동안 보관 가능함 즉시 사용 시, 실온(최대 30℃)에서 30분 동안 해동 - 상기 방법으로 해동하며 바이알을 희석 전에 실온(최대 30℃)에 이르게 하고, 해동 후 2시간 이내에 희석함
 부드럽게 뒤집어 주는 것을 10회 실시, 단 흔들지 말 것!	- 희석하기 전에 백신 바이알을 부드럽게 10회 뒤집음 흔들지 말 것 -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음 - 희석하기 전에 바이알의 액체 검사: 액체는 흰색에서 미백색의 현탁액으로 흰색에서 미백색의 불투명한 무정형 입자를 포함 할 수 있음 - 변색 또는 혼탁한 경우 사용 금지
② 희석 	- 알코올 솜으로 0.9%생리식염주사액의 마개 또는 주사기 천공 예정 부분 소독 - 무균 기법을 사용하여 1.8mL의 0.9% 생리식염주사액을 주사기로 추출 - 추출용 주사바늘 굵기는 21G(제공한 주사기) 또는 더 가는 바늘을 사용 - 알코올솜으로 백신 바이알 마개소독 0.9% 생리식염주사액 1.8mL를 백신 바이알에 주입

	◦ 비어있는 혼합용 주사기로 바이알 내부의 공기 1.8mL를 제거하여 바이알 내부의 압력을 균등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뒤집어 주는 것을 10회 실시, 단 흔들지 말 것!	◦ 희석한 백신이 들어있는 바이알을 10회 부드럽게 뒤집어 혼합 ◦ 흔들지 말것 ◦ 바이알의 희석한 백신백신 검사: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변색 또는 미립자가 있는 경우 사용 금지)
 유효기간(사용만기일시) '21. 2. 21. 15:00	◦ 희석한 백신 바이알에 유효기간 기록 (사용만기일시) ◦ 2°C~30°C에서 보관 ◦ 희석 후 6시간이 지난 희석백신은 개봉 여부와 무관하게 폐기
③ 예방접종	
	◦ 무균 기법을 사용하여 일회용 알코올솜으로 바이알 마개를 세척하고 최소 잔여 주사기 (low dead space syringe)을 사용하여 화이자 코로나19 혼합백신 0.3mL 추출 ◦ 즉시 접종 ◦ 바이알에 남아있는 백신의 양이 0.3mL가 되지 않는 경우 잔량 폐기 ★ 여러 바이알의 잔량을 합쳐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자료원: pfizer, Jan 2021 참조

제품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

- ◇ 무색 내지 옅은 갈색의,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이 충전된 바이알입니다.
- ◇ 2-8°C에서 차광하여 보관하며 얼리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 (포장단위) 5 mL x 10 바이알/ 상자
- ◇ 1 회 투여량은 0.5mL 이며, 8주~12주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합니다

1 금기 사항

-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 예방접종 또는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 (2 구성 물질 참조)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포함)이 있었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금기 대상입니다.

2 백신 구성 물질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chimpanzee adenovirus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 Histidine
 - L-Histidine hydrochloride monohydrate
 -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 Polysorbate 80
 - Ethanol
 - Sucrose
 - Sodium chloride
 - Disodium edetate dihydrate
 - Water for injections
- 백신은 보존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동물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제품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무색 내지 옅은 갈색,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는 액체의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입니다.
- 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공급

- 접종대상자 수량에 따라 백신과 주사기를 배정하며, 유통업체가 백신과 주사기를 직접 예방접종기관으로 배송합니다.
- 예방접종용 주사기는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 멸균 주사기 또는 멸균 주사기를 공급합니다.
-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23G 주사바늘의 1mL, 바늘 길이는 1inch 내외, 잔여량 0.035mL 이하인 1회용 멸균 주사기입니다(주사침 포함).
- 멸균 주사기는 23G 주사바늘의 1mL, 바늘 길이는 1inch 내외, 잔여량 0.07mL 이하인 1회용 멸균 주사기로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에 부합합니다(주사침 포함).
- 주사기 보관·취급 중 파손,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파손된 경우 기관 자체 물량으로 사용합니다.
-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희석액을 사용하지 않음

⑤ 저장

- 기관의 백신관리담당자는 백신 수령 즉시 냉장고에 옮겨 2℃~8℃ 사이에 보관합니다.
- 개봉하지 않은 백신은 냉장 보관(2℃~8℃) 시 최대 6개월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 바이알은 똑바로 세워서 보관하며,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포장된 박스 상태로 보관하고 열리지 않습니다.

6 접종준비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에서 1회 접종량을 추출하기 전에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 각 바이알에는 첫 번째 천공한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개봉한(첫 번째 접종량 추출 후) 바이알은 실온(30℃ 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며, 당일 폐기합니다.
- 백신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무색 내지 옅은 갈색,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변색 또는 혼탁한 경우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 바이알을 흔들지 마십시오
- 바이알 마개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완전히 자연 건조합니다.
- 배포한 1mL 주사기(최소 잔여형 주사기 또는 멸균 주사기 23G)를 이용하여 1회 용량(0.5mL)을 추출합니다.
- 비만증 환자는 별도의 38mm 길이 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사용량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알에서 바늘을 제거하기 전에 기포를 제거합니다.
- 마지막(10회차) 용량을 취한 후 바이알에 액체가 남아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0.5mL이 되지 않는 잔여량은 폐기해야하며,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량을 모아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품목허가사항(2021.2.10.)

- 최소 8주~12주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릅니다.

☞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 중 ④ 접종기관(의료기관) 관리사항

□ 백신 보관 사전준비

- 접종기관의 보관소는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사전 구비사항 >

- ▶ 백신 보관·취급·접종을 관리하는 담당자(백신 관리 담당자) 또는 부재 시 업무 대행자 지정 및 역할 분담
- ▶ 백신 보관 장비 설치 및 관리·수리 업체 연락처
- ▶ 백신의 보관과 취급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접종기관(접종센터) 내부 및 지역 보건당국의 비상연락망 등
- ▶ 백신 생산 회사 혹은 백신 공급 업체 연락처

-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 백신, 희석액의 보관 온도,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초저온냉동고)에서 백신의 위치
- 백신 이송과 백신을 회사나 백신 공급 업체에서 받을 때 절차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 백신 보관, 취급, 재고관리, 접종 등 백신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
 - 접종기관(접종센터)당 1명 이상 지정, 부재 시 업무 대행자를 지정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가능토록 사전 업무 숙지 필요
- 구체적인 역할
 - 백신 주문, 백신 입고 시 검수 및 관리
 - 백신 보관 장비의 내부 정리, 온도 설정

- 백신 보관 장비의 1일 최대/최소 온도 확인 및 기록, 보관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추세 관리를 위하여 최소 주 1회 온도 기록지 검토 및 분석 실시
- 백신 보관 장비 문이 꼭 닫혀 있는지 확인(패킹 확인)
- 유효기한이 도래한 백신을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주 1회 재고 확인
-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보관 장비에서 제거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유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비상대응
- 백신 운반 시 적정 온도 유지 및 백신 파손 방지 등 관리·감독
- 백신 보관 장비의 성능 적정성확인 등 유지 관리

□ 백신·희석액 입고 및 재고 관리

- 백신 및 희석액 입고는 백신 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인계받은 즉시 백신을 신속하게 백신 보관온도별 보관설비에 보관하고, 해당 백신의 입고일자, 수량 등을 작성·보관
- 백신 및 희석액 입고 시 확인할 사항
 - 도매업자(배송자) 담당자와 백신의 보관상태수량, 온도기록, 인계 일시 등 기록 수령 및 일치여부 확인
 - 백신 상표 훼손, 주사기 균열 등 물리적 손상 여부
 - 백신 수송용기 등에 온도기록계, 온도 감지 표시라벨이 있는 경우 온도 및 라벨 변화여부 확인
- 백신 및 희석액 재고현황은 매일 확인하고, 예상 수요, 보관 용량, 현재 보유량을 고려하여 사전 주문 및 공급요청
 - ※ 백신에 사용되는 주사기에 대한 재고 현황도 함께 관리

□ 백신 보관 및 취급 관리

- 백신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또는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제품과 제품 사이에도 충분한 공간을 두어 공기 순환이 되도록 보관
- 백신 관리 담당자는 백신 보관 및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 백신 및 희석액 입고일자, 수량, 인계인수자 이름 및 시간, 백신 및 희석액 상태(도착 당시 용기 온도, 백신 손상 여부 등), 백신 회사 및 백신명,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유효기간
- 일자별 백신 사용·폐기·잔량 현황 및 폐기사유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초저온냉동고) 오작동, 정전 등 사고발생 시 백신 이송을 위한 아이스박스, 냉매, 완충제(버블랩, 스티로폼 알갱이), 온도계를 준비하고 가능할 경우 여분의 냉장고 준비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초저온냉동고) 관리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초저온냉동고)는 신중하게 선정, 올바르게 설치, 주기적 유지 관리 및 보수 실시 필요
 - 보관장비 구입일자, 유지관리·수리·정비 현황, 연락처 보관
- 백신 보관 장비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
 -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보관장비가 없는 경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1도어 냉장고(숙박업소용 냉장고처럼 냉장·냉동고가 연결되어 있으며 문이 하나인 제품)는 백신 보관에 적합하지 않음
- 초저온냉동고는 $-75\pm 5^{\circ}\text{C}$ 범위로 조절이 가능하며, -90°C 까지 급속 냉각하는 초절전형 냉동고로 듀얼 냉동 시스템으로 고장 시에도 -75°C 를 유지하는 제품이어야 함
- 백신 보관장비는 가급적 자동온도기록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내부 공기 순환 등으로 저장 위치별 일정 온도유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준 온도 이탈 시 알람기능과 문 잠금 경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백신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백신 보관 온도 유지, 백신 보관용도 외 사용 금지
 -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냉장고 하단에는 물병을 넣어 온도를 안정화 시키고 냉동고에는 아이스팩을 보관하여 정전 등으로 백신의 보관 위치를 변경할 때 냉매로 사용

□ 백신 보관 장비 보관소 요건

- 백신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수시로 보관소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환경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쥐, 해충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관리

- 보관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관소의 문이 개방상태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 백신 보관관리에 적합한 채광 또는 조명이어야 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정전에 대비하여 보관소 비상전원(UPS와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 백신 보관 장비의 보관 온도 관리

-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냉장온도(2~8℃)에서 mRNA 벡터 백신의 경우 냉동(-20℃)/초저온(-60~-90℃) 상태의 보관 필요
- 백신 보관 장비의 유지관리 기록을 확인하고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 미흡 등으로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백신 보관 장비에 가급적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 사용 필요
 - 일정한 간격(30분 간격 이하)마다 온도 자동 기록, 최고·최저 온도, 설정한 온도 범위 이탈 시간 정보 및 자동경보체계 기능 포함
 -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없는 경우, 디지털 온도기록계 사용 가능
 -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 디지털 온도기록계가 있는 백신 보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일 2회 이상 수동 온도 모니터링 실시
 - * 일반 온도계는 매일 최소 2회 이상 온도 점검이 필요하나 권장하지 않음
- 자동온도 기록지, 디지털 온도기록계의 온도 기록 등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 백신 보관 전 보관 장비 내부의 여러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지점을 파악 후 백신을 보관
 - 특히, 냉장고 내 냉점지점에는 백신을 보관하지 말 것
 - 백신 보관 중 사고발생 시 백신을 이동할 경우 아이스박스 내 냉매와 백신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함
- *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 경우 접종 시작 전 2주 이상 사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온도 조건 확보 필요

□ 백신 보관 장비에서 백신 배치 및 표시

- 백신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파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접종

- 냉동·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백신은 해동 전까지는 바이알 개봉 금지

○ 백신 및 희석액은 명확히 라벨을 부착하여 보관

- 희석하여 사용하는 백신의 경우 희석액을 함께 보관하여 다른 백신과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

○ 투여 시점까지 최초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 백신이 불필요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백신 보관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 백신 보관 장비 전기코드는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벽에 있는 전기코드를 사용하며, 임의로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백신과 희석액을 구분하고 유효기한을 반드시 확인

※ 코로나19 백신은 안정성 연구에 기초하여 유효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

○ 다회 용량 백신 바이알(Multi-dose Vial)은 처음 개봉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하고,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 희석한 일자와 시간을 표시

□ 백신·희석액의 회수 및 폐기

○ 예방접종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량을 등록하고 접종기관(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은 유통업체가 회수

- 유통업체에서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회수량(폐기량)을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하고 폐기

○ 백신·희석액을 폐기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 백신 보관 온도 이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붙임3)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

- 사고 발생 시간, 사고 인지 시간, 사고 시점의 백신 보관장비 온도 등을 측정 후 기록
- 지침에 따라 재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재사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별도 보관
-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냉동고에 있던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이 경우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 중 붙임3. 백신 보관 온도 이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의료기관용)

□ 개요

- 백신 생산에서 투여까지 백신 보관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백신 효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보관온도 이탈(예 : 콜드체인* 사고) 시 백신 손상 여부와 오염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관리는 접종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며 백신 낭비를 최소화 함
 - * '콜드체인'은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백신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백신이 제조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백신 제공 업체를 거쳐 백신이 투여될 때 종료
- 보관온도 이탈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

□ 백신 보관 온도 이탈 사고 및 관리

- 백신의 온도에 대한 민감성
 - 백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고 극한의 열, 추위, 햇빛 또는 형광등에 노출되면 이 과정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일단 효능이 상실되면 복원 할 수 없음
 - 일부 백신은 유효기간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저하됨
 -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시간과 백신의 효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노출된 온도에 따라 보관온도 이탈 사고의 중요성이 결정되며 사고는 즉시 조치되어야 함
- 보관온도 관리는 제조업체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예: 지역 수송 중 사고 또는 기타 광범위한 정전)으로 인해 사고에 취약

□ 백신 보관 온도 이탈 사고 발생 시 절차

- 백신 보관 온도 이탈 사고(백신 보관 장비 파손, 오작동 등) 발생 시 **현장 관리자 수행 절차**
 - ①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사고 현황 즉시 유선 보고
 - ② 백신 보관 온도 이탈 발생 대응 지침에 따라 수행
 - 사고 발생 시간, 사고 인지 시간, 사고 시점의 백신 보관장비 온도 등이 포함된 사고점검표 작성

연번	사고점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1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또는 사고 인지 날짜와 시간)
2	보관 온도 일탈 위반 사유(알고 있는 경우) 및 시정 여부
3	백신이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유형
4	백신이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기간
5	백신이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장소(예: 저장 장치)
6	사고 발생 당시 백신 보관장비 내·외부 온도(일반 온도계 사용 가능)
7	백신 보관 장비의 사고 기간 데이터 로깅 정보, 유지보수 이력, 브랜드 (제품번호) 및 용량
8	영향을 받은 백신의 목록, 로트번호, 수량, 유효기간, 포장 상태, 눈에 띄는 손상 여부
9	백신이 냉각 판 또는 차가운 공기 배출구에 밀려 났는지 여부
10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이 접종대상자에게 투여되었는지 여부
11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12	기타 관련 정보

③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은 분리하여 관리

- 백신보관장비 내에서 분리하여 대체 저장장치로 이송하고 "사용금지" 표시와 콜드 체인 중단 날짜를 표시하고 해당 백신의 투여를 피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림
- 적정 온도(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냉장온도(2~8℃)에서 mRNA 벡터 백신의 경우 냉동(-20℃)/초저온(-60~-90℃))보관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④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은 대체 저장 장치*로 이송

- 냉동고에 있던 드라이아이스,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이때에도 백신 보관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 * 백신을 이동할 경우 아이스박스 내 냉매와 백신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함
- 백신 재배치 후 백신보관장비의 오작동 원인을 확인
- 보관 온도 일탈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⑤ 보관 온도 일탈 사고에 대하여 사고보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세부사항을 추가 보고

□ 백신의 재사용 여부 검토

- 수입자·제조업자가 제출한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이 온도를 벗어나도 품질이 유지되는 시간(TOR; Time out of Refrigeration)* 자료 또는 해외제조소의 제품 품질 유지 온도 관련 의견서를 토대로 보관 온도 일탈 사고 백신을 재사용할 수 있음
- 위험 평가 수행을 통해 콜드체인 일탈/보관 조건에 따라 백신 품질(예: 효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백신의 재사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보관 온도 일탈 사고 당일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 접종 접종대상자 상태 모니터링
-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관 온도 일탈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현장관리자 및 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콜드체인 및 백신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사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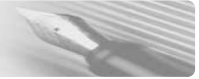
(앞쪽)

담당자 (보고자)	업체 명	성 명	연락처(휴대폰)	차 종	차량번호
	000업체	홍길동			
운전자					
사고 백신 제품명	00 사 코로나19백신				
사고 발생 일시	구분 (보관중/수송중)	사고 발생 장소(주소)		사고 유형	
'21.0. 0.(수). 00:00		00시 00동 00삼거리		①백신온도일탈 ②백신용기 파손 ③교통사고 ④백신 분실 및 도난	
수송 경로	출발지	이동 경로 (경유지포함)	도착지	백신수량 (사고 전)	백신수량 (사고 후)
		1.			
		2.			
사고 경위	● '21. 0. 0, 00:00 경 000에서 000 등 0개소 000백신 0000박스 백신수송 ● 00:00시경 000부근에서 온도조절장치 고장으로 백신온도 일탈 ● 00지역 배송 불가000백신 000박스(LOT 번호 포함) ※ 사고 경위 및 조치사항 세부적으로 작성				
사고 원인	● ● ●				
관련 조치	● ●				
도면/사진	사고 도면		사고 사진(반드시 첨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등)		

사고점검표

(뒤쪽)

연번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특이사항)
1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 (또는 사고 인지 날짜와 시간)			
2	보관 온도 일탈 위반 사유(알고 있는 경우) 및 시정 여부			
3	백신이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유형			
4	백신이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기간			
5	백신이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장소 (예: 저장 장치, 운송)			
6	사고 발생 당시 백신 보관장비 내·외부 온도(일반 온도계 사용 가능)			
7	백신 보관 장비			
	- 사고 기간 데이터 로깅 정보			
	- 유지보수 이력			
	- 브랜드(제품번호) 및 용량			
8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			
	- 목록, 로트번호			
	- 수량, 유효기간			
	- 포장 상태, 눈에 띄는 손상 여부			
9	백신이 냉각 판 또는 차가운 공기 배출구에 밀려 났는지 여부			
10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이 접종 대상자에게 투여되었는지 여부			
11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12	기타 관련 정보			



☞ 해당 안내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안내서이며, 변경 및 추가될 예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 배포방식 : 추진단 및 유통업체가 배포
- 백신보관 : 배송 및 보관 모두 2~8℃ 유지
- 기준수량 : 1vial = 10dose(1vial 당 10회 접종 기준)
- 접종물품

* 추가 여유분(최소 5% 이상)은 접종기관에서 준비

제 품 명	최소수량	비 고
접종용 주사기 1mL, 23G, 1~1.5inch	10	지자체에서 접종기관으로 배정 *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또는 멸균 주사기
알콜스왑, 알콜패드	30+a	접종기관 자체 준비 1vial 당 30개 사용 - 분출 전후 20=10회×2 - 접종 10
개인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등)	-	접종기관에서 기관 내 인력 규모에 맞춰 자체준비

화이자 백신(코미나티주)

- 배포방식 : 화이자에서 직접 배송(협의 중)
- 백신보관 : 백신은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된 별도의 수송용기에 담아 배송되며, 접종기관은 수송용기에서 백신 트레이를 꺼낸 즉시 초저온 냉동고에서 -75℃ ±15℃ 유지하며 보관
- 기준수량 : 1tray = 195vial = 1,170dose(1vial 당 6회 접종 기준)

○ 접종물품

* 추가 여유분(최소 5% 이상)은 접종기관에서 준비

제 품 규 격	최 소 수 량	비 고
희석액 최소 2mL 이상 * 희석 시 1.8mL 사용	195+a	질병청 예산지원, 보건소 구매
접종용 주사기 1mL, 23G, 1~1.5inch	1,170+a	지자체에서 접종기관으로 배정 * 잔여량 0.035mL이하,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희석용 주사기 3mL, 21G, 1~1.5inch	195+a	지자체에서 접종기관으로 배정 * 멸균 주사기
알콜스왑, 알콜패드	3,900+a	접종기관 자체 준비 1vial 당 20개 사용 - 희석액 표면 1, 백신 표면 1 - 분출 전후 12=6회×2 - 접종 6
개인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등)	-	접종기관에서 기관 내 인력 규모에 맞춰 자체준비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방수·절연 장갑 등)	1set 이상	수송용기 개봉 시 착용 * 방수·절연 장갑 1쌍은 초저온 냉동고 공급 시 포함

1. 백신 보관장비 선정 및 보관

- 백신 보관장비(냉장고)는 신중하게 선정, 올바르게 설치,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 실시
- 백신 보관장비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 권장
 -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보관장비가 없는 경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단, 냉장·냉동고가 연결되어 있으며 문이 하나인 1도어 냉장고는 사용 금지
- 백신 보관 냉장고는 백신 보관 용도 외 사용 금지(음식물, 백신 이외의 의약품, 검체 등과 함께 보관 금지)
-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할 때 냉장고 내 별도의 구역을 정하고 보관용기 등에 명확히 표기하여 접종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예방

2. 백신 보관장비의 온도 모니터링 장치 설치

- 백신 냉장고는 24시간 동안 보관장비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기록·보관, 기준 온도 이탈 시 알람·이탈시간 정보, 문 잠금 정보 기능 등 구비
 - (위탁의료기관 필수 조건)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없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에 다음의 2가지 기능을 갖춘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며, 디지털 온도계 고장을 대비하여 여분의 디지털 온도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①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외부에 부착하여,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 ② 근무시간 외에도(주말 포함) 냉장고의 설정온도(2~8℃) 이탈 즉시 접종기관 백신 보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
- 백신 보관장비 내부 온도는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온도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 1일 최대/최소 온도 확인이 가능하면, 기록 및 보관
-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있는 보관장비를 구비하여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매일 2회는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게시판→프로그램/매뉴얼→공지사항→코로나19예방접종대상자관리(보건소용) 매뉴얼 참조

1. 회원가입

사이트 접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용) 매뉴얼 03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접속합니다.

질병관리청

1.1. 사이트 접속

사용자 가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용) 매뉴얼 04



사용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질병관리청

1.2. 사용자 가입

1.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 | 2021-19 여성정책 연구자문위원회(연구) 제1차 | 05

※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나타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에 대한 인사를 확인하신 다음 동의할 경우 동의함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질병관리청 1.3.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인증서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의료) 계속됨 06

 서울특별시청 1.4. 인증서 등록

1. 회원가입

사용자정보 입력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07

01 개인정보 수집 동의 > 02 인증서 등록 > 03 사용자정보 입력 > 04 권한신청 > 05 가입신청 완료

■ 사용자정보 입력

비밀번호:

이름: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증서 등록 후, 사용자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용자 정보를 작성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질병관리청

1.5. 사용자정보 입력

권한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08

01 개인정보 수집 동의 > 02 인증서 등록 > 03 사용자정보 입력 > 04 권한신청 > 05 가입신청 완료

Help Desk

1338-1234
 예방접종: 043-719-8397-8399
 문의: 043-719-7320
 예방접종: 1522-6029
 예방접종: 1522-6039
 예방접종: 070-8580-3129
 시스템: 1644-1687

24시간 (월~토) 09:00 ~ 18:00 (일요일) 12:00 ~ 18:00
 주휴일: 09:00 ~ 18:00

■ 권한신청

- 권한을 1회 이상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용자 가입 후 신청권한을 관리자가 승인한 후 완료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명	신청	승인	승인 기한 및 일일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보건소)	☐	☐	043-719-8399



권한신청 화면입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에는 많은 시스템 권한을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보건소) 권한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보건소)] 권한을 선택합니다. 2) 빠른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1.6. 권한신청

1. 회원가입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완료 후 사이트 접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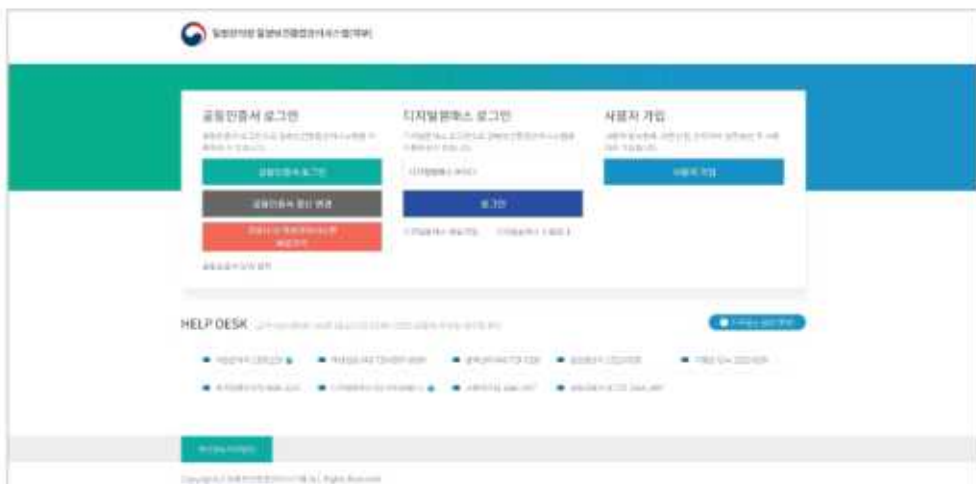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보건소) 권한이 승인되면 가입이 완료되며, 로그인 시 메뉴보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1.7.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완료 후 사이트 접속

2. 권한신청

사이트 접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11



질병관리청 질병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접속합니다.

질병관리청

2.1. 사이트 접속

2. 권한신청

로그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의) 메뉴얼

12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기존에 등록된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질병관리청

2.2. 로그인

권한/부가정보 메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의) 메뉴얼

1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권한/부가정보'메뉴를 클릭합니다.

질병관리청

2.3. 권한/부가정보 메뉴

2. 권한 신청

권한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메뉴얼

14

권한부가정보 관리 화면입니다.
1) 상단에 조회조건을 신청가능으로 변경 후 조회하면, 신청하실 수 있는 권한이 나타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보건소)] 권한을 신청합니다. 2) 빠른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청

2.4. 권한신청

권한신청 완료 후 사이트 접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메뉴얼

15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팀 User(보건소) 권한이 승인되면 가입이 완료되며, 로그인 시 메뉴보기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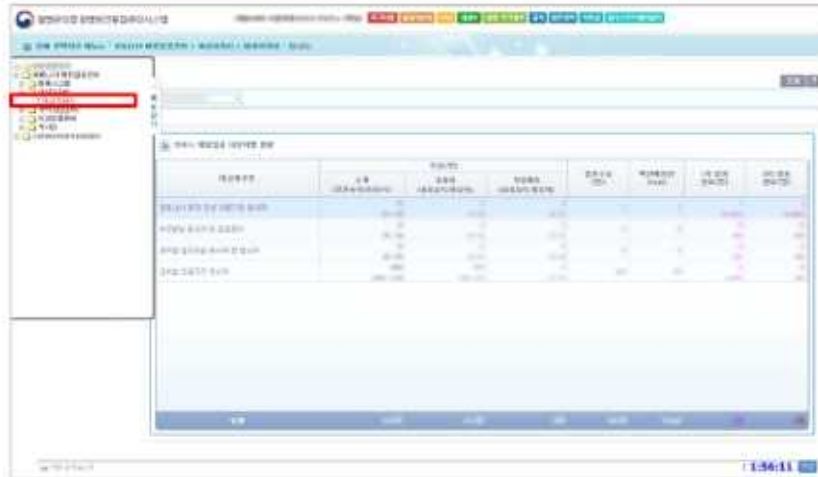
예방관리청

2.5. 권한신청 완료 후 사이트 접속

3. 대상자관리

메뉴 선택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의료) 메뉴열

17



질병관리청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보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체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의료) 메뉴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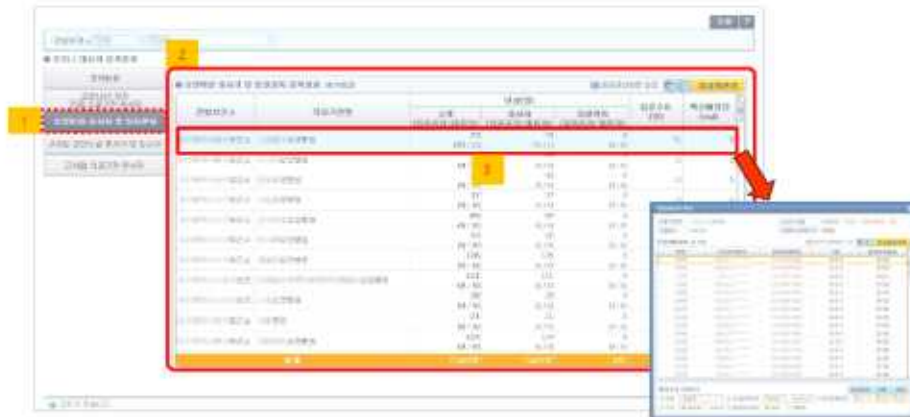


대상자관리 화면입니다.
좌측 랑에서 대상자구분을 선택하면 의료기관별 대상자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3. 대상자관리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조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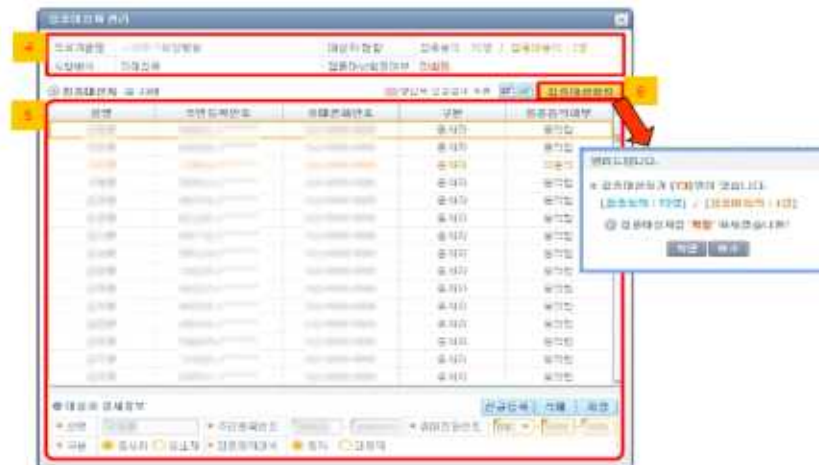
- 1)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를 선택합니다.
- 2) 선택한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의료기관별 대상자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 조회된 목록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대상자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대상자관리 팝업이 나타납니다.



3.3.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조회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 접종대상자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20



- 4)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5) 접종대상자를 확인하고 수정/삭제/신규등록이 필요할 경우 화면 하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6) 접종대상자를 모두 확인 후 [접종대상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접종대상자를 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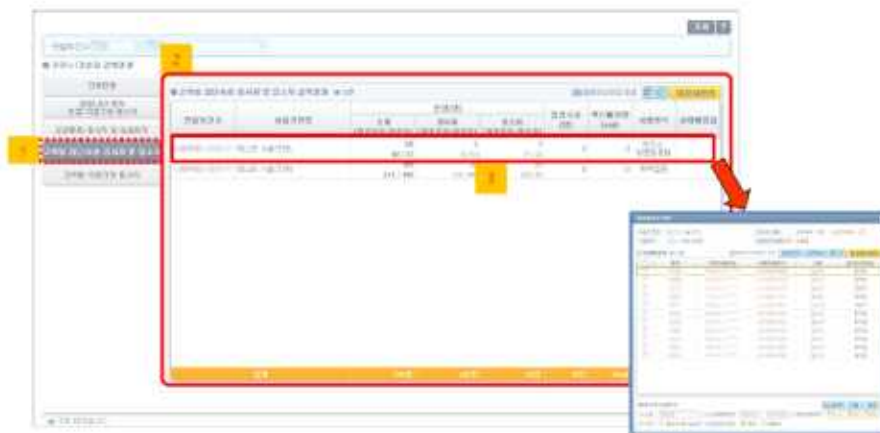


3.4.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 접종대상자관리

3. 대상자관리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조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21



- 1)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선택합니다.
- 2) 선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시설기관별 대상자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 조회된 목록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대상자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대상자관리 팝업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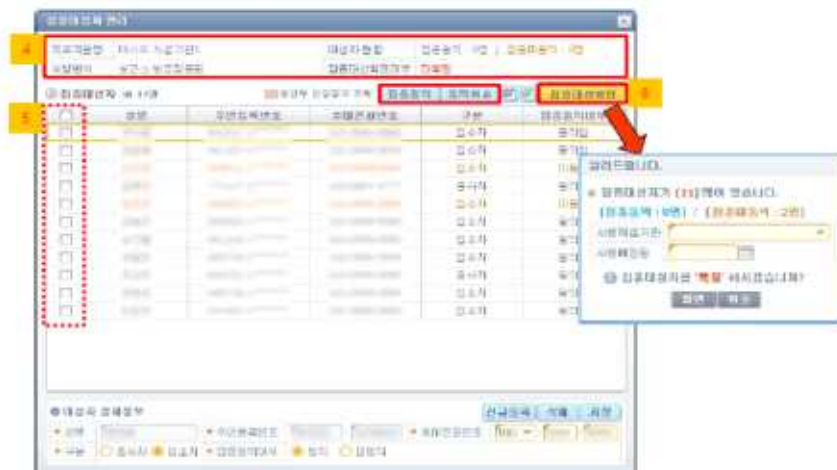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3.5.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조회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조회 - 접종대상자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관리(보건소) 매뉴얼

22



- 4) 시설기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5) 접종대상자를 선택 후 [접종동의] 및 [동의취소]확인하고 수정/삭제/신규등록이 필요할 경우 확인 하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6) 접종대상자를 모두 확인 후 [접종대상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시행의뢰기관', '시행예정일' 을 입력 후 접종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질병관리청

3.6.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 접종대상자관리

부 록 15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점검 관리(보건소용) 매뉴얼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게시판→프로그램/매뉴얼→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계약 및 점검관리 매뉴얼(보건소용) 참조

1. 메뉴 선택

메뉴 선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운영실행 (보건소용) 매뉴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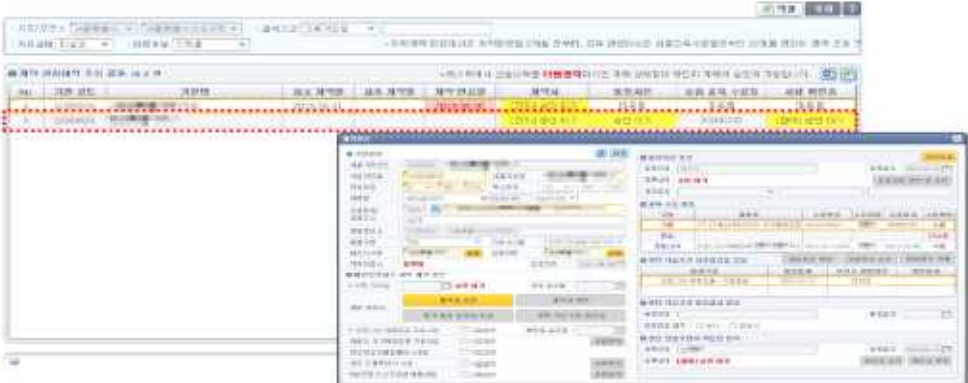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보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계약-점검관리' > '계약승인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1.1. 메뉴 선택

2. 계약승인 목록 조회

계약승인 목록 조회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운영실행 (보건소용) 매뉴얼 04



계약승인관리 화면입니다. 조회를 하시면, 승인 대기 기관 목록이 나열됩니다. 목록을 더블클릭하시면, 상세 내역 팝업을 확인 가능합니다.


1.2. 계약승인 목록 조회

3. 위탁 계약서 승인

위탁 계약서 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보건소용) 매뉴얼

05

신청된 계약서를 승인하려면, '계약서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된 계약서 정보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의 사군구 공동인증서로 서명을 합니다.
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서 승인이 완료됩니다.

일방관리형

1.3. 위탁 계약서 승인

4. 통장사본, 교육정보 승인

통장사본, 교육정보 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보건소용) 매뉴얼

06

1) 통장사본 정보를 승인하려면, '통장사본 확인 및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의 계좌정보를 직접 입력하시고,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코로나19 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수료 정보가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방관리형

1.4. 통장사본, 교육정보 승인

5. 자율점검표 승인

자율점검표 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보건소용) 매뉴얼

07

'자율점검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자율점검 승인' 버튼을 클릭하시어, 위와 같이 자율점검표를 승인합니다.



1.5. 자율점검표 승인

6. 시행 확인증 승인

시행 확인증 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보건소용) 매뉴얼

08

의료기관 방문점검을 실시하시고, '방문점검 여부' 항목의 '실시' 항목을 클릭합니다.
확인증을 승인하시려면, '확인증 승인' 버튼을 클릭, '전자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시행 확인증 승인

7. 사업 참여 확인

사업 참여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보건소용) 매뉴얼

09



확인증을 승인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사업참여'가 체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 구역 >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을 작성하고 보건소로 제출하였다.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다.	총 인원() 중 ()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완료하였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팀을 구성하고,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사전에 보건소에서 수령하고, 접종동의를 구득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종사자와 입원환자 명단을 등록하였다.		
알코올 솜, 여분의 접종용 주사기(1mL, 21G 이상 가는 바늘),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를 충분히 구비하였다.		
이상반응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을 구비하였다.		
백신관리 담당자 및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관할보건소에 통지하였다.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및 연락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예방접종 관련사항		
예진표 작성 공간 및 별도의 대기 공간이 있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보관할 공간을 준비했다.		
별도의 청결 구역에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장소가 있다.		
2-1 별도 접종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접종 대상자들이 겹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동선, 접종 순서 등)이 있다.		
접종장소에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통,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의사의 예진 및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접종을 준비할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물품이 처치공간에 구비되어 있다.		
별도의 이상반응 처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처치를 위한 침대를 마련해 두었다.		
2-2 병동 순환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를 지정하고,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통,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병동별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이 수립되어 있다.		

병동별 접종 대상자 명단과 백신 접종 순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에 다른 약품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다.		
다회용 백신의 취급법 관련 포스터 또는 자료를 접종준비인력이나 백신담당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다.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이나 백신잔량을 별도로 보관할 폐기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접종인력 술기 교육	점검결과	
	예	아니오
백신 취급 전, 환자에게 접종 전후 매번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하였다.		
개봉한 백신에는 개봉일시와 사용만료일시를 기록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백신액 추출 전 알코올솜으로 백신 마개를 소독하도록 교육하였다.		
백신 추출 후 주사기에 백신명, 로트번호, 백신 유효기간을 주사기에 기입하도록 교육하였다.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 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백신을 준비한 즉시 접종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백신액 추출 후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울 때 어디에도 닿지 않게 무균법을 유지하며 한손으로 뚜껑을 씌우도록 교육하였다.		
주사 후 즉시 주사기는 손상성폐기물함에 폐기하도록 교육하였다.		



1. 상황별 세부 점검사항

상황	중점내용	평가항목	Y	N	비고
1. 냉동백신해동					
백신보관	비상시대처	초저온냉동고/해동냉장고 근처에 문제시 긴급연락처 및 대처법을 비치해 놓았는가?			
	보관관리	백신보관장비는 24시간동안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기록 보관하는 장치가 있는가?			
	보관 관리	백신 바이알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되고 있는가?			
냉동고에서 백신 꺼내기	신속·정확한 백신 이동	3분 내에 초저온 냉동고에 들어있는 백신을 필요한 수량 만큼 꺼내고 백신보관상자를 초저온 냉동고에 다시 넣는가?			
	안전한 취급	초저온냉동고 내 백신보관상자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하는가?			
	취급 기록	백신관리담당자는 백신 취급일지에 백신 불출 사항을 기록하는가?			
냉장고에 백신 넣기	간격을 두고 백신을 냉장고에 해동	꺼낸 백신을 냉장고에 넣을 때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또는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제품과 제품 사이에도 충분한 공간을 두어 공기 순환이 되도록 보관하는가?			
2. 백신 회석/추출					
준비대 준비	회석·주사제 준비 공간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청결구역에서 백신을 회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대가 있는가?			
		백신을 회석·준비할 수 있는 물품(회석용 주사기, 접종용 최소잔여량주사기, 알코올 솜, 손상성폐기물함, 0.9% 생리식염수)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준비대 청결성	준비대는 청결한가? 오염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감염예방	백신 처치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있는가?			
백신회석 물품준비	필요물품 숙지	백신을 냉장고에서 꺼내기 전에 회석용주사기, 0.9% 생리식염수, 알코올솜을 준비하는가?			
손위생	감염예방	백신 취급 전 매번 손위생을 실시하는가?			
백신섞기	백신액 바르게 섞기	냉장고에서 꺼내온 백신을 흔들지 않고 아래위로 10번 부드럽게 뒤집는가?			
백신액체 확인	백신이상 여부확인	회석하기 전 백신액체가 흰색에서 미백색의 현탁액인지 확인하여 백신액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가?			

상황	중점내용	평가항목	Y	N	비고
마개소독	오염예방	알콜솜으로 0.9%생리식염주사액의 마개 또는 주사기 천공 예정 부분을 소독하는가?			
	오염예방	알콜솜으로 백신 바이알 마개를 소독하는가?			
희석액추출	주사기선택	희석액 추출시 21G 이상의 가는 주사기를 사용하는가?			
	오염예방	희석액 추출 주사기 바늘부분과 생리식염수 추출부위에 손을 대지 않는가?			
	정확한 용량 추출	희석액 1.8mL 정확한 용량을 추출하는가?			
	감염예방	한번 천공된 생리식염수액을 폐기하는가?			
희석액 주입	오염예방	희석액 추출 후 바로 소독한 백신 마개로 희석액을 넣는가?			
	정확한 용량 주입	추출한 0.9% 생리식염주사액 1.8mL를 백신 바이알에 주입하는가?			
백신내 압력제거	공기 제거	희석액 주입 후 주사기를 빠지 않고 바로 공기 1.8mL를 제거하는가?			
백신 혼합	혼합시 손상예방	혼합백신이 들어있는 바이알을 흔들지 않고 10회 부드럽게 뒤집어 혼합하는가?			
	혼합백신 검사	바이알의 혼합백신을 눈으로 확인하는가?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			
	희석 기록	희석한 백신 바이알에 희석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가?			
백신액 추출	손위생	백신 취급 전 손위생을 실시하는가?			
	백신소독	백신액 추출 전 알코올솜으로 백신 마개를 소독하는가?			
	접종용주사기 준비	접종용 주사기(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선택하여 준비하는가?			
	정량 추출	0.3mL정량을 추출하고, 백신 마개에 주사바늘을 꽂은 상태로 공기방울을 제거하는가?			
	무균법유지 recapping	추출 후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울 때 어디에도 닿지 않게 무균법을 유지하며 한손으로 뚜껑을 씌우는가?			
	이상여부 확인	추출한 백신액이 백색 또는 미백색인지, 백신액에 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가?			
	라벨링	백신명, 로트번호, 백신 유효기간을 주사 트레이 등에 기입하는가?			
3. 접종대상자 맞이 및 접수					
맞이공간 점검	거리두기 준수	입장 전 접종대상자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테이프로 표시해 두는가?			
	안내표시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는가?			

상황	중점내용	평가항목	Y	N	비고
대상자등장	예약여부확인	행정요원이 대상자를 맞이하고, 신분증 및 시스템으로 대상자 사전예약 내역을 확인하는가?			
	체온측정 및 코로나19증 상확인	체온(37.5℃이상) 측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기침, 가래 등) 여부를 확인하는가?			
	마스크착용 확인	접종대상자가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하는가?			
	대상자간 거리두기	접종대상자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는가?			
	손위생	대기 공간 입구에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행정요원은 접종대상자에게 손위생을 안내하는가?			
출입데스크 접수	대상자 확인 및 예진표 배부	전산으로 접종대상자의 예약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가?			
		접종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부하는가?			
		예진표 작성을 안내하고 예진표 작성 장소를 알려주는가?			
4. 예진표 작성					
작성장소 물품	거리두기준수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예진표 작성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예진표작성	예진표충실도	예진표 작성 완료후 작성된 예진표의 충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가?			
		예진표 작성이 끝난 접종대상자를 예진 대기실로 안내하는가?			
5. 예진					
의사예진	대상자확인	접종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하는가?			
	접종제외여부 확인	예진표의 확인사항을 확인하여 접종제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가?			
	이상반응설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는가?			
	이상반응설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15~30분간 머물러야함을 설명하는가?			
	접종여부판단	예진결과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서명하는가?			
6. 예방접종					
접종실	거리두기	접종실 출입 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질서있게 안내하는 요원이 있는가?			
	감염예방	접종실 내 손소독제와 손상성폐기물함, 의료폐기물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	접종실은 접종자의 신체를 다 가릴 만큼 충분히 가려져 있는가?			

상황	중점내용	평가항목	Y	N	비고
예방접종전	접종대상자 확인	예진표의 이름과 접종대상자의 이름 일치여부를 확인하는가?			
	접종 안내	접종을 위해 옷을 충분히 올리거나 벗어 어깨 부위를 노출시켜야 함을 안내하는가?			
	손위생	시행인력은 접종 시행 전 손소독제로 손씻기를 실시하는가?			
접종	백신액확인	접종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전 백신 종류, 유효기간, 주사기 안 백신액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가?			
	피부소독	접종대상자의 주사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는가?			
	접종	접종대상자의 정확한 주사부위(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하는가?			
	폐기물처리	접종 후 주사기를 손상성폐기물에 폐기하는가?			
접종 후	접종기록	예진표에 백신제조회사와 백신제조번호, 접종부위, 접종자 이름을 기입하는가?			
7. 전산등록					
전산등록처	예진표 등록	예방접종 예진표를 스캔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는가?			
	접종력 등록	예진표를 수거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완료자의 접종 정보를 입력하는가?			
	2차접종일 안내	접종완료자에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발급하고, 2차 예방접종일을 안내하는가?			
	관찰실 안내	관찰실을 안내하는가?			
8. 이상반응 관찰					
이상반응	담당자	이상반응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이상반응 발현자 대기공간	침대 설치	이상반응 발현자 대기공간에 노약자, 이상반응 발현자 등을 대비하여 최소 1개 이상의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관찰실	거리두기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는가?			
	관찰실크기	관찰실에 접종완료자가 대기할 충분한 의자가 있는가?			
	응급상황 대비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별도의 처치 공간이 있는가?			
		처치 공간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별도의 처치실은 잘 가리워져 사생활 보호가 되는가?			
이상반응 관찰	이상여부 관찰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이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가?(이송요원, 이송병원, 관할보건소 등)			
		접종완료자에게 이상여부 발생 시 알려달라고 안내하는가?			
		관찰실에서 접종완료자의 이상여부를 계속 관찰하는가?			
		접종완료자 모두 이상반응을 15~30분 충분히 관찰하는가?			

2. 예방접종센터 점검사항에 대한 총괄평가(안)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비고
1. 방역수칙준수				
예방접종센터의 모든 종사자가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가?				
방문객과 접종대상자들 중 마스크 미착용 인원을 위한 여분의 마스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근무자와 접종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는가?				
표지판 및 칸막이 등을 통해 접종센터 내 모든 인원이 최소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감염예방				
의료진은 접종 전, 접종 간, 그리고 손 오염 시 손 위생을 수시로 했는가?				
접종준비, 접종 중, 접종 후 무균술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접종했는가?				
3. 기타				
각 분야별 업무 분장이 분명하였는가?				
각 분야별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각 분야별 요원이 충분하여 대상자의 접종 진행 흐름이 원활하였는가?				
4. 총평 및 개선사항				



개인보호구 4종 착용법

중앙방역대책본부



①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 장갑은 상황에 따라 안갑 또는 두꺼운 장갑 중 선택



② 손 위생을 시행한다.



③ 가운을 입는다.
* 마른 장갑을 착용할 경우 속장갑을 먼저 착용
하여 속장갑 뒤로 가운소매가 덮여도록 입는다.



④ 마스크를 착용한다.



⑤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⑥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우' 붙고, '옴' 틀어막으면서 채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고글 착용 시



안면보호구 착용 시



⑨ 장갑은 옷소매 뒤를 덮어 소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한다.

⑦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I. 감염예방

①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과정 등 모든 과정에 무균술을 준수

②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과정 등 모든 과정에 반드시 손위생 수행

- 바이알 및 희석액 등 주사약품을 취급하기 전, 주사제 투여 전에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한다.
-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착용할 경우 착용 직전, 장갑을 벗은 직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③ 개인보호구의 착용

- 백신을 취급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주사제 준비, 투여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 * 지역사회 유행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④ 주사제 투여 시 감염예방

- 주사제의 준비, 주입하는 장소는 청결해야 한다.
- 바이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제를 뽑아낼 때 고무마개 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고 자연건조를 통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주사바늘을 삽입해 약물을 뽑아낸다.
- 한 번 사용한 주사기(Syringe) 및 주사바늘(Needle) 등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 주사기의 피스톤과 주사바늘의 연결부위, 주사바늘의 삽입부위가 손이나 기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폐기한다.
- 투여 전 적절한 소독제(알코올 솜 등)를 사용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자연건조를 통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II.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관리

-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 주사기는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
 - 멸균주사제품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직전에 포장을 제거하고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한다.
-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는다.
- 사용한 주사기 또는 주사바늘은 즉시 전용 폐기물함에 폐기한다.
- 사용한 바늘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뚜껑을 씌워야 한다면, 한 손 기법(one hand technique)을 이용한다.
- 한번 사용한 주사바늘은 다시 바이알에 넣지 않는다.
-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는, 트레이(상자)에 옮겨 담아 카트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 주머니나 옷에 넣어 운반하지 않는다.

III. 코로나19 백신 취급

- ❶ 백신의 보관과 사용은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 ❷ 백신을 사용하기 전, 제조회사의약품 정보(이름, 용량, 유효기간, 투여경로 등)를 확인한다.
 - 바이알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손상되었거나 성상의 변화(변색, 혼탁, 알갱이 등)가 보이면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한다.
- ❸ 다회 용량 바이알을 처음 개봉·희석 할 때 유효기간(사용 만기일시)을 명시한다.
 - 개봉한 다회 용량 바이알은 제조회사에서 권고한 유효기간(사용 만기일시)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아스트라제네카의 유효기간
해동한 백신은 냉장보관(2-8℃)에서 5일 (120시간)	첫번째 접종량 추출 후 실온(30도 이하)에서 최대 6시간
희석한 백신은 상온에서 6시간 까지 사용	
상온 노출시간이 6시간 이전이라도 당일 사용한 백신은 당일 폐기	

- ❶ 다회용량 바이알의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 Syringe, LDS) 사용하나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없다면 1mL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다.
- ❷ 접종대상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하며,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빨리 투여한다.
- ❸ 준비와 동시에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비와 동시에 투약하지 못한다면 주사제가 담긴 주사기에 라벨을 붙인다(백신명, 용량, 준비한 날짜 및 시간 등).
- ❹ 바이알의 백신을 사용 전 매번 고무마개를 소독한다.
- ❺ 바이알 주사제의 고무마개에 주사기를 꽂아 두지 않는다.
- ❻ 바이알의 백신을 사용하기 위하여 고무마개를 제거하면 안 된다.
- ❼ 주사제 사용 후 바이알에 남아있는 잔여량을 한 용기에 모아 놓지 않는다.
- ❽ 희석한 화이자 백신 주사제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는다.
- ❹ 다회 용량 바이알은 접종 구역과 분리된 장소에서 취급·보관하고 허가(신고)된 저장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다회용량 바이알은 예방접종대상자 접종구역에서 혼합하거나 분할한다면 폐기한다.
 - 무균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폐기한다.
- ❶ 바이알에 남아있는 희석 백신의 양이 1회 접종량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바이알과 잔량을 폐기해야 하며, 다른 바이알의 잔량과 혼합하지 않는다.
- ❶ 개봉한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 대상으로, 바이알은 수거 시까지 별도 의료폐기물함에 보관한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알림·자료→홍보자료→홍보지에서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 누리집(ncv.kdc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알기쉬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리면 어떤 질병을 앓게 되나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에 의해 지은 감염증

코로나가 사람에게 퍼졌다는 걸 보거나, 뉴스에 종종 나오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보통 가벼운 호흡기 질환으로 시작되지만, 일부는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

기침, 목통증,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 후각·미각의 상실

예방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아침을 할 때 타인을 보호하고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법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아침을 할 때 타인을 보호하고 거리두기입니다.

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한 국가의 재정이나, 예방접종 시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방접종의 종류

종류	대상	접종시기	접종장소	비고
1. 예방접종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2. 예방접종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 19세 이상 국민 2. 19세 이상 외국인

19세 예방접종 필요성?
접종시기 되면,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대중교통 이용시, 해외여행 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필요성은 어떤가요?

1.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방접종 필요성

1.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방접종 필요성

1.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접종 전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접종 중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접종 후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접종 후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접종 후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알기 쉬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논문 일람



- ② 해진 피사지 (삼남초등학교)
- ③ 코로-219 해방전후유해 피해 공극한 사할을 (삼남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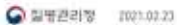
- 권형남씨(대가가 없음)은 지금껏
바로 과거하에 정려하지 않는다.
- 고가 재향인을 재향일을 달력에 표시해 준다.

Results



④ 해당집종 후 다음과 같은 각종 부하를 받기, 고전, 정정 등
정당한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주 임무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 2월27일과 2월28일마다 시행되는 2020년학년도 학교 방문 학습권 지원에 관련하여 등록과 원동동에서 2020년2학기 재학생을 만날 수 없습니다. 2월27일(2월) 28



비밀유지조치 요건에 대한 설명		
구분	비밀유지조치 요건	항목
종류	• 기술 • 사업계획	• 영업 • 조직 • 재무
처리	• 계약한 시간과 지리적 지역 제한 부여해 엄수 • 유통물류 체계는 철저하게 관리 철저하게 • 철저한 인적관리 또는 자재관리(비밀) 철저한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해 가능	• 수단을 통하여 접근하지 • 무단으로 접근하지

● 2000 제1회 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가 열린 1998년 4월 30일 서울의 물과 공기는 나라나가는 일련의 악몽 속에서(이제 이놈들이 죽었지) 앞날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꿈과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이 책을 통해 읽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킵니다.


질병관리청
2023.02.25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1. 사전 예약하기 2.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기관에 알린 후 예방접종 연기하기 3.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당일 부위가 잘 보이는 옷을 준비	 1. 마스크 착용하기 2.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기	 1.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하기 2.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접종 후 최소 3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이런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뤄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 ▶ 발열(37.5℃)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한정재지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대상자에서 제외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마세요!

1.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아력이 있는 경우
2.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응방법을 확인하세요.
- ▶ 그러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감염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최소 1m 이상)는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예방법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백신 준비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2021.02.23.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 및 예방접종

보관과 관리

2°C~8°C

- ▶ 미개봉 상태의 바이알은 냉장보관(2°C~8°C)
- ▶ 냉장보관(2°C~8°C) 시 최대 6개월간 보관 가능
- ▶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포장된 박스 상태로 보관
- ▶ 개봉한(첫 번째 접종용 추출 후) 바이알은 실온(최대 30°C)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 및 당일 폐기

예방접종 방법

01 백신냉장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바이알 꺼내기. 백신은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어야 함	02 무균술을 적용하여, 고무마개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자연 건조 시키기	03 첫 번째 사용 후 유효기간(사용만개별시)을 24시간 기법으로 바이알에 기입. 개봉한(첫 번째 접종용 추출 후) 바이알은 실온(최대 30°C)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 및 당일 폐기
04 백신액 1mL 접종용 주사기로 0.5mL 추출	05 바이알에 접종용 주사기를 꽂은 채로 공기 방울을 제거	06 0.5mL가 추출되었는지 확인
07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 접종 (8~12주 간격 2번)	08 예방접종 후 주사기 등은 손상성 폐기를 전용용기에 폐기	09 개봉한 바이알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바이알은 폐기. 바이알 상태 그대로 별도의 보관함에 분리하여 유통업체에서 회수 시까지 보관.

□ 화이자 코로나19백신 준비 및 예방접종

질방관리청

2021.02.23.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준비 및 예방접종

1. 냉동백신 해동 방법

01. 초저온 냉동고에서 -90℃ ~ -60℃로 보관
※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고 냉동백신 취급

02. 냉동백신은 2℃ ~ 8℃ 냉장고에서 해동(3시간 소요)
※ 상온에서는 30분간 해동 가능

03. 해동 후 유효기간(사용인기일시) 기폭
※ 해동하면 최대 5일(120시간) 보관 가능
※ 해동 후 재 냉동 금지

2. 예방접종 사전준비(백신 희석)

단계 01

·냉장 백신 바이알을 희석하기 전...
10회 실시, 단, 흔들지 말 것!

·백신 바이알 마개를 부드럽게 뒤집어주는 것! 손목 후 자연 건조

단계 02

·무균술집을 이용, 희석용 주사기(27G)로 0.9% 생리식염주사액 1.8mL을 백신 바이알에 주입

·백신 바이알에서 희석용 주사기를 빼기 전에 공기 1.8mL를 추출, 바이알내 기압 균일화

단계 03

·희석액을 넣은 백신 바이알을 부드럽게 뒤집어주는 것! 10회 실시, 단, 흔들지 말 것!

·희석백신 유효기간(사용인기일시) 기폭
※ 21.2.21, 14:00

·희석 후 6시간 지난 백신은 계층배부와 무관하게 폐기

단계 04

·희석백신 추출 전 알짜를 손으로 백신 바이알 마개를 소독하고 자연건조 후 추출

·희석한 백신의 1회 접종 용량은 0.3mL
※ 최소 잔여량(Low Dead Space) 주사기 사용

·희석백신 0.3mL 용량을 쥔 후 백신 바이알에 주사기를 꽂은 채로 기포 제거

3. 예방접종

·주사기에 0.3mL를 쥔 후 접종 용량 재확인
※ 희석한 백신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금지

·예방접종: 상완의 삼각근에 0.3mL 근육주사(21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 후 주사기 등은 손상성 폐기를 전용용기에 폐기
※ 희석 후 6시간이 지난 잔여 백신 바이알은 삼태 그대로 별도의 보관통에 분리하여 유류민폐에서 회수 시 까지 보관

□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발작



두통



피로감



발열



오한



근육통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healthchecker>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https://nip.kdca.go.kr/KVAERS>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앞면)



질병관리청

2021.02.2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

접종 당일



건강상태
좋을 때 접종



철저한 예진



안전한 접종



접종기관에서
이상 반응 관찰

⊕ 코로나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접종 후 15분간 관찰
 - 과거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반드시 30분간 관찰
- **귀가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 기울이기**
 - 만약 39도 이상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의사의 진료 받기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 삼가**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
- **어르신인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뒷면)



질병관리청

2021.02.2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2~3일내 저절로 좋아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 예방접종 후, 이런 증상이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 되는 경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을 통해 나의 증상을
확인해보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입술 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https://nip.kdca.go.kr>

□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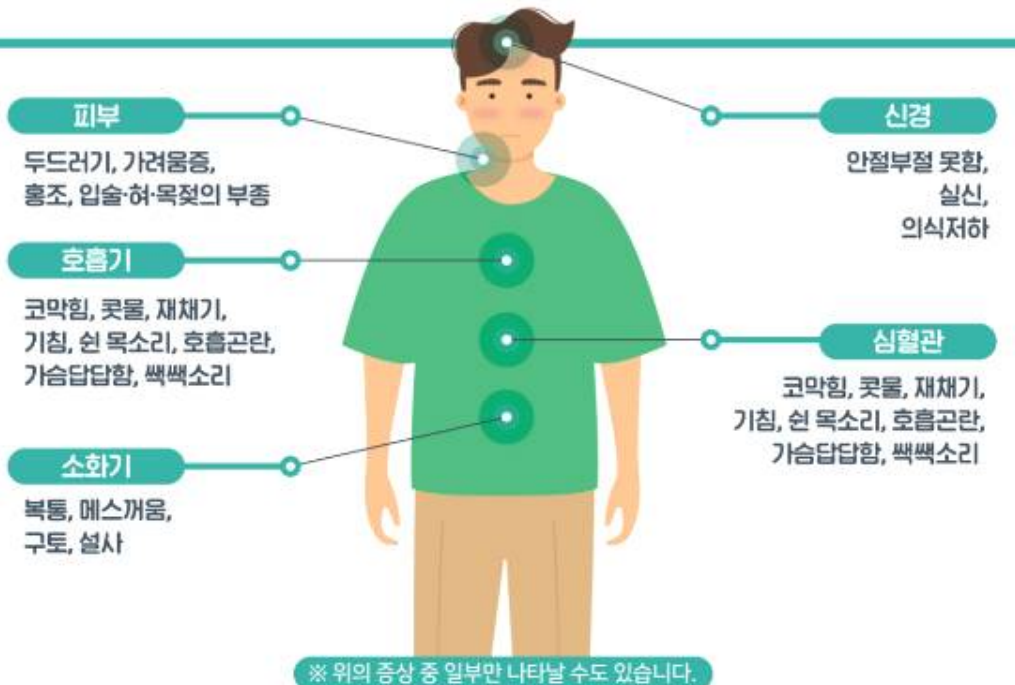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 숨이 차고 쌉쌉거림
- 혀가 부음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 쌉쌉거리거나 기침을 계속 함
-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 참뱀하거나 늘어짐



□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뒷면)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

☑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01
편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02
빨리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03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주사하고 시간을 기록합니다.



04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05
산소가 있으면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06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위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집에 돌아간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부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30분 이내 나타나지만, 귀가 후에도 알레르기 반응(눈물, 콧물, 입술주위나 눈의 가려움증, 재채기,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이 계속될 경우 항히스타민제 등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2021.02.23.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0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02

상황평가/도움 요청

환자를 혼자 두지 말 것, 필요시 119 구급대 신고



03

환자 기도확보/자세 조정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며, 일어서거나 걷게 하지 말 것



04

에피네프린 투여

즉시 에피네프린을 전외측 대퇴근에 근육주사



05

산소투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필요시) 기도내 삽관



06

**에피네프린 투여 5분 후에
호전되지 않으면 에피네프린 2차 투여**



07

구급차 이송

접종 기관이 병원이 아니라면 대기중인
구급차로 지정 응급센터로 이송



08

아나필락시스 발생기록





1. 코로나19 백신 개요

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등 여러 종류의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mRNA백신(화이자·모더나社), 바이러스 벡터(아스트라제네카·얀센社) 백신, 불활성화 백신(노바백스社)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합니다. B세포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세포 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 이후 우리 몸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침투했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와 기억 세포가 바이러스 침입에 빠르게 반응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Q. 코로나19 백신 종류별 효과성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은 개발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참고로, WHO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으로 화이자社, 모더나社, 아스트라제네카社등 3개社의 코로나19 백신의 결과는 모두 이를 상회합니다.

* 독감백신 효과 60%, 대상포진 효과(60세이상) 51%

Q.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구입한 백신들이 모두 효과가 있나요?

-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남아공, 브라질, 영국, 또는 일본 등에서 변이주가 발견되고 있는데 개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효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기존 바이러스 대비 백신의 효능은 떨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효과성에 대한 연구 등 동향에 대하여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Q. mRNA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 핵산백신(mRNA)는 체내에서 몇 시간 후에 분해됩니다. 주사로 주입된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유전 물질(DNA)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유전자와 상호 작용할 수 없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장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예방접종 후 면역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 예방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3주 이상 걸립니다.
-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감염 후 생긴 면역이 예방접종 후 획득한 면역보다 오래 지속되나요?

- 감염을 통해 얻는 예방 효과(자연 면역)는 질병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 면역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얼마나 오랫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Q. 예방접종해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걸릴 수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19를 전염시킬 수 있나요?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파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Q.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예방접종해야 하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또한 집단별, 접종 백신별, 접종 우선순위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집단면역 획득에 필요한 접종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 2-1. 개요 >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들 접종이 완료된 후 3분기 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게 전국 약 250개 예방접종센터(mRNA 백신)와 약 1만여개소*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 기관(바이러스백터 백신)에서 접종 가능할 예정입니다.
 - * 지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향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검색가능
-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등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왜 해야 하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을 예방하는 반면,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이 접종할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대규모 집단 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Q. 개개인마다 접종하는 백신종류, 장소, 시기는 정부에서 정해주나요?

-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군이 정해지고, 대상군 별로 해당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공급된 백신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여러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대상자별 백신을 선정하여 접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Q.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①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의 감염과 사망 감소, ②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③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 이를 위해 전 국민의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Q. 백신 접종목표가 100%가 아닌 7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입니다.
-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 상당수가 감염병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대규모 전파를 막아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

<2-2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일정>

Q.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우선예방접종 권장대상>

국가	우선예방접종 권장대상
WHO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SAGE)	(지역사회전파) 고위험 의료인, 노인 (국지적 유행 발생) 고위험 의료인, 노인(특히 전파위험 높은 지역 거주), 집단유행 대응을 위한 비축 (환자발생 없음) 고위험 의료인, 필수여행인력(학생, 출장 등), 검역, 국경보호 등 근 무인력, 해외유입상황 대응을 위한 비축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ACIP)	1. (Phase 1a)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 거주자 2. (Phase 1b) 75세 이상, 최전방 비의료인 필수인력* * 1차대응(소방, 경찰, 교정시설, 농식품 관련, 우편서비스, 제조업, 식료품가게, 대중교통, 교육 및 보육 분야 3. (Phase 1c) 65-74세, 16-64세 만성질환자, 기타 필수인력* * 교통 및 운수, 수자원, 음식서비스, 주택 및 건설, 경제(은행 등), 정보기술 및 소통, 에 너지, 법, 언론, 안전, 공중보건 분야
캐나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NACI)	1. 요양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 70세 이상 노인, 고위험 의료인, 토착주민 2. 기타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 필수서비스인력
영국 (코로나19 백신지침,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JCVI)	1.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요양원 근로자 2. ≥80세, 의료 및 사회 보건 종사자 3. ≥75세 4. ≥70세, 임상적으로 매우 취약한자(임신부, 16세 이하 제외) 5. ≥65세 6. 16-65세 성인 중 위험군(만성질환자) 7. ≥60세 8. ≥55세 9. ≥50세

Q. 예방접종 순서를 정한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 초기 백신의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합니다.
 - ① 감염/중증 질환 발생 위험, ②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 적용가능성
- 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Q.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C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 당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가피하게 당일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재 예약을 하게 됩니다.
-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접종 동의를 하지 않은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Q. 예방접종일에 예약부도(No Show) 할 경우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일 당일 발열(37.5°C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합니다.
- 단, 예방접종 당일 예약부도(No Show) 할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제가 접종 대상자인지 언제 어디서 맞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접종시기별 대상자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우선접종대상자의 경우 접종기관 및 시기가 개인별로 일괄 확정되며, △3사분기에 접종을 시작하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 접종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 또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및 일시를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예약 사실의 확인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Q.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접종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서만 실시됩니다.

Q.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본인 동의 하에 실시됩니다.
-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Q. 1분기 접종 대상이었는데 접종 거부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접종하고 싶다면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Q. 2~3월 접종계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6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고, 65세 이상은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까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 시 ‘사용 시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예방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이번 2, 3월 접종대상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은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에서, 만 18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출생연도에 따라 생일이 지난 만 18세는 접종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에서, 만 65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65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되며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예방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식이 없는 입원·입소자인데,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접종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접종 불가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이 있는 경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구득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별도로 기록

Q. 주민등록번호 말소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 네,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동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합니다.

Q. 시설번호 있는 행여환자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 네,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동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말소자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 네,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동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합니다.

Q.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 네, 접종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Q.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 네,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합니다.

* 요양병원 종사자 중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자체 접종

- 다만, 여행 등으로 90일 미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의식이 없는 입원·입소자인데,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접종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접종 불가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이 있는 경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구득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별도로 기록

Q.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 예정이며,
- 예방접종 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예약할 예정입니다.
- 예방접종 예약 일정 등은 해당 계획이 발표되면 자세히 안내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 예방접종 방법 >

Q. 각 백신의 접종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은 8~12주 간격, 모더나社의 백신은 28일 간격, 화이자社 및 노바백스社의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합니다.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합성항원
접종횟수	2회	1회*	2회	2회	2회
접종간격	8주~12주 간격	-	21일 간격	28일 간격	21일 간격*

* 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느 부위에 접종하나요?

-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 2차 접종 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될까요?

- 현재 다른 종류 백신과의 교차접종 가능에 대한 근거는 없어 동일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2차 접종 시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 병원 보건의료인이 326명으로, 10명 단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면 되나요?

-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 10명씩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의료인 이외 병원 종사자로 예비명단을 사전에 준비하여 백신 폐기량을 줄이도록 합니다.

Q. 요양시설 방문접종 계약의사 접종팀은 언제 접종 하나요?

- 방문접종 계약의사 접종팀은 계약의사의 접종 가능기간*에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 접종 시 폐기량(이미 개봉된 잔여백신)이 발생될 경우, 방문접종팀을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의원급 일 경우 2분기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의원, 약사 등) 접종 시

Q. 요양병원 의사는 언제 접종 하나요?

- 입원자, 의료인, 기타 종사자 순*으로 접종합니다.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발생시 다음 순서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실시

Q. 보건소 방문접종팀은 언제 접종 하나요?

- 보건소 방문접종팀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접종기간에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 접종 시 폐기량(이미 개봉된 잔여백신)이 발생될 경우, 방문접종팀을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 2-4 상황별 예방접종 >

Q.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할 경우 사유별* 각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엄격한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당국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요구시 등

** 예방접종은 2분기부터 시행 예정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필수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

Q.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을 맞아야하는 걸까요?

- 2차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하여야 합니다. 다만, 2차 접종이 지연되어도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US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번만 해도 되나요?

- 예방접종실시기준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릅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에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사, 화이자사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이지만, 얀센(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19백신은 1회 접종입니다.

- 권장횟수가 2회인 예방접종을 한번 만 할 경우 약간의 면역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보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종간격을 지켜 두 번의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 등으로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합니다.

Q.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를 3월에 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65세 이상 접종을 위해 대상자 등록(4월 예정) 시 해당 대상자를 추가하여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연령의 1차 접종 후에도 신규 입원·입소자 있다면 2~3월에 시행한 종사자 등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배정 시(5월 예정), 또는 65세 이상 연령 2차 접종 백신 배정 시(6월) 명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Q. 요양시설에서 1차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 퇴원한 경우, 2차 접종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가급적 2차 접종을 접종 간격에 맞게 맞으셔야 합니다.
- 동일 백신, 접종 대상 그룹이 동일한 경우 2차 접종은 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나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 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중보건 의사, 군 의료인 전역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과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2차 접종 시행 전 해당 대상자 현황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하여 <코로나 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일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추후 안내 예정

Q. 요양시설, 요양병원 접종에서 당초 수요조사 시 미동의한 대상자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 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 당일 개봉한 백신 잔량이 남아 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동의여부를 변경하여야 접종기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종 대상자가 신규 대상자라면(백신 배정 이후 해당 기관 근무 또는 입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신규 대상자로 명단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Q. 요양시설 위탁의료기관이 방문접종 시 보건소 접종지원팀(행정인력 2~3명)이 나가야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시설과 협약된 의료기관(또는 계약의사)에서 방문접종을 할 경우, 지자체 내 접종지원팀이 방문접종팀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백신 운송,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대기 등 준비, 접종 시 콜드체인 유지관리 모니터링, 남은 백신** 보건소로 회수 등을 담당합니다.

* 백신을 제외한 부대물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준비

** 개봉하지 않은 잔여백신은 보건소로 반입하여 사용 예정, 접종 중 냉장보관조건(콜드체인) 준수 철저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3월에 입사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이번 접종대상자 등록 기간 이후 발생한 신규·교체인력 등은 추후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차 접종 후 퇴사(이직)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로 1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 21일 후에도 동일한 곳에서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체접종을 실시한 과거 소속기관에서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예방접종센터와 일정을 조율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우선 1차 접종 당시 소속기관과의 협의하고, 불가한 경우 추진단에 연락하여 조정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로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센터와 일정 조정 후 접종하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날짜(시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 센터와 일정 조정 후 접종하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어제가 예약일이었는데 깜박하고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일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종대상자가 미방문하는 경우 예비 명단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든 국민의 접종이 끝난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11월 이후).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예방접종센터 방문 접종 의료기관은 언제 접종 하나요?

-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기간은 2.27~3.12로, 해당기간 중 의료기관이 시스템으로 사전 등록한 시간에 따라 접종합니다.
- 중부·영남·호남권역 및 대구지역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기간은 3.3~3.9로, 해당기간 중 의료기관이 시스템으로 사전 등록한 시간에 따라 접종합니다.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예약한 시간대가 지나서 방문해도 되나요?

- 당일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종대상자가 미방문하는 경우 예비 명단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 예약한 날에 접종을 받고자 한다면 센터에 사전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 사전 연락 없이 당일 센터 접수 마감 이전까지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든 국민의 접종이 끝난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 방문일정 변경은 센터에서 우선 조정토록 하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일정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센터에서는 사전에 일정 변경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접종기간 종료 후 제출

< 2-5 대상별 예방접종 기준 >

Q.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합니다.

Q. 요양병원 입소자인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받고 혈장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하도록 권고합니다.
- 동 대상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회복이 되었다면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 *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의 경우 백신 배송이 불가하므로, 해당 백신은 보건소가 보관하였다가 격리해제 이후 해당 병원에 전달(단, 사전에 백신 유통팀에 연락 필요, 코호트 격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 성인병 포함)**

- 만성질환자는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때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 감염이 되었던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예방접종 전 진단검사 필요한가요?**

- 코로나19 감염력 또는 무증상 감염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임신 중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임신부의 경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 임신검사,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수유중인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 예, 아직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Q.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 예, 아직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HIV감염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 예, 면역저하자와 마찬가지로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Q. 접종일에 열이 납니다. 오늘 접종을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37.5℃ 이상의 발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한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백신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입니다.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Q. 폴리에틸렌글리콜(PEG)과 폴리소르베이트는 어떤 제품에 포함되어 있나요?

-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 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만약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폴리소르베이트 80(polysorbate 80)은 이미 우리가 널리 예방접종 하고 있는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로타바이러스 일부 백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6 예방접종 기관 >

Q.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이 분류되어 있나요?

-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백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① 예방접종센터

Q. 예방접종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며 누가 운영하나요?

- 예방접종센터는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와 초저온 냉동고 설치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로나19 핵산백신(mRNA)접종을 위해 설치됩니다.
- 예방접종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3개소, 지역 1개소를 2월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화이자 최초도입 물량 중 일부를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에 약 250개소가 설치예정입니다.

Q. 접종센터 운영시간 내 접종이 불가능한 직장인을 위해 주말·야간 운영을 하나요?

- 백신 접종대상 및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주말운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다만, 이상반응 발현시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야간운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위탁의료기관

Q.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별도 기준(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에 부합하는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 기본교육 이수 및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및 백신 보관 온도 2~8℃ 유지를 위한 온도 이탈 시 알람기능 보유, 백신 접종 준비 공간·이상반응 관찰 공간,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는 필수사항입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협소한 공간으로 불가피하게 공간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간 분리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접종 준비 공간의 경우 방이 따로 마련될 필요는 없지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상반응 관찰 공간의 경우 가림막 등을 활용하여 분리 가능
- 응급처치 의약품의 경우 에피네프린 앰플 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필수 구비사항이며,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AED) 등)는 필수는 아닙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①별도 기준에 부합하고, ②코로나 19 백신 관련 교육 이수 및 ③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 계약 승인 절차로 참여 가능합니다.
 - ① 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
 - ② 기존 참여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교육 이수 후 최근 2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 후 참여 가능
-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교육 이수 후,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과 동일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Q.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자체접종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입니다. 위탁계약 하지 않아도 보건소가 방문점검 해야 하나요?

- 네,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자체접종하므로 위탁계약은 하지 않지만, 예방접종 시행·백신 보관 등이 필요하므로 자율점검표 제출 및 방문점검

은 필요합니다.

- 만약,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접종하게 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이 필요합니다.

Q. 고위험 의료기관 현장점검시 온도계/디지털알림 기능 미구비시 구매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지원 되나요?

- 위탁의료기관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 외 의료기관에는 비용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④ 요양·정신병원/요양시설

Q. 정신병원에서 자체접종(입원자)을 위한 위탁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이 원칙이며, 위탁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위탁계약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소 상황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여 보건소 방문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병원, 시설접종, 고위험의료기관 접종 시에도 예진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되나요 ?

- 요양병원, 시설, 고위험의료기관 접종 시에도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이내 접종하도록 합니다.

Q. 기존 시행지침에 접종기간을 5일로 설정, 백신 수령 후 5일 내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접종 시 백신 수령 후 5일 내 접종 완료는 권고사항이며, 자체접종기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가급적 접종일정이 늘어지지 않도록 함).

Q. 요양병원인데, 촉탁의 방문 접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이 원칙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시행비 지급 등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Q. 요양병원에서 자체접종(종사자, 입원자)을 위한 위탁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이 원칙이며, 위탁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위탁계약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소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방문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시설 위탁의료기관이 방문접종 시 보건소 접종지원팀(행정인력 2~3명)이 나가야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시설과 협약된 의료기관(또는 계약의사)에서 방문접종을 할 경우, 지자체 내 접종지원팀이 방문접종팀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백신 운송,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대기 등 준비, 접종 시 콜드체인 유지관리 모니터링, 남은 백신** 보건소로 회수 등을 담당합니다.

* 백신을 제외한 부대물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준비

** 개봉하지 않은 잔여백신은 보건소로 반입하여 사용 예정, 접종 중 냉장보관조건(콜드체인) 준수 철저

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총 접종자 수가 410명입니다. 6단위로 맞춰지지 않는데 2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체접종 의료기관은 사전에 접종대상자들을 6의 배수로 맞추어 일별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당일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명단 대상자들에게 잔여분을 접종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센터는 당일 예약자 접종을 완료했는데 잔여분이 발생한 경우, 준비한 예비

명단 대상자들에게 잔여분을 접종하도록 합니다.

Q.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지침에 백신 유효기간이 12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신 수령 후 5일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되나요?

- 백신의 유효기간이 해동 이후 120시간이므로, 운송시간을 고려할 때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4일 이내로 접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백신

Q.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의 바이러스백터 백신 2종, 화이자, 모더나 社의 mRNA백신 2종, 노바백스 합성항원 백신 1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백신에 방부제는 없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예정인 백신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왜 흔들면 안되나요?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mRNA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mRNA와 mRNA를 보호하여 mRNA가 체내에서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핵산백신(mRNA)와 지질나노입자 모두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백신 취급 시 주의해야 하며, 흔들면 안됩니다.

*출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 19 백신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2.3.

Q.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회 사용 형태로 공급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multi-dose vial)로 제공됩니다.

**Q.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선택권이 없다면 이유가 뭔가요?**

-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예방접종 순서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공급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미국, 유럽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이미 도입이 결정된 코로나19 백신 종류 중 어떤 백신이 특정연령대나 특정 대상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 코로나19 백신별 공급 시기, 효능 및 안전성, 보관 및 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Q. 코로나19 백신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국내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전량 일괄 구매하여 민간 유통업체(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백신을 보관·유통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백신의 운송 중 콜드체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백신 운송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주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의

포장 용기 내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넣어 운송과정 중 콜드체인이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콜드체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엠투클라우드(주)가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IoT 기반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실시간 온도 관리 및 백신 위치 추적시스템 구축
- * 콜드체인 : 백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온도 제어 환경으로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의료기관의 백신 투여시점까지 백신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련된 모든 설비와 절차를 포함

Q. 우리나라에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의 보관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 개봉하지 않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의 보관온도는 2~8℃ 6개월, 얀센社의 보관온도는 -20℃에서 24개월, 2~8℃에서 3개월, 화이자社는 -90℃~-60℃ 6개월, 2~8℃ 5일, 모더나社의 백신은 -20℃ 6개월, 2~8℃ 30일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社, 모더나社, 얀센社 백신은 2~8℃ 냉장상태로 유통될 예정이므로 접종기관에 3사의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화이자社 백신을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보관조건	2~8℃(6개월)	-20℃(24개월) 2~8℃(3개월)	-90℃~-60℃(6개월) 2~8℃(5일)	-20℃(6개월) 2~8℃(30일)

Q. 화이자社 백신은 초저온에 보관하고 사용전에 전처리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화이자 백신은 접종 전 2~8℃(약 3시간 소요) 또는 실온(최대 30℃)에서 30분 동안 해동한 후 0.9% 생리식염주사액을 주입하여 희석합니다.
- 희석한 백신은 2℃~30℃에서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전처리부터 접종 준비과정 중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물 이상(정상적이지 않은)은 무엇이 있나요?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옅은 갈색 또는 무색이며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는 성상이므로 침전물이 보이거나 색의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을 금지합니다.

Q. 개봉 후 권장 시간이 경과한 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개봉 후 권장 시간이 경과한 백신은 접종기관에서 자체 폐기하지 말고, 별도의 보관 상자에 바이알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유통업체를 통해 회수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폐기 수량 및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 의료기관 자체 폐기 금지
- 백신 회수는 유통업체가 실시하고 회수량을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Q. 여러 바이알의 백신 잔량을 서로 섞어 한회 접종분량을 만들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백신 잔량은 폐기해야 하며 절대로 서로 섞어서는 안됩니다.

Q.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파손 또는 잔량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해도 되나요?

- 아니요. 자체 폐기하면 안 됩니다.
-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백신으로, 파손·잔량 등 백신에 대해서도 유통업체를 통해 회수하여 국가차원에서 폐기합니다.
- 위탁의료기관은 폐기대상 백신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폐기 수량 및 사유를 입력합니다.

Q.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는 무엇인가요? 일반 주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 주사기와 바늘의 잔여량이 0.035mL 이하(EMA, 유럽의약품청 기준) 인 주사기를 최소 잔여형(LDS, Low Dead Space) 주사기라고 합니다. 일반 주사기는 주사기 잔여량이 0.07mL 이하(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인 주사기입니다.

Q. 희석액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에 사용하나요?

- 희석액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만 사용하며, 다른 백신은 희석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Q. 대용량 희석액을 구매하였는데,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 희석액은 용량과 상관없이 1회 사용량 1.8mL만 사용하고 남은 희석액은 폐기합니다.

Q. 희석액은 성분은 몸에 해롭지 않나요?

- 희석액은 0.9% 생리식염주사액을 사용하며,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주사용 멸균증류수와 소금의 성분인 염화소듐(NaCl)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인체의 체액과 유사한 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사액 희석액 등으로 널리 안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백신의 희석액으로 주입하는 소량의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4.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 국내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과 효과성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 해외 국가에서 나타난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등은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큰 부작용 사례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 접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접종 시에도 접종 대상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 새로운 유형의 백신, 이상반응이 없을까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 두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증상은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접종 받은 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39℃ 이상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이런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미한 통증은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의 방법으로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 그러나 열이 지속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나라에서 나타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무엇
인가요?**

-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어르신인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Q.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기 위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시 의사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만일 이전에 다른 백신이나 음식 등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예진 의사에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 제외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고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접종력(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받은 기관 등)과 나타난 이상반응을 확인합니다.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Q. 예방접종 받은 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예방접종 받은 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Q. 예방접종 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이상반응 발생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접종 받은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 진료 건에 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이상반응관리→ 보호자신고(조회)에서 병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시도는 즉시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신속대응팀을 가동하여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간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과성 평가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합니다.

Q. 아나필락시스가 어떤 증상인가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나필락시스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보통 예방접종 후 수분 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진행되며,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적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 등이나 저혈압,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합니다.
- 그러나, 아나필락시스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전에 다른 접종이나 음식 등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귀가 후에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증상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 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 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 건 중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한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후 7일까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회복)에 입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보건소)

-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 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회복)에 입력합니다.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감자, 방문접종팀 등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경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입력된 경과관찰 확인(보건소)

-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경과관찰 보고관리(<https://nip.kdca.go.kr/irgd/ltrcf.do>)’ 접속하여 보건소에서 부여받은 시설코드를 입력 후 기관의 접종 받은 자의 경과관찰 결과를 보고합니다(일정시간 예)18:00)합니다. 접종받은 자 중 경과관찰리스트를 참고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나 두통 · 피로감 등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건수를 입력합니다(증상 중복 보고 가능). ④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매일 확인합니다.

* 집단시설(요양기관 등) 입소자 및 종사자 등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Q.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곳에서 이상반응 발생 신고를 하면, 1~5문항은 아나필락시가 발생한 기관에서 작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 주시고, 6~11문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작성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열이 나고 피로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 전신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송하나요?

- 보건소 방문접종시는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 자체 구급차가 있는 의료기관이 시설 방문접종 시, 의료기관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 일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자체 구급차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구급차, 119 신고 순으로,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은 119 신고를 통해 환자를 이송합니다.
- 관할 지자체는 사전에 지자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 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비급여 영양제 수액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기존과 동일한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속절차 적용 가능)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신속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인 경우 인과성 요건 충족 시, 신속처리 절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속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며 피해보상을 신청한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정식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속절차 적용 가능)

6. 기관 인증서 등록

Q. 전산으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로그인은“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사업 참여 시에는 의료기관정보에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사업 참여 시 서명이 가능합니다.

Q. 계약에 필요한 의료기관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 시 사용하는 기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인증서 갱신 시 의료기관 정보도 갱신(재등록) 필요

7.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Q.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신규 접종으로 접종 관계자가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시·도, 시·군·구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와 자체접종 의료기관, 예방접종 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 인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육 대상별로 세부 교육 내용은 다르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개요, 접종 대상자, 방법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유통,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접종술기 등이 포함됩니다.

Q.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월 8일부터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인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간호사 대상 접종실습, 예방접종센터 대상 도상훈련(대기-예진-접종-전산입력-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통장사본 업로드

Q.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데 통장사본을 업로드 해야 하나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 사업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통장사본 업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통장사본은 이미지 파일(JPG, GIF, PNG)로 업로드 필요
 -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Q. 비용지급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 메뉴에서 통장사본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한 통장사본을 보건소에서 승인한 이후부터 변경된 계좌정보로 비용지급 됩니다.

9. 계약서, 지정서

Q.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기 참여하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기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신 후 교육수료증(수료번호) 및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 후 참여 확인증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전자계약 체결 후 의료기관에서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서와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계약

Q. 계약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는데 팝업(사업참여 확인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자율점검표, 위탁계약서 등) 화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경우입니다.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ezPDFReader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고, 시스템 종료 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프로그램 설치 시 모든 인터넷 창을 닫아야 합니다.

Q.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 위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교육 수료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료인가요? 무료라면 어떤 재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을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Q. 외국인도 예방접종 대상인가요?

- 예.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는 현재도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로 국가 지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순서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되는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무료 접종을 검토 중입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 다만,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합니다.

* 요양병원 종사자 중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자체 접종

12. 시스템 관련

Q. 관내 OO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거점치료병원으로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관'에도 포함되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도 포함됩니다. 한번에 2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해당기관 내 모든 직원분이 접종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여러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만 해당됨으로 그 외 보건의료인*의 경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중복되는 범위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기존 안내된 바와 같이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추가하여 주시고, 그 외 보건의료인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다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서 직종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는 추가인력으로 기재 제출한 대상자라면 중복입력이 불가능하여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포함 불가능합니다.

Q. 관내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안내된 대상(예: 고위험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것 같으나, 시스템에 안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보건소에서 추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휴업, 폐업 등으로 시기별 대상기관현황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관내 의료기관 중 해당기관이 누락되었다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지를 참고하시어 대상별 양식에 맞추어 요청시기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저희 직원을 입력했을 때 '이미 등록된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이미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입력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게시판에 해당인적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신청시 반영 가능합니다.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QnA

Q.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기관(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이 입력하며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피접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접종 실적, 향후 계획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공개되나요?

-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실적 자료 및 최신 예방접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은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나요?

- 접종기관에서 접종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상세 기록을 입력 후 예방접종 확인증(1차)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 위탁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온라인 교육 수료 및 전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상반응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개통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 한 사람에 대해 알림을 보내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예약일 1일전에 사전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발송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이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누리집(홈페이지)을 신설하여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누리집 주소 : <http://ncv.kdca.go.kr>

13. 기타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료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을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Q. 외국인도 예방접종 대상인가요?

- (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는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무료 접종 예정입니다.
- (일시 입국 외국인) 예방접종 불가입니다. 여행 등으로 90일 미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따라서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헌혈을 해도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매회 접종 시마다 예방접종이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Q. 코로나19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백신들이 있습니까?

○ 코로나19 예방접종 외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은 아직 알려진바 없습니다.

Q. 혹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나요?

○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